

A J O U U N I V E R S I T Y

별책

아주대학교 신임교원 가이드북

2023. 2.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NTENTS

1. 교원인사규정	1
2.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10
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17
4. 아주대학교 학칙	23
5. 교원신규임용규칙	91
6. 교수업적평가규칙	102
7. 2022년 대학(원) 및 학과별 교수업적평가 기준	121
8.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	195
9.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212
10. 교수윤리위원회규칙	225
11. 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칙	227
12.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	231
13. 교원 승급기준	238
14. 교원 해외여행 기준	240
15. 교원 겸직 허가 및 운영기준	241
16. 책임교수시간 및 초과강의료 산정 기준	247
17.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	252
18. 연구비 관리규칙	257

교원인사규정

제정	1998. 12. 11
개정	2002. 7. 5
개정	2003. 1. 28
개정	2006. 2. 21
개정	2006. 3. 21
개정	2006. 3. 31
개정	2006. 7. 25
개정	2007. 5. 29
개정	2007. 8. 28
개정	2011. 2. 22
개정	2011. 8. 23
개정	2012. 5. 22
개정	2013. 12. 30
개정	2014. 2. 10
개정	2015. 8. 13
개정	2016. 1. 4
개정	2017. 6. 28
개정	2018. 8. 31
개정	2019. 6. 27
개정	2020. 8. 21
개정	2023. 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6.27.)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 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7.5.29, 2013.12.30, 2018.8.31)
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5.29)
3. ‘강사’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48조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7.)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7.25., 2013.12.30., 2018.8.31., 2019.6.27.)

제4조(교원의 자격) 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29, 2011.2.22)

제5조(임용의 시기) ①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 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② <삭제 2003.1.28>

제6조(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7.6.28)

[전문개정 2014.2.10]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신설 2006.2.21, 개정 2006.3.31)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6.2.21.)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23.2.10.)

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2.21)

④ 제7조 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21)

[제목개정 2023.2.10.]

제7조의 2(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6.3.31)(개정 2007.5.29)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6.3.31)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신설 2006.3.31)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1. 허가의 필요성 (신설 2006.3.31)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신설 2006.3.31)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3.31)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6.3.31)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6.3.31)

제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9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 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 규 임 용

제11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제14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임용
5.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제15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07.5.29)

1. 경력환산 기준은 교수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인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 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6조(특별채용) ① 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2014.2.10)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임용특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2.22]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17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제18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8.31)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재임용

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 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단, 휴직 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년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5.22)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개정 2007.5.29)

③ 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제21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3. <삭제 2012.5.22>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2006.7.25)

제21조의2 <삭제 2012.5.22>

제22조(승진·재임용 요건)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20.8.21.)

제23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5.29.)

제 4 절 석좌교수

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①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

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본교 교수로 임용시 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8.31)

③ 석좌교수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본조신설 2015.8.13]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세칙)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

제25조(휴직 및 복직) ① 교원이 정관 제5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9)

② 휴직중인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 복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9)

제26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개정 2012.5.22)
2. <삭제 2012.5.22>
3. <삭제 2012.5.22>
4. 정년에 달한 때
5. <삭제 2012.5.22>
6. 사망

제 4 장 정 계

제27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제30조(복무) 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병가) ①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3)

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3)

제32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원과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9., 2020.8.21.)

②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21.)

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1.2.22, 2014.2.10, 2016.1.4)

② 연구년은 12개월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2.10, 개정 2016.1.4)

③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2.22)

④ 연구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교원인사규칙은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교원인사 및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승진 임용된 자의 임용시기는 제5조 1항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05-414호 : 2006.2.21)
이 규정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06-27호 : 2006.3.21)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06-53호 : 2006.3.31)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06-179호 : 2006.7.25)
이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07-122호 : 2007.5.29)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07-229호 : 2007.8.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임용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준용하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및 승진임용 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0-360호 : 2011.2.22)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1-226호 : 2011.8.23)

이 규정은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2-91호 : 2012.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1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314호 : 2013.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358호 : 2014.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5-246호 : 2015.8.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5-411호 : 2016.1.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7-196호 : 2017.6.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호의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기획팀>-143호 : 2019.6.27.)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219호 : 2020.8.2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 정 2002. 7. 5.
전면 개정 2008. 12. 30.
개 정 2012. 5. 22.
개 정 2012. 8. 23.
개 정 2014. 2. 10.
개 정 2014. 8. 19.
개 정 2018. 8. 31.
개 정 2020. 2. 10.
개 정 2023. 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8항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0.>

제2조(종류 및 직위) ① 특별임용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3, 2014.2.10>

1.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
2. 대우교수 :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연구교수 :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강의교수 :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객원교수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된 교원
6. 겸임교수 :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7. 초빙교수 : 학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
8. 산학협력교수 :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② 석좌교수, 강의교수, 초빙교수를 제외한 특별임용교원의 직위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공개채용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10.]

제3조의3(임용연령)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10.]

제4조(당연퇴직)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제5조(직무) 특별임용교원은 해당 직위의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전 임교원과의 공동연구, 특별강의 및 세미나 등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석좌교수

제6조(자격)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① 석좌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좌교수기금은 외부기관이나 독지가가 기탁한 출연금 또는 교비지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개정 2012.5.22., 2018.8.31>

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9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발전에의 기여

제10조(보수) 석좌교수의 보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대우교수

제11조(자격) 대우교수는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해당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용) ① 대우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다만, 대우조교수 직급의 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2018.8.31>

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13조(직무 및 교수시간) ① 대우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 연구 및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우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학기당 9학점 이하에서 담당하고 수강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14조(보수) 대우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연구교수

제15조(자격)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외부 연구기금 등에 의하여 본 대학교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본 대학교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신설2014.2.10.><개정 2020.2.10>

②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연구교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10>

제16조(임용) ① 연구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센터)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제17조(직무) 연구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되 특별한 경우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연

구소(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3.2.10.>

제18조(보수)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강의교수

제19조(자격) 강의교수는 학생교육을 위하여 강의능력이 뛰어난 자로 한다.

제20조(임용) ① 강의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1조(직무 및 교수시간) 강의교수는 학생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교수시간은 학기당 12학점 (외국인 강의교수의 경우 학기당 15학점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교수시간 및 교수시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1. <삭제 2020.2.10>
2. <삭제 2020.2.10>
3. <삭제 2020.2.10>

제22조(보수) 강의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객원교수

제23조(자격) 객원교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 하며,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2.10>

제24조(임용) ① 객원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5조(직무) ① 객원교수는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며, 관련 전공분야의 교육과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객원교수는 학기당 6학점 이하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6조(보수) 객원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점임교수

제27조(자격) 점임교수는 학생교육을 위하여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제28조(임용) ① 점임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점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9조(직무) ① 점임교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교육, 공동연구,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임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30조(보수) 점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초빙교수

제31조(자격) 초빙교수는 국내·외로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이 매우 우수한 자 또는 사회적 저명도가 높은 외부인사로 한다.

제32조(임용) ① 초빙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33조(직무) ① 초빙교수는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초빙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34조(보수) 초빙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산학협력교수 <신설 2012.8.23>

제35조(자격) 산학협력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사업에서 요구하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8.23]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교수는 학과(전공), 대학(원) 및 부서에 소속된 교원으로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8.19>

② 산학협력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본조 신설 2012.8.23]

제37조(직무 및 교수시간) 산학협력교수는 산학협력과 학생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교수시간은 연간 10학점 이하로 하며,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2.10>

[본조 신설 2012.8.23.]

제38조(보수) 산학협력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8.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며 이전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08-329호 : 2008.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우교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대우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 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교육경력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특별임용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특별임용교원의 잔임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2-91호 : 2012.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2-186호 : 2012.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358호 : 2014.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204호 : 2014.8.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특별임용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특별임용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384호 : 2020.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 중인 특별임용교원과 임용 절차가 완료되어 2023년 3월 1일 임용 대상인 특별임용교원은 재계약 임용부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2018. 8.31

개정 2020. 8.21

개정 2023. 2.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담당교원,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개정 2020.8.21)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

제3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부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에 한함), 조교수
2. 연구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3. 산학협력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제5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3.2.10.)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23.2.10.)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8.21)

④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21.)
[제목개정 2023.2.10.]

제8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육중점교수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3.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우 (신설 2020.8.21)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 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와 관련한 신입교원심사위원 및 선정후보자를 소속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제14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5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및 대학(원)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학자

4. 외국인

-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② 교수업적평가에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재임용·승급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학과장 제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0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8년으로 한다.

-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제23조(승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장 제4절을 준용한다.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

제 4 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제30조(복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32조(해외여행)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와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21)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0.8.21)

제 6 장 보 칙

제3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219호 : 2020.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주대학교 학칙

	제 정	2004. 10. 12
	개 정	2004. 12. 07
	개 정	2005. 01. 18
	개 정	2005. 02. 01
	개 정	2005. 04. 19
	개 정	2005. 06. 01
	개 정	2005. 06. 21
	개 정	2005. 07. 12
	개 정	2006. 01. 31
	개 정	2006. 03. 30
	개 정	2006. 05. 30
	개 정	2006. 06. 20
	개 정	2006. 07. 11
	개 정	2006. 08. 18
	개 정	2006. 10. 26
전 면	개 정	2006. 11. 10
	개 정	2006. 11. 30
	개 정	2007. 03. 26
	개 정	2007. 05. 14
	개 정	2007. 06. 22
	개 정	2007. 07. 25
	개 정	2007. 09. 09
	개 정	2007. 10. 19
	개 정	2008. 02. 22
	개 정	2008. 05. 21
	개 정	2008. 07. 10
	개 정	2008. 12. 16
	개 정	2009. 02. 20
	개 정	2009. 04. 02
	개 정	2009. 04. 29
	개 정	2009. 07. 27
	개 정	2009. 10. 18
	개 정	2009. 12. 07
	개 정	2010. 02. 26
	개 정	2010. 07. 21
	개 정	2010. 11. 01
	개 정	2011. 01. 11
	개 정	2011. 05. 19
	개 정	2011. 08. 11
	개 정	2011. 12. 23
	개 정	2012. 05. 10
	개 정	2012. 07. 17
	개 정	2012. 11. 19
	개 정	2013. 01. 25
	개 정	2013. 05. 01
	개 정	2013. 07. 05

개 정	2013. 07. 30
개 정	2013. 10. 14
개 정	2013. 12. 31
개 정	2014. 02. 17
개 정	2014. 05. 30
개 정	2014. 06. 30
개 정	2015. 02. 10
개 정	2015. 05. 18
개 정	2015. 08. 13
개 정	2015. 10. 16
개 정	2016. 01. 08
개 정	2016. 02. 03
개 정	2016. 03. 24
개 정	2016. 05. 09
개 정	2016. 08. 23
개 정	2016. 12. 29
개 정	2017. 02. 13
개 정	2017. 04. 19
개 정	2017. 07. 03
개 정	2017. 07. 14
개 정	2018. 01. 31
개 정	2018. 05. 11
개 정	2018. 08. 12
개 정	2019. 01. 15
개 정	2019. 02. 27
개 정	2019. 04. 29
개 정	2019. 07. 29
개 정	2019. 10. 02
개 정	2019. 12. 11
개 정	2020. 01. 31
개 정	2020. 02. 28
개 정	2020. 03. 31
개 정	2020. 04. 24
개 정	2020. 05. 11
개 정	2020. 07. 29
개 정	2020. 09. 04
개 정	2021. 01. 20
개 정	2021. 02. 19
개 정	2021. 05. 07
개 정	2021. 08. 02
개 정	2021. 09. 01
개 정	2022. 01. 24
개 정	2022. 02. 25
개 정	2022. 04. 28
개 정	2022. 06. 01
개 정	2022. 08. 09
개 정	2022. 09. 23
개 정	2023. 01.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이념)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의 정신으로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교육·연구의 능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에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③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④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7.5)

⑤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⑥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08.5.21) (개정 2023.01.13.)

⑦ “특수학부”라 함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학부를 말한다. (개정 2008.5.21) (개정 2010.7.21)

⑧ “전문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에서 대외 교육인증을 받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1.8.11)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본 대학교에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부총장직속기구 및 특별기구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26) (개정 2007.7.25) (개정 2007.9.9) (개정 2008.2.22) (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4.29)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09.1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7.30)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5.10.16) (개정 2016.1.8) (개정 2016.2.3) (개정 2016.3.24) (개정 2016.5.9) (개정
 2016.8.23) (개정 2016.12.29)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7.7.14) (개
 정 2018.1.31) (개정 2018.5.11) (개정 2018.8.12) (개정 2019.01.15) (개정 2019.10.2)
 (개정 2020.01.31) (개정 2020.02.28) (개정 2020.03.31) (개정 2020.09.04.) (개정
 2021.1.20.) (개정 2021.2.19.) (개정 2021.05.07.)
 (개정 2021.08.02.) (개정 2021.09.01.) (개정 2022.02.25.) (개정 2022.06.01.) (개정
 2022. 08.09.) (개정 2022.09.23.) (개정 2023.01.13.)

제5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부총장) ①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
 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
 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4.2) (개정 2015.10.16)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2)

제7조(대학교본부) ① 대학교본부에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국제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5.10.16) (개정 2017.4.19)
 ② 각 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①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 제10항에 의거 특별기
 구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둔다. (신설 2009.7.27) (개정 2017.7.14)
 ②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할한다. (신설
 2009.7.27)
 ③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7.27)

제7조의3(기관생명윤리위원회) ①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 제10항에 의거 특별기구로 기
 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30) (개정 2017.7.14)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와 안전을 심의하고 감독
 하는 업무를 관할한다. (신설 2013.7.30)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8조(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
 정 2020.02.28)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 제약임상대학원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1.30) (개정 2007.10.19)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0.11.1) (개정 2011.8.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10.14) (개정 2013.12.31)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6.1.8.) (개정 2017.7.3) (개정 2018.1.31) (개정 2018.8.12.) (개정 2019.4.29) (개정 2019.7.29) (개정 2020.04.24) (개정 2020.09.04.) (개정 2021.1.20.) (개정 2021.05.07.) (개정 2021.08.02.) (개정 2022.01.24.)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③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설치학과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6) (개정 2014.5.30) (개정 2020.02.28)

④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7.27) (개정 2010.2.26) (개정 2010.11.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7.5)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8.23) (개정 2016.12.29)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8.1.31) (개정 2019.01.15) (개정 2019.4.29) (개정 2019.10.2.) (개정 2020.03.31) (개정 2020.09.04.) (개정 2021.2.19.) (개정 2021.08.02.)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 및 특수학부를 둔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0.7.21) (개정 2015.05.18) (개정 2018.5.11.) (개정 2022.02.25.)

1. 대학 :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다산학부대학

2. 특수학부 : 국제학부

② 대학 및 특수학부에 설치된 학과(부) 및 전공, 연계전공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7.5.14)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7.5)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8.23) (개정 2016.12.29)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8.1.31) (개정 2019.01.15) (개정 2019.4.29) (개정 2019.10.2.) (개정 2020.03.31) (개정 2020.09.04.) (개정 2021.2.19.) (개정 2021.08.02.)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3.1.25) (개정 2014.02.17)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2.3) (개정 2016.5.9)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8.1.31) (개정 2018.5.11) (개정 2019.4.29)
(개정 2020.07.29.) (개정 2021.2.19.) (개정 2022.01.24.) (개정 2022.02.25.)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③ 대학 및 특수학부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0조(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19)

제10조의3(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의 예산·조직·자료·시설·운영 및 그 밖에 제반 사항은 「중앙도서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2.13)

제11조(의료원) 의료원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첨단의학연구원, 연구기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및 정보혁신실을 별표1과 같이 두며,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4) (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개정 2013.1.25) (개정 2014.5.30) (개정 2014.6.30) (개정 2015.08.13) (개정 2015.10.16) (개정 2016.1.8) (개정 2016.2.3) (개정 2016.3.24) (개정 2016.5.9) (개정 2016.8.23) (개정 2018.5.11) (개정 2020.02.28.) (개정 2021.1.20.) (개정 2021.05.07.) (개정 2023.01.13.)

제3장 교무회의, 교수회 및 위원회

제12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구성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5) (개정 2012.7.17) (개정 2020.03.31)

③ <삭제 2009.12.7>

- ④ 기타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25)
- ⑤ <삭제 2007.7.25>

제13조의2(직원회) ① 본 대학교에 직원회를 둔다. (신설 2007.7.25)

- ② 직원회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0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7.25)
- ③ <삭제 2009.12.7>
- ④ 기타 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7.25)

제14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전문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6)

제16조(특수대학원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7.25)
- ③ 특수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특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특수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1.12.23) (개정 2013.12.31)
- ② 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생 4인, 관련전문가 2인, 학부모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12.23)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12.23)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12.23)
1. 교직원 위원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2. 학생 위원 : 학부생 3인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일반대학원생 1인은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3. 관련 전문가 위원 : 대학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 위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23)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3)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12.23)
- ⑧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 ⑨ 위원회는 등록금책정관련 심의결과를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 제17조의2(기타 위원회)** 본 대학교의 연구,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직원

- 제18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봉사에 힘쓴다.
- ② 직원은 행정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9조(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특별임용교원과 명예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17) (개정 2019.7.29.)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26) (개정 2011.12.23)

제20조(직원 및 조교) ① 직원으로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을 두고, 필요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시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직원 및 조교의 자격, 근무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입학 및 퇴학

제21조(학생정원)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정하며 별표6 내지 별표8과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에 포함한다. (개정 2007.3.26) (개정 2007.5.14) (개정 2007.6.22) (개정 2007.10.19) (개정 2008.7.10) (개정 2008.12.16) (개정 2009.10.18) (개정 2009.12.7) (개정 2010.2.26) (개정 2010.11.1)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7.5)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6.2.3) (개정 2016.5.9) (개정 2016.12.29) (개정 2017.4.19) (개정 2017.7.14) (개정 2018.1.31) (개정 2018.8.12) (개정 2019.01.15) (개정 2019.7.29) (개정 2020.01.31) (개정 2020.02.28) (개정 2020.04.24.) (개정 2021.1.20.) (개정 2021.08.02.) (개정 2022.01.24.) (개정 2023.01.13.)

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6.)

③ 학사과정의 학생모집은 모집단위별로 하고,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별표9와 같으며, 학부별로 모집한 학생의 전공 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09.10.18)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8.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5.9) (개정 2016.12.29) (개정 2017.4.19) (개정 2017.7.14) (개정 2018.1.31) (개정 2018.5.11) (개정 2019.01.15) (개정 2020.01.31.) (개정

2022.02.25.)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제22조(신입학)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전공을 제외하고 교육대학원에 2000학년도부터 신·증설되는 전공은 현직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1. 국내외 대학교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간호학과의 전문간호사과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3년 진입시부터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6) (개정 2014.5.30)

1. 국내외 대학교의 대학원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신설 2014.5.30)

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나.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다.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4. 전 3호의 자격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으로서 재학기간에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신청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07.10.19)

④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학연산협동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07.10.19)

⑤ 학사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7.10.19) (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전 1호,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삭제 2011.12.23>

⑥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개정 2020.02.28)

제23조(정원의 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제5항에 의거 정원의외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제23조의2(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개정 2012.5.10.)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11) (개정 2017.7.14)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10과 같다. (신설 2011.8.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7.5)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2.3) (개정 2016.5.9) (개정 2016.8.23) (개정 2018.1.31) (개정 2019.7.29) (개정 2020.02.28.) (개정 2022.02.25.) (개정 2023.01.13.)

④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11.)

제24조(편입학) ① 대학원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은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IT전공의 경우 4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개정 2019.4.29)

③ <삭제 2007.3.26>

④ <삭제 2007.3.26>

⑤ <삭제 2007.3.26>

⑥ 편입학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재입학) ①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삭제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④ 재입학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제26조(입학시기)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개정 2010.2.26.) (개정 2021.1.20.)

②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순수 외국인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16)

제27조(입학지원)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29)

1.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수업료는 수강 학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학적유지를 위해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금 이외의 비용을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전과)**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통산 2년(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20.02.28)
- ④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⑤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 ⑥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8)
- ⑦ 학사과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09.10.18) (개정 2013.12.31)
- ⑧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34조(자퇴)** ① 대학원 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5.2.10)
- ② 학사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5.2.10)

제35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제6호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2.27)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과정의 경우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자퇴한 자
6.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 및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5.19) (개정 2018.1.31) (개정 2019.7.29)
7.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8.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제36조(재학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개정 2013.12.31) (개정 2015.2.10) (개정 2020.02.28)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
2.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5년, 전문박사과정 7년
3. 특수대학원: 재학연한을 두지 않음

②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는 9년(18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5.10)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수업 및 학위취득

제37조(수업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개정 2007.7.25) (개정 2008.5.21) (개정 2008.12.16) (개정 2020.02.28)

1. 석사과정
 -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나.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년 이상
 - 다.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
 - 가.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 나. 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4. < 삭제 2007.7.25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12.16)
(개정 2014.5.30.) (개정 2023.01.13.)

1.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입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나, 외부 기관의 위탁생 또는 외국인 전용 전공의 경우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4.5.30)

③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사과정은 5년(10학기)으로, 의학사과정과 약학사과정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개정 2020.01.31)

제38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기 개시일을 전후하여 수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개시일을 당해 학기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2.7.17)

1. 제1학기: 3월 1일 개시
2. 제2학기: 9월 1일 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개정 2021.1.20.)

1. <삭제 2021.1.20.>
2. <삭제 2021.1.20.>
3. <삭제 2021.1.20.>

③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21.1.20.)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학 중 수업과 주간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44조의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단위로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31)

제4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기타 국정 공휴일

② 휴업일 중일지라도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임시휴업) ①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제42조(학사과정의 전공) ①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개정 2011.8.11)

② <삭제 2011.12.23>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3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개정 2011.8.1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지원사업으로 정원관리가 필요한 학과(전공)는 사업에서 정하는 정원내에서 전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⑤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트랙)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과목의 학점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복수전공, 부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 (개정 2016.8.23)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2.11.19) (개정 2014.02.17) (개정 2015.2.10) (개정 2016.1.8) (개정 2016.8.23) (개정 2016.12.29) (개정 2017.2.13) (개정

2017.7.14) (개정 2019.4.29.) (개정 2020.07.29.) (개정 2022.01.24.)

1.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 부전공
 3. 마이크로전공: 부전공보다 작은 이수 단위의 교육과정
 4. 연계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5.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인정받은 교육과정
 6. 트랙: 융복합트랙(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과정), 전공특화트랙(전공내 특정 분야 진로에 특화된 교과목 이수체제로 구성된 교육과정)
-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7.29.) (개정 2022.02.25.) (개정 2022.04.28.)
1. 의학, 간호학, 약학, 공군ICT, 융합시스템공학, 글로벌경영학, 글로벌IT 전공
 2. 정보통신대학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이 ICT융합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디지털미디어 전공 제외) 소속 재학생이 인공지능융합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4.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전공 재학생이 상호 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성한다.
- ③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로 정하여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 ④ 대학원 및 학사과정에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 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45조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 ⑥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하여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1)
- ⑦ 특수대학원 학생은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교내 타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⑧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은 교육과정을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⑨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
- ⑩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⑪ 학사 및 일반대학원 과정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31.)
- ⑫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1.13.)

제44조의2(전공진입) ① 학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수료 후 3학기(2학년) 진급 시 별도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생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융합시스템공학과 및 글로벌경영학과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은 4학기 수료 후 5학기(3학년) 진급시 별도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7) (개정 2016.1.8) (개정 2016.2.3) (개정 2017.2.13) (개정 2017.7.14)

② 전공진입 요건과 적용 전공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7.17.)

제45조(학점인정) ①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개정 2009.12.7) (개정 2020.02.28)

1. 일반대학원 :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전문대학원 :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개정 2007.3.26)
3. 특수대학원 : 6학점 이내. 단, 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 내용을 우선 적용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3.7.30) (개정 2015.2.10)

③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신편입학 자의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본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개정 2009.12.7) (개정 2019.01.15)

1. 석사과정 : 12학점 이내
2. 박사과정 : 전공이수 학점의 1/2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이수학점의 1/2 이내(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12학점 이내 인정)

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19)

⑥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편입학 자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10.19) (개정 2012.5.10)

- ⑦ 전과한 자가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개정 2012.5.10)
- ⑧ 제44조 제5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 ⑨ 학사과정 학생은 총 12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중 6학점까지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고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본 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생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0.19.) (개정 2023.01.13.)
- ⑩ 학사과정 학생 중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 휴학자”라 한다)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12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 ⑪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9)

- 제46조(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 ① 학사과정의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2) (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20.05.11)
- ② 학사과정의 성적평가를 위하여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한다.
- ③ 일반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2) (개정 2008.12.16.) (개정 2021.1.20.)
- ④ 대학원과정에서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어, 점수 및 평점은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2) (개정 2011.5.19.)

[교과목학점]

평 어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₀	90 ~ 94	4.0
B ⁺	85 ~ 89	3.5
B ₀	80 ~ 84	3.0
C ⁺	75 ~ 79	2.5
C ₀	70 ~ 74	2.0
F	0 ~ 69	0

[연구학점]

S(가)

U(부)

⑤ 대학원과정에서 동일 교과목(대체과목 포함)의 재수강은 F학점 과목에 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2) (개정 2011.5.19)

⑥ 학사과정의 성적은 과목별로 종합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22)

평 어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₀	90 ~ 94	4.0
B ⁺	85 ~ 89	3.5
B ₀	80 ~ 84	3.0
C ⁺	75 ~ 79	2.5
C ₀	70 ~ 74	2.0
D ⁺	65 ~ 69	1.5
D ₀	60 ~ 64	1.0
F	0 ~ 59	0

⑦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 (합격), “F” (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의학과 의 경우 “H” (우수), “P” (합격), “F” (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2.) (개정 2022.01.24.)

⑧ 성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개정 2013.12.31)

⑨ 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2.)

제47조(학사경고, 유급) ①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실시한다. (개정 2015.2.10) (개정 2019.10.2)

1.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가 6학점 이상인 자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의 경우에는 해당학년 최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20.02.28.) (개정 2022.01.24.) (개정 2022.08.09.)

1. 의학과 : 1, 2학기 전공과목 중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
2. 약학과 : 1, 2학기 전공과목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또는 전공과목 중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
3. 간호학과 : 학년 말 성적평점이 2.0 미만인 자

③ 일반대학원의 경우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실시

한다. (신설 2018.1.31)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 및 유급한다.
(신설 2008.12.16) (개정 2011.5.19) (개정 2015.2.10) (개정 2020.03.31)

1. 학사경고

- 가.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2 이하인 자
- 나.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유급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자 또는 1학년(1학기 및 2학기) 과정 재학생 중 해당 학년 말 필수과목(실무 필수과목 제외) 성적의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

⑤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원과정의 수료 및 학위취득) ① 대학원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1.5.19) (개정 2015.2.10) (개정 2020.02.28) (개정 2020.03.31)

- 1. 제37조에 따라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친 자
- 2.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49조의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 3.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자.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2 초과인자

② 대학원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대학원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연구학점의 취득 및 각 학사운영규칙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논문대체제도를 이수하는 경우 학위논문 대신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20.02.28) (개정 2020.03.31.) (개정 2023.01.13.)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개정 2020.03.31)

- 1. 정보통신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연구과제 결과 심사 청구 (개정 2007.3.26)
- 2. 특수대학원 : 제49조에 의한 전공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

⑤ 대학원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20.03.31) (개정 2020.09.04.) (개정 2021.08.02.)

1. 일반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석사 (전문간호사과정) (금융공학과)	30 (42) (42)	24 (36) (36)	6 (6) (6)
박사	45	30~36	9~15
석·박사통합	63	48~54	9~15

※ 박사과정 전공학점의 경우 학과별 지정과목 이수자는 총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있음.

2. 전문대학원

가.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석사	30	24	6
박사	69	60	9
석·박사통합	63	54	9

나. <삭제 2020.02.28>

다. 법학전문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전문석사	96	96	-
전문박사	42	36	6

3. 특수대학원

구분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경영대학원		39	33	6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42(36)	36(30)	6(6)
	국제통상학과	39(45)	33(39)	6(6)
	NGO학과	36	30	6
	국제개발협력학과	36	30	6
	<삭제 2021.08.02.>	<삭제 2021.08.02.>	<삭제 2021.08.02.>	<삭제 2021.08.02.>
	융합에너지학과	39	33	6
	시민사회학과	39	33	6
공학대학원		30	24	6
공공정책대학원		30	24	6
교육대학원		30	24	6
정보통신대학원		30	24	6
교통·ITS대학원		30	24	6
보건대학원		30	24	6
임상치의학대학원		30	24	6
IT융합대학원		30	24	6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30	24	6

* 국제경영학과 ()는 ‘리더십과 코칭전공’, 국제통상학과 ()는 ‘국제통상정책전공’ 이수학점임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3.1.25) (개정 2015.2.10)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5.9) (개정 2017.2.13) (개정 2017.7.14) (개정 2018.5.11) (개정 2019.4.29.) (개정 2021.08.02.) (개정 2022.02.25.) (개정 2023.01.13.)

1. 공과대학(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제외),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외) : 128학점
2.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58학점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140학점
4. <삭제 2019.4.29>
5.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 120학점
6. 의과대학 : 270학점
7. 간호대학 : 128학점
8. 약학대학 : 260학점

② 학사과정의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졸업이수학점/수업연한)×학년’에 따라 산출된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개정 2011.12.23) (개정 2012.5.10) (개정 2013.1.25)

1. <삭제 2013.1.25>
2. <삭제 2013.1.25>
3. <삭제 2013.1.25>
4. <삭제 2013.1.25>

③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6) (개정 2012.5.10) (개정 2015.2.10) (개정 2019.10.2.) (개정 2022.01.24.)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2.0이상인 자(다만,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6이상인 자, 의학과는 F(불합격) 등급이 없는 자)
4.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5. 각 학과(전공)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④ 기타 교과별 학점 등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제51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 ① 본 대학교의 학사과정에서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당해학

기 취득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누계평점평균이 3.75 이상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개정 2015.2.10) (개정 2016.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8) (개정 2017.2.13.) (개정 2023.01.13.)

1.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대학원 1학기 등록을 필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조기졸업을 한 자 중 대학원 1학기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한다. (신설 2016.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한 자와 의학사학위과정, 간호학사학위과정, 약학사학위과정, 공학사학위과정의 공군ICT전공은 조기졸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8) (개정 2016.5.9)

⑤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인 자가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52조(학사학위취득유예)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재학 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 (개정 2013.12.31) (개정 2019.12.11)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1)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①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2 내지 별표4, 별표10에 의한 별지1 내지 별지7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공명에 이어 이수한 트랙명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개정 2008.7.10) (개정 2008.12.16)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0.11.1) (개정 2011.1.11) (개정 2011.5.19)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2.11.19) (개정 2013.1.25) (개정 2013.5.1) (개정 2013.7.5) (개정 2013.12.31) (개정 2014.5.30) (개정 2014.6.30)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8.23) (개정 2016.12.29)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7.7.3) (개정 2017.7.14) (개정 2018.1.31) (개정 2018.8.12) (개정 2019.01.15) (개정 2019.4.29) (개정 2019.7.29) (개정 2019.10.2) (개정 2020.03.31) (개정 2020.04.24) (개정 2020.09.04.) (개정 2021.1.20.) (개정 2021.2.19.) (개정 2021.05.07.) (개정 2021.08.02.) (개정 2022.01.24.) (개정 2022.02.25.)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③ 일반대학원의 동일학과 내에서도 2개 종류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의2(일반대학원 복수학위수여) 일반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 등 세부사항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 (신설 2008.12.16)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5, 별표10에 의한 별지8의 학위기(중)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16) (개정 2009.2.20) (개정 2009.4.2) (개정 2009.7.27) (개정 2009.10.18) (개정 2010.2.26) (개정 2010.7.21) (개정 2011.8.11) (개정 2012.5.10) (개정 2012.7.17) (개정 2013.1.25) (개정 2014.02.17) (개정 2015.2.10) (개정 2015.05.18) (개정 2015.08.13) (개정 2016.1.8) (개정 2016.2.3) (개정 2016.5.9) (개정 2016.8.23) (개정 2017.2.13) (개정 2017.4.19) (개정 2017.7.14) (개정 2018.1.31) (개정 2018.5.11) (개정 2019.4.29) (개정 2019.7.29.) (개정 2021.2.19.) (개정 2022.01.24.) (개정 2022.02.25.)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13.)

②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트랙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개정 2016.8.23) (개정 2017.7.14.) (개정 2022.01.24.)

③ 졸업 시기는 2월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졸업자 또는 1학기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은 8월로 할 수 있다.

④ 제44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외국대학에 제공하여 운영하는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표11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01.13.)

제55조(학위취소) 총장은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시간제등록생 등의 운영

제56조(시간제등록생) ①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4.2) (개정 2010.7.21)

② 시간제등록생은 본 대학교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며, 선발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및 면접고사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신설 2009.4.2) (개정 2009.7.27)

③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수업방법은 본 대학교 학생

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반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4.2) (개정 2010.7.21)

④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학점은행제 운영)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②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점의 인정범위 및 수업관리, 학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8.23)

제5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일반교양, 직무교양, 학술연구 또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위탁교육) ① 본 대학교는 산업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회 및 학생단체) ① 본 대학교에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학원 원우회를 둔다. (개정 2007.7.25)

②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을 추천한다. (신설 2007.7.25)

③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④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학생 자율적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25)

제61조(등록금협의회) <삭제 2011.12.23>

제62조(활동범위) ①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학생의 학업, 학생생활 및 학생활동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사회봉사, 후생복지 및 상벌

제64조(사회봉사) ① 본 대학교는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회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장학금 등)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및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관한 학사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금 지급규칙」 등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 과정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5.10)

제66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3.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운동경기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67조(징계처분) ① 학생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구성 등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생상벌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4.2)

제10장 재정

제68조(재원의 다양화) 본 대학교는 학생들이 납입하는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69조(재정의 건전성) ① 본 대학교는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②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회계에 관한 자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8.7.10)

제11장 기타

제7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의 개정은 규정류조정위원회의 검토와 교무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9.7.29)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14일 동안 사전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개정 2011.12.23) (개정 2013.12.31)

제71조(학사운영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및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

제72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4.2)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2004년 10월 12일 폐지된 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 개정 당시 스포츠마케팅학부 및 스포츠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21일 개정 이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단,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④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응용사회학과 정치외교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를 수여한다.

⑤ 200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의 환경.산업보건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4에도 불구하고 ‘보건학석사(환경.산업보건)’를 수여한다.

⑥ 제32조 4항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⑦ 제53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학위는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⑧ 제54조 제1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 입학자 중 공학교육인증 이수자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⑨ 이 학칙에서 ‘정보통신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정보통신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행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응용사회과학과 행정학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제53조 별표2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5의 학사과정 중 응용화학생명공학부의 경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따른 조치)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2018년 3월 1일자로 법과대학을 폐지하며, 법과대학 폐지 이후 재학생 및 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개정 2011.12.23) (개정 2016.12.29)

② 2009학년도부터는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사학위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2009학년도 전에 입학한 법학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0조 제3항 제4호는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5의 학사과정 중 응용화학생명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제 중단에

따라 2009 ~ 2010학년도 입학생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1학년도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임상치의학대학원 입학생은 임상치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부터는 자유전공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며,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유전공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사조직 개편과 관련한 제9조 제2항, 제23조의2 제1항, 제34조,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6항 및 제7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4조 제1항, 별표5, 별표9는 2012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학부 또는 전공으로 입학하여 재적 중인 자의 소속은 2012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전공학부 재적생 중에 전공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본인이 종전의 학부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등 및 하위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부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3.1.25)

1.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기계공학과로,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산업공학과로, 응용화학생명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응용화학생명공학과로, 건축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건축학과로,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자는 화학공학과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는 자는 신소재공학과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자는 환경공학과로, 건설시스템공학을 전공하는 자는 건설시스템공학과로, 교통시스템공학을 전공하는 자는 교통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전자공학과로, 정보컴퓨터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정보컴퓨터공학과로, 소프트웨어융합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미디어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미디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을 전공하는 자는 수학과로, 물리학을 전공하는 자는 물리학과로, 화학을 전공하는 자는 화학과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자는 생명과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경영학과로, e-비즈니스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e-비즈니스학과로, 금융공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금융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인문대학 인문학부의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자는 국어국문학과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자는 영어영문학과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는 자는 불어불문학과로, 사학을 전공하는 자는 사학과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는 자는 문화콘텐츠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및 스포츠레저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법과대학 법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법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의과대학 의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의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9. 간호대학 간호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간호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0. 약학대학 약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약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2012학년도 이전에 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속한 전공의 연계학과로 전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1조에 의한 전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과할 수 있다. 다만,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제31조에 의한 전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계학과는 「업무분장규칙」 별표1과 같다.
- ③ 학사조직 개편 이전의 학부 및 전공에 관한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장, 학과장 등이 수행한다.
1.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응용화학생명공학부, 건축학부, 전자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부, 미디어학부,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부, 금융공학부, 법학부, 의학부, 간호학부, 약학부 학부장의 임무는 각각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건축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법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의 학과장이 수행한다.
 2. 화공·신소재공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학부장의 임무는 공과대학장이 수행한다.
 3. 자연과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학부장의 임무는 각각 자연과학대학장,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이 수행한다.
 4. 스포츠레저학부 학부장의 임무는 스포츠레저학전공 주임교수가 수행한다.
 5. 각 전공주임교수의 임무는 「업무분장규칙」 별표1의 연계학과와 학과장이 수행하고, 학과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학과장이 수행한다. 다만, 사회과학대학의 각 전공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주임교수가 수행한다.

- ④ 학사조직 개편 후 학사과정 학사업무에 관하여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따라 학장, 학과장 등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⑤ 학사조직 개편 후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사업무에 관하여 ‘계열장’ 또는 ‘학과(부)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따라 학장, 학과장 등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은 2012.7.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4조의2(전공진입)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공공정책대학원의 전공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하며, 교육대학원의 전공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국제대학원의 전공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별표5의 신소재공학전공 및 교통시스템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제 포기는 2013년 3월부터 신소재공학전공 및 교통시스템공학전공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2005~2012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는 자는 복수전공(부전공 포함)이나 2013학년도 심화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제9조 별표5의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2013학년도 및 그 이전에 대학, 학부 또는 전공으로 입학하여 재적 중인 자의 소속은 2013년 3월 1일부터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는 경제학과로, 행정학을 전공하는 자는 행정학과로, 심리학을 전공하는 자는 심리학과로, 사회학을 전공하는 자는 사회학과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자는 정치외교학과로, 스포츠레저학을 전공하는 자는 스포츠레저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의 학부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사회과학대학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사과정 학사업무에 관하여 ‘전공주임교수’가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따라 학과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 제1호의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변경 기준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별표2. 일반대학원’의 문화콘텐츠학과 및 의약생명정보시스템협동과정 신설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 제1항의 예·결산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 제7항은 2013.9.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공학협동과정’에 재적중인 자는 개정 이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국제대학원의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공학대학원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21조 환경공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제49조 제3호 경영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⑤ 제49조 금융공학과 이수학점 변경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5 학사과정의 사이버보안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0조 제1항 제4호는 201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학부 지역연구전공 세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별표5 개정에 따른 국제학부 지역연구전공의 경우, 지역연구(일본)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지역연구로 지역연구(중국)을 전공하는 자는 중국지역연구로 전공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이버보안학과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정보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보안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의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정보컴퓨터 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재적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소프트웨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재적생에 대해서는 이 학칙 시행 전 소속 학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통합된 공학교육전문과정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폐지 이전의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4조(공공정책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별표4의 특수대학원 중 공공정책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따른 제53조 학위기 수여는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생 및 외국인 학생 전공진입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2 제1항의 편입생 및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은 2012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3조의2 별표10 계약학과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건축학전공 졸업 이수학점은 201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51조 제1항의 조기졸업은 건축학전공의 경우 2016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제4항의 별표4 교육대학원의 전공변경 및 전공폐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4항의 별표4 임상치의학대학원의 전공변경은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바뀐 전공명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4항의 별표4 정보통신대학원의 전공변경 및 제23조의2 제2항 별표10 정보통신대학원의 전공변경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제49조 제1호의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이수학점 변경기준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9조 제1호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수학점 변경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49조 제1호의 일반대학원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이수학점 변경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 임상치의학대학원의 전공 폐지 및 신설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 경영대학원의 전공 폐지 및 신설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4항의 별표4 교육대학원의 전공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미디어콘텐츠전공과 소셜미디어전공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일반대학원 건설교통공학과 토목공학전공 및 교통공학전공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각각 건설시스템공학과 및 교통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일반대학원 재료공학과 재적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신소재공학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 교육대학원의 전공변경, 폐지, 신설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 경영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전공신설과 제23조의2 제3항 별표10 정보통신대학원 전공신설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⑥ 제35조 제6호의 일반대학원 제적 기준과 제47조 제4항의 일반대학원 학사경고 실시 기준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별표2의 일반대학원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학위명 추가에 따른 제53조 학위기 수여는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단서의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2항 별표5의 학사과정 중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제 포기는 2020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2020년 2월 졸업생까지는 공학교육인증제 과정에 해당되고, 2020년 8월 졸업생부터 심화교육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NCW학과 재적생은 2020년 3월 1일부터 국방디지털융합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별표 4의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의 전공 명칭 변경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0522호: 2020.01.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조치) ① 제37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하는 학생은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0699호: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조치)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계약학과 명칭 변경 및 폐지 관련 경과조치)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과명을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67호: 2020.03.31>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339호: 2020.04.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융합건축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개발학과 재적생은 스마트융합건축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종전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남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기획팀-414호: 2020.05.11>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909호: 2020.07.29>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195호: 2020.09.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별표4의 보건대학원 국제보건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제49조 국제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2059호 : 2021.0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사이버보안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1.0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및 제54조 별표5의 디지털휴머니티 연계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597호 : 2021.05.0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약학 학위 추가 및 의용공학과 이학, 의학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270호 : 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조치) ① 제50조 제1항 제8호 개정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하는 학생은 개정 이전의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 일반대학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대학원 학과 신설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국제대학원 시민사회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전공명을 유지한다.

부 칙 <기획팀-1487호 : 2021.09.0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457호 : 2022.01.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공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의용공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간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간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및 제54조 별표5의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과대학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 제47조, 제50조의 의과대학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미디어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재적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기획팀-478호 : 2022.04.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9조 및 제54조 별표5의 규정 개정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2023년 3월 1일부터 첨단신소재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기획팀-706호 : 2022.06.0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228호 : 2022.08.0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09.2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0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 및 제21조 제3항 별표9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미디어학과 재적생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디지털미디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데이터인문 및 인간·사회·규범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AUT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제12항은 2021년 2월부터 적용한다.

제6조(융합시스템공학과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2023학년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칙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학위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N.A플러스융합학과 신설 및 문화콘텐츠학과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대학원 논문대체제도 및 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8조 제3항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체제도 및 제3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45조 제9항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학대학원 학과 신설, 학과(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의 공학대학원 학과 신설, 학과(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 및 제53조 별표10의 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구

구 분	기 구		업무지원부서
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다산학부대학		
일반대학원	대학원		
전문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특수학부	국제학부		
대학교본부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국제협력처		
부속기관	글로벌미래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교무처
	중앙도서관, 박물관		연구정보처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학생처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기획처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국제교육센터		국제협력처
연구기관	공학연구소		공과대학
	정보통신진지연구소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자연과학대학
	경영연구소		경영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대학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약과학연구소		약학대학
	다산기초교육연구소		다산학부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공공정책연구소, 교육연구소, 교통연구센터, 나노·정보융합기술연구소, 노인보건연구센터*, 뇌질환융합연구센터*,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마중정책연구소,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세계학연구소, 세포기능체연구소, 세포치료센터*, 수원발전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융합연구센터, 아주중개연구센터, 아주중개오피스센터*, 아주통일연구소,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열대학연구소, 외상연구소*,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센터,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 의과학연구소*, 의약바이오데이터센터*, 개방형실험실 운영지원센터*, 의학연구협력센터*, 인체유전체지원센터*, 인플라메이징중개의학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 자율주행모빌리티연구센터, 장위국방연구소,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통번역연구소, 환경연구소,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3차원면역시스템이미징핵심연구지원센터*,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		연구정보처
지원기관	공과대학 소속	공학교육혁신센터	
	다산학부대학 소속	의사소통센터	
	교육대학원 소속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중소기업법무센터	
	교무처 소속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연구정보처 소속	공동기기센터	
	학생처 소속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종합지원센터	
	총무처 소속	예비군연대, 안전관리센터	
	국제협력처 소속	불어권협력센터	
	중앙도서관 소속	출판부	
	대학교육혁신원 소속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대학언론사 소속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학보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의산학교육원, 신산업기술혁신원		
의료원	의료원 통합 대학·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연구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첨단의학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정보혁신실		
총장직속기구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공유단, SW융합교육원, 인권센터		
특별기구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창조인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개발센터, 성인학습 및 HD건설팅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대학경쟁력연구원, 아주브레인추진사업단		

주) *표시 기구는 의료원 통합 기구임

별표2. 일반대학원

학과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시스템공학과			
도시개발학과			
스마트융합건축학과			
환경안전공학과	공학석사	×	×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석사	미디어학박사	미디어학석사, 미디어학박사
지식정보공학과	공학석사	×	×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비즈니스애널리틱스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박사	글로벌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문학석사	×	×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석사	문화콘텐츠학박사	문화콘텐츠학석사, 문화콘텐츠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학석사, 문학박사
응용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의생명과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약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약학석사, 약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약학석사, 약학박사

학과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경제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경제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분자과학기술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교육학과	×	교육학박사	×
금융공학과	금융공학석사	금융공학박사	금융공학석사, 금융공학박사
융합의과학과	의용공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의용공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의용공학석사, 의용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D.N.A. 플러스융합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경영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경영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우주전자정보공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생명공학과*			
NCW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	공학석사	×	×
의약생명정보시스템협동과정*	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미디어학석사 문학석사	미디어학박사 문학박사	미디어학박사 문학박사
<삭제 2021.05.07.>	<삭제 2021.05.07.>	<삭제 2021.05.07.>	<삭제 2021.05.07.>
AI 융합네트워크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과학기술정책학과*	공학석사 정책학석사	공학박사 정책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책학석사, 정책학박사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문학석사 의료인문학석사	의료인문학박사	의료인문학석사, 의료인문학박사
<삭제 2022.04.28.>	<삭제 2022.04.28.>	<삭제 2022.04.28.>	<삭제 2022.04.28.>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고등기술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전자부품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농촌진흥청**	○	○	○
한국나노기술원**	○	○	
LIG넥스원(주)**	○	○	○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	○	○
한화탈레스(주)**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한국기계연구원**	○	○	○

주1)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로 표기함 (개정 2012.5.10.)

주2) ‘*’는 학과간협동과정을, ‘**’는 학연산협동과정을 의미함 (신설 2012.5.10.)

별표3.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학 과	설치 학위과정 및 학위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정보통신)	공학박사(정보통신)	공학석사(정보통신) 공학박사(정보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법학전문박사	-

주) <삭제 2020.02.28>

별표4.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위명
공학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	공학석사(기계시스템공학)
		재료공학	공학석사(재료공학)
	정보전자공학과	정보전자공학	공학석사(정보전자공학)
	화학생명공학과	응용화학	공학석사(응용화학)
		생명공학	공학석사(생명공학)
	환경안전공학과	환경안전공학	공학석사(환경안전공학)
	산업데이터시스템학과	산업데이터시스템	공학석사(산업데이터시스템)
		품질시스템	공학석사(품질시스템)
	도시개발학과	도시개발	공학석사(도시개발)
		도시건축	공학석사(도시건축)
	지식재산공학과	지식재산공학	공학석사(지식재산공학)
	물류시스템 및 SCM학과	물류시스템 및 SCM학	공학석사(물류시스템 및 SCM학)
	에너지학과	에너지공학	공학석사(에너지공학)
		에너지경제학	에너지경제학석사(에너지경제학)
	융합ESG학과	융합ESG	공학석사(융합ESG)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석사(국제통상학)
		국제통상정책	국제통상학석사(국제통상정책)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석사(국제경영학)
		리더십과 코칭	경영학석사(리더십과 코칭)
	NGO 학과	NGO학	국제관계학석사(NGO학)
	<삭제 2021.08.02.>	<삭제 2021.08.02.>	<삭제 2021.08.02.>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국제학석사(국제개발협력학)
	융합에너지학과	에너지과학정책	에너지과학정책학석사(에너지과학정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시민사회	시민사회학석사(시민사회)
		시민사회리더십	시민사회학석사(시민사회리더십)
		경영관리	경영학석사(경영관리)
		재무	경영학석사(재무)
		회계학	경영학석사(회계학)
		경영전략	경영학석사(경영전략)
		인사조직	경영학석사(인사조직)
		마케팅	경영학석사(마케팅)
		MS/OM	경영학석사(MS/OM)
		IT비즈니스	경영학석사(IT비즈니스)
		헬스케어	경영학석사(헬스케어)
		코칭	경영학석사(코칭)
		협상	경영학석사(협상)
		ERP	경영학석사(ERP)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위명
		창업벤처	경영학석사(창업벤처)
		연구기술경영	경영학석사(연구기술경영)
		비즈니스애널리틱스	경영학석사(비즈니스애널리틱스)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행정학)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전자정부	행정학석사(전자정부)
	정책학과	부동산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수학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교육학석사(소프트웨어교육)
		상담심리	교육학석사(상담심리)
		역사교육	교육학석사(역사교육)
		평생교육및HRD	교육학석사(평생교육및HRD)
		대학행정관리	교육학석사(대학행정관리)
		특수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삭제 2019.10.2>	<삭제 2019.10.2>
		<삭제 2019.10.2>	<삭제 2019.10.2>
		<삭제 2018.1.31>	<삭제 2018.1.31>
		심리치료교육	교육학석사(심리치료교육)
		<삭제 2016.8.23>	<삭제 2016.8.23>
		융합인재 및 영재교육	교육학석사(융합인재 및 영재교육)
		진로진학상담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AI융합교육	교육학석사(AI융합교육)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처리/전자상거래	공학석사(정보처리/전자상거래)
		정보통신	공학석사(정보통신)
		사이버보안	공학석사(사이버보안)
		정보통신/C4I	공학석사(정보통신/C4I)
		사이버보안/C4I	공학석사(사이버보안/C4I)
		IoT(사물인터넷)	공학석사(IoT(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시스템/C4I	공학석사(유비쿼터스시스템/C4I)
		정보시스템감리	공학석사(정보시스템감리)
		C4ISR	공학석사(C4ISR)
		소프트웨어아키텍처	공학석사(소프트웨어아키텍처)
		지능형소프트웨어	공학석사(지능형소프트웨어)

특수대학원	학 과	전 공	학위명
		BDS	공학석사(BDS)
교통·ITS대학원	교통·ITS학과	교통공학	공학석사(교통공학)
		ITS	공학석사(ITS)
	철도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	공학석사(철도시스템)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과 관리	보건학석사(보건정책과 관리)
		역학과 건강증진	보건학석사(역학과 건강증진)
		안전보건	보건학석사(안전보건)
		구강위생관리	보건학석사(구강위생관리)
		국제보건	보건학석사(국제보건)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과	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통합치의학	치의학석사(통합치의학)
		치주보철·임플란트학	치의학석사(치주보철·임플란트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임상구강보건학과	임상구강보건학	구강보건학석사(임상구강보건학)
IT융합대학원	IT융합공학과	정보전자	공학석사(정보전자)
		국방IT	공학석사(국방IT)
글로벌 제약임상대학원	글로벌 제약임상약학과	임상약료	약학석사(임상약료)
		의약	약학석사(의약)
		화장품·식의약과학	약학석사(화장품·식의약과학)

별표5. 학사과정

대 학	학 과	전 공	학위명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공학사
	산업공학과	산업공학*	공학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학사
	첨단신소재공학과	첨단신소재공학	공학사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	공학사
	환경안전공학과	환경안전공학*	공학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	공학사
	교통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	공학사
	건축학과	건축학	건축학사
		건축공학*	공학사
	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시스템공학	공학사
	AI모빌리티공학과	AI모빌리티공학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	공학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	공학사
		ICT융합**	공학사
		글로벌IT***	공학사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	공학사
	디지털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	디지털미디어학사
	인공지능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	공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	이학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사
	화학과	화학	이학사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이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사
	e-비즈니스학과	e-비즈니스학	경영학사
	금융공학과	금융공학	금융공학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	경영학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문학사
		한국어문***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문학사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	문학사
	사학과	사학	문학사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문학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사
	심리학과	심리학	심리학사

대 학	학 과	전 공	학위명
	사회학과	사회학	사회학사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정치학사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	스포츠레저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	의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	약학사
(다산학부대학)	글로벌교양학부	-	-
(특수학부)	국제학부	국제통상	국제통상학사
		일본지역연구	지역학사(일본학)
		중국지역연구	지역학사(중국학)
		한국학	한국학사
(연계전공)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문화학사
		인문사회데이터분석	공학사
		자동차SW	공학사
		미래자동차	공학사
		데이터인문	데이터인문학사
		인간·사회·규범	인간사회규범학사

주1) *는 공학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전공)으로서 이를 이수한 학생은 학위기 등에 ‘00공학 전문’으로 표기하고,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위기 등에 ‘00공학’으로 표기한다.

주2) **는 제 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주3) ***는 순수 외국인 학생만 해당(신설 2019.4.29)

별표6.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과 정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석사과정	학과												
	학과간협동과정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74	474
	학연산협동과정												
	소 계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94	474	474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과												
	학과간협동과정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36	236
	학연산협동과정												
	소 계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36	236
총 계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10	710

* <삭제 2023.01.13.>

별표7.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과 정	학 과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보통신공학과	-	-	-	-	-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정보통신공학과	-	-	-	-	-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법학과	50	50	50	50	50	50
	전문박사과정	법학과	10	10	10	10	10	10
총 계			60	60	60	60	60	60

주) <삭제 2011.12.23.>

별표8.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공학대학원	96	96	96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경영대학원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공공정책대학원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교육대학원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국제대학원	8	8	8	6	6	6	6	6	6	6	6	6
정보통신대학원	190	190	190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교통·ITS대학원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보건대학원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임상치의학대학원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IT융합대학원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총 계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1,145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학	학과(전공)		학년도 별 입학정원(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39	139	138	133	133	133
	산업공학과		85	85	84	84	84	84
	화학공학과		45	45	44	44	44	44
	신소재공학과		38	38	38	-	-	-
	첨단신소재공학과		-	-	-	43	43	43
	응용화학생명공학과		71	71	70	70	70	70
	환경안전공학과		37	37	37	37	37	37
	건설시스템공학과		37	37	37	37	37	37
	교통시스템공학과		37	37	37	37	37	37
	건축학과	건축학(5년)	74	74	73	73	73	73
		건축공학(4년)						
	융합시스템공학과		1	1	1	1	1	1
	AI모빌리티공학과		-	-	-	40	40	40
소 계			564	564	559	599	599	599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214	214	212	192	192	192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	-	40	40	40
	소 계		214	214	212	232	232	23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04	104	103	103	103	103
	사이버보안학과		39	39	39	39	39	39
	디지털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	96	96	95	95	95	95
	소 계		239	239	237	237	237	237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2	42	41	41	41	41
	물리학과		33	33	33	33	33	33
	화학과		37	37	37	37	37	37
	생명과학과		46	46	46	46	46	46
	소 계		158	158	157	157	157	157
경영대학	경영학과		112	112	110	110	110	110
	e-비즈니스학과		44	44	44	44	44	44
	금융공학과		40	40	40	40	40	40
	글로벌경영학과		1	1	1	1	1	1
	소 계		197	197	195	195	195	195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0	30	30	30	30	30
	영어영문학과		60	60	60	60	60	60
	불어불문학과		27	27	27	27	27	27
	사학과		27	27	27	27	27	27
	문화콘텐츠학과		28	28	27	27	27	27
	소 계		172	172	171	171	171	171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52	52	52	52	52	52
	행정학과		42	42	42	42	42	42
	심리학과		43	43	43	43	43	43
	사회학과		29	29	29	29	29	29
	정치외교학과		29	29	29	29	29	29
	스포츠레저학과		12	12	10	10	10	10
	소 계		207	207	205	205	205	205
의과대학	의학과		40	40	40	40	40	40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70 (80)	70 (80)	70 (80)	70 (80)	70 (80)	70 (80)
약학대학	약학과		30	30	30	30	30	30
(특수학부)	국제학부		-	-	-	-	-	-
총계			1,891 (80)	1,891 (80)	1,876 (80)	1,936 (80)	1,936 (80)	1,936 (80)

주1) ‘-’ 표기는 입학정원이 없음을 의미함

주2) <삭제 2011.5.19.>

주3) <삭제 2016.12.29>

주4) 의학과 입학정원 40명중 12명은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함

별표10. 계약학과

설치대학(원)	설치형태	학과(전공)	학위명	입학정원(명)
소프트웨어융 합대학	채용조건형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ICT전공)	공학사	30
공공정책 대학원	재교육형	경기공공정책학과 (지역거버넌스)	행정학석사(지역거버넌스)	30

별표 11. 외국대학의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과정

외국대학	학과	전공	학위명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in Tashkent)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	공학사
	건축학과	건축공학	공학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사

별지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1-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박) 호

별지3.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4.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5.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전문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박) 호

별지6.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7.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석) 호

별지8. 학사과정 학위기

학 제 호

학 위 기(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전공(학사)

○○○전공(학사)

○○○부전공 이수

○○○마이크로전공 이수

○○○트랙 이수

년 월 일

아주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아주대 ○○○○ (학) 호

교원신규임용규칙

개정	1995.	3.	1
개정	1996.	3.	1
개정	1997.	7.	1
개정	1997.	9.	1
개정	1998.	2.	4
개정	1998.	2.	20
개정	1999.	3.	1
개정	2001.	6.	12
개정	2002.	6.	11
개정	2003.	1.	21
개정	2003.	7.	25
개정	2004.	3.	2
개정	2004.	6.	22
개정	2006.	9.	7
개정	2006.	9.	25
개정	2007.	8.	13
개정	2008.	5.	21
개정	2009.	8.	4
개정	2009.	11.	13
개정	2011.	2.	10
개정	2011.	7.	6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7.	19
개정	2014.	3.	14
개정	2017.	9.	15
개정	2019.	2.	27
개정	2019.	4.	17
개정	2020.	7.	2
개정	2021.	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4.03.02) (개정 2006.09.25) (개정 2012.7.19)

제2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임용기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이하 “신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9조에 의한다.(1998.02.20 호 삭제) (개정 2007.8.13)

제4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개정 2004.03.02) (2006.09.07) (개정 2008.5.21)

1. 계약기간
2. 연봉금액
3. 책임사항
4. 재임용 (개정 2004.03.02) (개정 2012.7.19)
5.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3.02) (개정 2012.7.19)
6. 기타 계약조건

제5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충원규모와 분야의 결정) 총장은 예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충원규모와 분야를 결정한다.

제 2 장 임 용 절 차

제7조(채용광고) 교원의 신규채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에 전공분야,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5.21) (개정 2009.8.4)

제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개정 2004.03.02)
2. 학위 및 성적증명서(개정 2004.03.02)
3. <삭제 1997.06.19>
4. 연구실적 목록 및 실적물

5. <삭제 1997.06.19>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신설 2004.03.02)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의 적격성 분류) 교무처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과 형식적 하자가 없는 지원자의 서류에 한해 이를 신입교원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2)

제10조 <삭제 1997.06.19>

제11조(심사대상 연구실적 및 평가기준)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의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03.02) (개정 2008.5.21)

제12조 <삭제 2002.06.11>

제13조(신입교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4.06.22>

② <삭제 2004.06.22>

③ <삭제 2004.06.22>

④ 신입교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초빙분야별로 구성한다.(신설 2004.03.02)(개정 2008.5.21)

⑤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초빙분야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초빙분야와 관련한 학과(전공)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4.19)

⑥ 심사위원은 초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제14조의 기초 및 전공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교외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04.03.02) (개정 2008.5.21)

⑦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신설 2004.03.02)

1. 지원자의 석·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2.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삭제 2004.06.22>

② <삭제 2004.06.22>

③ <삭제 2004.06.22>

④ <삭제 2004.06.22>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실시한다.(신설 2004.03.02)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분야의 세부전공과의 일치여부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거친 지원자의 연구실적물과 연구능력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거친 지원자의 교수로서의 품성, 자질 및 공개 강의 심사
- ⑥ 제5항의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신설 2004.03.02) (개정 2008.5.21) (개정 2011.07.06) (개정 2012.7.19) (개정 2019.4.17.) (개정 2020.07.02)

제14조의2(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삭제 2008.5.21>

② 심사단계별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03.02) (개정 2008.5.21.) (개정 2020.07.02)

1. 기초심사에서는 초빙분야의 전공일치여부를 가부로 평가하며, 부적격자는 전공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전공심사에서는 면접심사 대상자로 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③ 심사위원회는 순위가 매겨진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학과(전공)교수 회의에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4.19)
- ④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선정된 후보자를 관련 서류와 함께 신입교원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04.03.02) (개정 2008.5.21)

제15조 <삭제 2004.06.22>

제15조의2(신임교원선발위원회의 구성) ① 신임교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 라 한다)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연구정보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4.03.02) (개정 2007.8.13) (개정 2008.5.21) (개정 2009.11.13) (개정 2017.9.15)

② <삭제 2008.5.21>

제15조의3(선발위원회의 심사) ① 선발위원회는 학장이 추천한 2배수 후보자의 관련서류를 통해 심사위원회가 실시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심사절차의 적정성, 2배수 후보자에 대한 연구수월성과 교원으로서의 객관적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다.(신설 2004.03.02) (개정 2008.5.21.) (개정 2019.4.17)

- ② 선발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추천된 2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8.5.21)
- ③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 학과장 등은 필요시 선발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 2. 15.)

제15조의4(임용) 총장은 선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신규임용한다.(개정 2008.5.21)
(개정 2019.2.27)

제16조 <삭제 1997.06.19>

제17조 <삭제 2002.06.17>

제18조 <삭제 1997.06.19>

제19조(직급) 신임교원의 직급부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제20조(특별채용)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03.02) (개정 2011.2.10) (개정 2014.3.14)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② <삭제 2004.06.22>

③ 총장은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교수회의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개정 2012.4.19)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학과(전공)교수회의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다.(개정 2012.4.19)

⑤ 특별채용의 경우 제2조, 제7조,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총장은 학교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에 더하여 제11조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03.02) (개정 2007.08.13) (개정 2011.2.10)

제 3 장 신임교원의 신분

제21조(신분보장) ①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의한다.

제23조(보수) 신입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퇴직금) 신입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5조 < 삭제 1998.02.20 >

제 4 장 재임용

제26조 <삭제 2004.06.22>

제27조 <삭제 2004.06.22>

제28조(대상) 재임용은 교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7.19)

제29조(신청) ①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이 정하는 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월전까지 학과(전공) 및 대학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2.7.19)
② 총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2.7.19)

제30조(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 중에서 학과(전공)교수회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명 이상을 교외전문가로 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2.7.19)

② 위원회는 임용심사대상자의 임용기간 중의 연구 수행능력, 강의능력, 전공 영역 활동실적, 본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및 인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한다.(개정 2008.5.21)

1. 교수업적평가규칙에 따른 업적평가
2. 재임용심사평정(개정 2012.7.19)

제31조(절차) ① 위원회는 재임용심사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학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2.7.19)

② 학과장은 이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재계약임용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재임용 제청 가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2.7.19.) (개정 2019.2.27)

③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청한다.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7.19.) (개정

2019.2.27)

④ 제30조에 의한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당해 교원에게 소명기회(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5.21.)

⑤ 교원의 재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2.27)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8.5.21) (개정 2012.7.19)

제32조(재임용 최저 요건) ①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24조를 충족하여야 하며, 재임용심사평정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2.7.19)

제33조(통보)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한다.(개정 2012.7.19)

제34조(재직기간 산정) 신입교원이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신입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직년수에 산입한다.(개정 2012.7.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의 임용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칙 등 본 대학교 제 규정 및 교육법, 사립학교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의 임용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의 임용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6.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4항은 2002년 9월 1일 이후의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내지 제33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별지의 서식1은 2006년 9월 1일부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1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12.7.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 제6항의 별표1은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763호 : 2020.07.0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2228호 : 2021.02.1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영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절차	심사내용	세부심사기준	배점	비고
기초심사	전공분야 일치여부	학위취득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 경력 분야, 연구실적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빙전공과의 일치여부를 가·부로 평가	가·부	4배수 이상 선정
전공심사	연구실적물 평가 ¹⁾ (정량평가)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의 연구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을 정량적으로 평가	40점	
	연구능력 평가 ²⁾ (정성평가)	연구의 우수성, 잠재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의 연구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20점	
면접심사	면접 (교수로서의 품성 및 자질)	· 교수직에 대한 신념, 적성 · 사고의 긍정성, 가치관 · 태도, 언행 · 협동성 및 친화성	10점	2배수 선정
	공개강의 평가	· 강의능력(의사소통능력) · 전공에 대한 이해도 · 학문기여도(창의력) ·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30점	
계			100점	

주1) 연구실적물 평가의 경우 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경력정량(기간, 작품 수 등 객관적 지표) 평가를 최대 50%까지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주2) 연구능력 평가의 경우 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경력정성(수행업적의 우수성, 잠재력 및 창의성 등) 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별표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영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세부사항			교육중점		연구 중점	산학 협력 중점	비고
				전공	외국어 회화			
기초 심사	학위취득 전공분야,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빙전공과의 일치여부를 가·부로 평가			가·부				4배수 이상 선정 ¹⁾
전공 평가	정량 평가	연구 실적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의 연구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을 정량적으로 평가	20	-	50	10	
		교육 경력기간	초빙분야 관련 교육경력 기간을 정량적으로 평가	20	20	-	-	
		산업체 경력기간	초빙분야 관련 산업체경력기간, 작품 수 등 객관적 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	-	-	-	20	
	정성 평가	연구 역량	연구의 우수성, 잠재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의 연구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	10	-	20	10	
		교육 역량	초빙분야 관련 교육경력의 우수성과 잠재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	10	20	-	-	
		산학협력 역량	초빙분야 관련 산업체경력의 우수성과 잠재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학협력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	-	-	-	20	
면접 심사	공개 강의	· 강의능력(의사소통능력) · 전공에 대한 이해도 · 학문기여도(창의력) ·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30	40	10	20	2배수 선정
	면접	· 교수직에 대한 신념, 적성 · 사고의 긍정성, 가치관 · 태도, 언행 · 협동성 및 친화성		10	20	20	20	
계				100	100	100	100	

주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07.02)

교수업적평가규칙

제정	2007. 6. 22
개정	2009. 2. 20
개정	2009. 11. 13
개정	2010. 10. 22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10. 11
개정	2014. 2. 28
개정	2015. 2. 10
개정	2015. 9. 22
개정	2016. 2. 29
개정	2016. 3. 24
개정	2017. 2. 14
개정	2017. 9. 15
개정	2018. 8. 31
개정	2019. 4. 17
개정	2020. 1. 31
개정	2020. 6. 3
개정	2020. 9. 2
개정	2021. 4.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대상)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 중 대우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로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9.02)

제3조(평가영역 및 대상기간)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으로 나누며, 교육영역에는 강의, 학생지도, 연구영역에는 논문 및 특허, 저서, 학술회의, 연구활동, 봉사영역에는 교내·외 봉사, 산학협력영역에는 산학협력 관련 교육·연구·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8)

② 업적평가의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승진 및 성과승격 심사 시 매 학년도 3월 1일부 심사의 경우 심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 학년도 9월 1일부 심사의 경우 심사년도 6월 30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 단, 재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9.4.17)

제4조(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각 대학에 「○○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 및 업적평가
2. 단과대학 업적급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승급 및 성과승격에 관한 사항

제5조(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대학교 본부에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3)

③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업적급 산정 및 지급기준 심의
3.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이의 신청자에 대한 재심사
4. 전임교원의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

제6조(평가단위) 평가단위는 교원의 원소속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및 학과별 교수업적평가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개정 2015.9.22) (개정 2017.2.14) (개정 2018.8.31) (개정 2020.06.03)

제7조(평가절차) ① 평가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매년 12월중 전산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며, 소정기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9.15)

1. 봉사실적 : 교무처
2. 연구업적 : 연구정보처

②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자료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교원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이의신청)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기간 중 2학기 이상 휴직, 파견(연구년 제외) 중인 교원은 연구업적만을 평가한다.

② 연구년 교원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을 제외하고 연구 및 봉사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영역의 평가점수는 강의시간 및 수업평가의 기본점수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특별임용교원 중 연구교수는 연구영역만, 강의교수는 교육영역만 평가한다.

제10조(교수업적평가 확정 및 결과 통보) ① 교무처장은 최종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평가결과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통보하며, 산학협력영역의 평가결과는 산학부총장에게 통보하여 평가항목 개선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7)

제11조(평가결과의 비밀유지) ① 교수업적평가에 참여한 단과대학 및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과 관계 교원 및 직원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본인 및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외에 총장 및 교무처장, 관계 교원 및 직원이 교수업적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학별 기준) 각 대학(원) 및 학과의 승진·재임용 및 승급·성과승격 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4.19)

제 2 장 영역별 평가 기준

제1절 교육영역

제13조(교육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교육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제14조(교육영역 세부기준) 교육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의 강의시간은 ‘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3)
2.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3. 수업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목당 5점씩을 감점한다. 단, 윤강의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감점한다.

4. 연구년 교원은 강의시간 및 수업평가의 기본점수를 반영한다. 다만, 강의한 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8.31)
5. 수업평가 대상과목이 없는 교원은 전체 수업평가 평균 백분위 점수로 한다.
6. 1개 소학회 및 동아리에 1인 이상의 교원이 지도를 담당한 경우에는 제16조 제2호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7. 1인의 교원이 다수의 동아리 및 소학회를 지도한 경우에는 상한을 20점으로 한다.
8. 석·박사 배출 실적 중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6조 제2호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9. 매학년도 2월 정년퇴직 교원의 석·박사 배출 실적은 직전년도 교수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제2절 연구영역

제15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4.19.)

제16조(연구영역 세부기준) ① 연구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4.19) (개정 2014.2.28)

1. 연구업적은 평가기한 내에 출판된 업적에 한하여 평가한다(게재 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연구업적은 1인 100%를 기준으로 2인 70%, 3인 이상의 경우 $150\%/N$ 으로 산정한다. 단, 특허의 경우 N의 최대값을 15로 정한다. (개정 2018.8.31)
 3. 국내·외 학회지의 등급은 각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에 없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4. 업적평가에서 누락된 연구업적은 1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이를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5. 연구업적은 본 대학교 교원 신분으로 발표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한다.
 6. 동일한 연구업적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7. 연구비 수혜액은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을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8. 연구비 과제수는 연구기간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9. 특허는 특허권자가 본 대학교 단독명의 또는 외부기관과 본 대학교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09.11.13.)
- ② 연구업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8)
1. 논문 : 별쇄본
 2. 저서 : 출판책자
 3. 학술회의 발표실적 : 학회 논문집 사본
 4. 특허 : 등록증 사본
 5. 학술상 : 상장(패) 사본

- 6. 창작발표 : 발표문 사본
- 7. 기고 : 기고문 사본

제3절 봉사영역

제17조(봉사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봉사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개정 2014.2.28)

제18조(봉사영역 세부기준) 봉사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28)

- 1. 위원회 및 특별기여의 교내봉사 점수는 각 40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3)
- 2. 특별기여 교원에 대한 추천은 본부 부서장에 한한다.
- 3. 보직 및 위원회의 점수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총장이 임명한 위원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4. 교외봉사의 학회활동의 평가는 활동기간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4절 산학협력영역

제19조(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28)

제 3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정한 교원의 승진 · 재임용 및 보수 책정을 위한 승급 · 성과승격 심사 등에 활용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업적평가 대상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무급휴직 및 파견기간은 제외하되 연구업적은 포함한다. 다만, 공무 등에 의한 무급휴직 및 파견기간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적평가 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1절 승진

제22조(승진기준) ① 교원의 승진 기준은 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최저기준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0. 11) (개정 2014.2.28) (개정

2015.2.10) (개정 2020.06.03) (개정 2020.09.02.) (개정 2021.04.27.)

1. 승진에 필요한 교육영역의 필수최저요건은 연평균 14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 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의 필수최저요건은 단과대학(학과)별 최저기준 별표2와 질적 평가 최저기준 별표4를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와 별표4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개정 2017.2.14) (개정 2018.8.31) (개정 2019.4.17)
- ②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별표3으로 정하며, 교육영역 범위는 강의시간, 수업 평가, 대단위강의, 새로운 교과목개발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3에 규정한 교육,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개정 2014.2.28) (개정 2015.2.10) (개정 2016.3.24) (개정 2017.2.14) (개정 2018.8.31) (개정 2019.4.17) (개정 2020.01.31) (개정 2020.06.03) (개정 2020.09.02.) (개정 2021.04.27.)
- ③ 총장이 지정하는 교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심사 시 요구되는 제1항의 연구영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1) (개정 2014.2.28) (개정 2016.2.29)

제23조(심사기간) ① 승진심사 시 연구영역 심사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연수로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6.2.29)

② 최저 승진소요연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 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기준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승진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평가는 본 대학교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인정된 전적 대학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 전적대학의 재직기간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승진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상회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 ③ 교원이 매년 시행되는 승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승진심사 소요연한에서 제외한다.

제2절 재임용

제24조(재임용 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최저기준인 별표2를 해당직급 재직기간 동안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임교원 임용 심사 평정점수(별지1) 60점 이상으로 한다. 연구업적 최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개정 2017.2.14) (개정 2018.8.31) (개정 2019.4.17) (개정 2020.06.03) (개정 2020.09.02.) (개정 2021.04.27.)

- ② 재임용 제청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는 제22조 제2항과 같다. (개정 2014.2.28)
(개정 2016.2.29)

제25조(재임용 기준의 특례) ① <삭제 2012.10.11>

- ②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격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임용을 제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제3절 업적급

제26조(업적급 지급기준) ① 업적급 지급기준은 각 대학(원) 및 학과별로 정한다. (개정 2012.4.19)

- ② 총장은 학교발전에 공로가 큰 교원 또는 평가단위 그룹에게는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업적급 반영기간) 업적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 반영기간은 각 대학(원) 및 학과별로 정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근 3년으로 하고 3분의 1씩 반영한다. (개정 2012.4.19)

제4절 승급 · 성과승격

제28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정의) 승급 및 성과승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급’ 이라 함은 ‘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 상의 등급이 한단계 이상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승격’ 이라 함은 정년보장임용된 교원에 대해 ‘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 상의 5년 단위의 등급(정교수 A~D)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심사) ① 모든 교원은 매년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기준을 충족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임용된 교원의 경우 5년을 단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과승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성과승격 할 수 있다.
③ 교원이 매년 시행되는 승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성과승격 심사 소요연한에서 제외한다.

제30조(심사·대상 기간) ① 승급 및 성과승격의 심사대상 기간은 제3조 제2항과 같다.

- ② 승급대상자는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심사 받을 수 없다.

제31조(승급의 기준) 교원의 승급기준은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승급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개정 2020.06.03)

1. 책임시간 충족
2. 강의노트 공개
3. 수업계획서 공개
4. 수업평가 평점 3.5(5.0만점) 이상
5. 기타 소속 대학(원) 및 학과에서 정한 기준

제32조(성과승격의 기준) ① 정년보장임용 교원의 성과승격 연구업적의 최저기준은 별표2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개정 2017.2.14) (개정 2018.8.31.) (개정 2019.4.17) (개정 2020.06.03) (개정 2021.04.27.)

② 각 대학(원) 및 학과별 성과승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1.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는 원장) 및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 교원이 별도의 초과강사료 없이 연간 6학점 이상 초과 강의하고 그 내용이 승급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최저 연구업적 100%로 대체
2. 제1호의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각 대학(원) 및 학부에서 추천한 연구우수교수에게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임교원 교수시간을 매년 3학점씩 감면

제33조(승급 및 성과승격 기준 적용의 예외)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승급 및 성과승격 기준을 적용한다.

1. 정년보장임용 교원 중 ‘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의 상한 등급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승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승급 대상 교원이 파견, 연구년, 휴직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6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4.17)
3. 총장이 지정하는 교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승격 심사 시 요구되는 제32조 제1항의 연구업적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1)

제34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확정)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 및 학과장은 대학(원)별 자체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한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4.19)

제35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제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해당 년도에 한하여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승급 및 성과승격을 할 수 없다.

제36조(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의 총 인원은 승급 및 성과승격 대상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19.4.17)

1. 본 대학교 해당직급의 재직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2.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하는 연구업적 수월성의 기준을 충족한 자

제 4 장 보 칙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수업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교수업적평가제도」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 「교수업적평가제도」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 제1항의 상향되는 승진기준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 제1항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되, 제정 2018년 8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년보장임용된 부교수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 심사기간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2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호는 제정 2018년 8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무위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⑤ 제27조 ‘업적급 반영기간’은 2007학년도 업적급 지급부터 적용한다.

⑥ 제29조 제1항 ‘승급심사’의 경우 2008년도 승급대상자의 승급기준은 2007년 2학기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⑦ 제29조 제2항 ‘성과승격심사’의 경우 제정 2018년 8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년보장임용 교원의 연구업적은 현재 부여된 등급(A~D)을 기준으로 성과승격 심사대상의 전 기간(5년) 또는 잔여기간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9월 1일 성과승격 대

상자는 제정 2018년 8월 31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업적 최저기준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성과승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하되 다만,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후에는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연구영역 심사기간의 직급별 최저승진소요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0866호. 2011.7.21) 제2조 제2항에 의해 기존 전임강사 경력이 있는 조교수의 부교수 최저승진소요연수는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1항, 제24조 1항 및 제32조 1항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 2015년 2월 28일 이전 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0522호 : 202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2항 별표3의 미디어학과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은 2020년부터 반영한다.

부 칙 <기획팀-551호 : 2020.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4조, 제32조의 별표2의 적용은 2020년 이후 논문부터 적용하

며 이전 논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22조제1항제2호의 별표4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164호 : 2020.09.02.>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494호 : 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24조, 제32조 별표2의 산학협력영역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항목 개정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삭제 2020.06.03>

[별표2]

승진·재임용·성과승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

구분	필수최저요건(연평균)						해당대학(원)
	재임용	승진		성과승격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정교수A → 정교수B	정교수B → 정교수C	정교수C → 정교수D	
기준A	250	300	300	250	250	250	공과대학(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정보통신대학(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기준B	200	250	250	200	200	200	공과대학(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정보통신대학(미디어학과)
기준C	150	180	180	150	150	150	경영대학,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원 제외), 교육대학원
기준D	150	150	150	150	120	120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원), 다산학부대학

* 대학원 소속 교원은 이수전공 또는 중복배속학과를 기준으로 단과대학(학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과) 기준을 적용

□ 교수 승진·재임용·성과승격의 최저기준을 100%로 할 때 연구영역 최저 비율 및 영역별 최대 대체 가능 비율

구분		재임용	승진		성과승격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정교수A → 정교수B	정교수B → 정교수C	정교수C → 정교수D
연구영역(국가연구비 제외) 최소 비율		50%	50%	40%	20%	10%	10%
최대 대체 가능 비율	산학협력영역 ²⁾		50%	50%	60%	80%	90%
			100% ¹⁾				
	교육영역	우수교육성과	10%	10%	10%	10%	10%
		초과강의 ³⁾				10%	30%
	봉사영역						

- 1) 탁월한 산학협력실적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재임용, 승진, 성과승격이 가능함.
탁월한 산학협력실적 기준은 각 대학(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 2) SCIE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활동 대체 인정 기준
- * 평가항목 및 환산기준은 단과대학/학과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및 학과별 교수업적평가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항목		환산 기준		비고
		이공계	인문·사회계	
연구	산업체 연구비 O/H 2,000만원당	SCIE급 논문 1편 × 100% = 300점	SCIE급 논문 1편 × 200% = 600점	- 산학협력단에서 승인된 실적에 한함 - 국가연구비 포함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SCIE급 논문 1편 × 50% = 150점		
	기업연구소 교내 유치 (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SCIE급 논문 1편 × 100% = 300점		
기술이전	기술이전 1,000만원당	SCIE급 논문 1편 × 50% = 150점	SCIE급 논문 1편 × 100% = 300점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SCIE급 논문 1편 × 50% = 150점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1건당 (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SCIE급 논문 1편 × 50% = 150점		연 200% 이내
특허	국제 특허(등록) 1건당	SCIE급 논문 1편 × 100% = 300점		
	국내 특허(등록) 1건당	SCIE급 논문 1편 × 25% = 75점		
	실용신안 1건당	SCIE급 논문 1편 × 16.67% = 50점		
	신기술·제품인증 1건당	SCIE급 논문 1편 × 1.67% = 5점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SCIE급 논문 1편 × 8.33% = 25점		
교육/ 지원	현장실습방문지도 1명당	SCIE급 논문 1편 × 1.67% = 5점		

항목		환산 기준		비고
		이공계	인문·사회계	
	학생취업 지도 1명당	SCIE급 논문 1편 $\times$ 3.33% = 10점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지도 1과목당	SCIE급 논문 1편 $\times$ 25% = 75점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SCIE급 논문 1편 $\times$ 25% = 75점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1건당	-표준(국내):SCIE급 논문1편 $\times$ 8.33%=25점 -표준(해외):SCIE급 논문1편 $\times$ 16.7%=50점 -자율(국내):SCIE급 논문1편 $\times$ 1.67%=5점 -자율(해외):SCIE급 논문1편 $\times$ 3.33%=10점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SCI급 논문 1편 $\times$ 25% = 75점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기술자문 및 경영자문 - 자문료 1,000만원 미만 1건당 - 자문료 1,000만원 이상 1건당	- 자문료 1,000만원 미만: SCIE급 논문 1편 $\times$ 1.67% = 5점 - 자문료 1,000만원 이상: SCIE급 논문 1편 $\times$ 3.33% = 10점		연간 30점 이내
	목표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SCIE급 논문 1편 $\times$ 8.33% = 25점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SCIE급 논문 1편 $\times$ 3.33% = 10점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1건당	-신규(무료):SCIE급 논문 1편 $\times$ 1.67%=5점 -신규(유료):SCIE급 논문 1편 $\times$ 6.66%=20점 -유료전환:SCIE급 논문 1편 $\times$ 5%=15점		
창업	교원 창업(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SCIE급 논문 1편 $\times$ 100% = 300점		
	학생 창업 지도 (성공한 창업회사당 최초 1회 인정)	SCIE급 논문 1편 $\times$ 25% = 75점		

3) 초과강의료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교수시간 연간 15학점을 초과하는 1학점 당 연평균 필수 최저 요건의 10%씩 대체 가능

□ 기타학회학술지(50점) 및 기타 국제학술지(100점) 등 연구실적(논문) 인정 범위

- 기타학회학술지(50점) 인정하지 않음.
- 기타 국제학술지(100점)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SCOPUS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라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SCOPUS 정규논문 인정(한국연구재단)] 기준

- ▣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SCOPUS의 Document Type(6종)
: Article, Editorial, Erratum, Letter, Note, Review
- ▣ 정규논문으로 불인정되는 SCOPUS의 Document Type(4종)
: Article-in 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별표3]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에 필요한 영역별 실적물 범위

- 아래 *표시는 성과승격에만 반영되는 항목임

대학(원)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봉사 영역	산학협력 영역
공과대학		논문, 국가연구비, 작품(건축학과)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공학인증활동*	▶ 산업체 연구비 O/H ▶ 대형산학파제 수 ▶ 기업연구소 교내 유치 ▶ 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국제 특허(등록) ▶ 국내 특허(등록) ▶ 실용신안 ▶ 신기술·제품인증 ▶ 창작물 ▶ 현장실습방문지도 ▶ 학생취업 지도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술자문 및 경영자문 ▶ 목표지향적 현장파견 ▶ 지역소상공인 지원 ▶ 교원 창업 ▶ 학생창업 지도 ▶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논문, 국가연구비,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	논문, 국가연구비, 국제발표대회 논문집	초과강의*	—	
	미디어학과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전공부문 창작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초과강의*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물리, 화학, 생명과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	
경영대학		논문, 국가연구비, 저서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경영학 인증 및 국고유치 활동*	
인문대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영화 연출 및 시나리오 (문화콘텐츠학과)	초과강의*	교육사업봉사*	
사회과학대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약학대학		논문, 저서	—	—	
다산학부대학		논문, 저서	초과강의*, MOOC 강의 신규 개설	—	
교육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실무지도(소송수행지도실적, 법률상담지도실적, 문서첨삭지도실적, 소송사건 기록 개발), 시험지도(시험지도 실적)	법전문 인증평가 활동*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별표2 연구영역 최저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산학연구비와 합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별표4]

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 질적 평가기준

- * 부교수 승진 시와 정교수 승진 시 단과대학(학과)별 기준 중 한 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질적 평가기준은 교원별 대표연구업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연구업적물에는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 학술대회 실적을 포함함. 우수국제학술대회 실적은 가장 최신의 연구재단 지정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 승진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논문 건수는 주저자에 한해 인정하되, 교내공동 주저자(공동제1, 공동교신, 제1+교신)인 경우 1인의 실적(AIMS 연구실적상 연구책임자)으로만 인정함. 단, 약학대학의 경우 본 규칙 제16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편수를 계산함
- * IF백분위는 게재 시와 투고 시의 IF백분위 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하며, 주제별 분류들(subject categories) 중 가장 우수한 값을 가진 분류의 기준을 적용함
- * 승진임용 질적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실적은 승진임용 심사 대상 기간의 실적에 한함. 단, FWCI 실적은 승진 직전의 2개 학기 실적은 제외하고 산정함

대학(원)	학과	기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부교수 승진]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정교수 승진]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3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건축학전공 건축설계분야)]KCI IF(2-Year) 50% 이내 5건 -JCR IF(2-Year) 상위 20% 이내 1건 또는 상위 4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또는 상위 30% 이내 3건 혹은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 3 이상 1건 또는 우수국제학술대회 IF 2 이상 2건(논문과 우수국제학술대회 실적 간 교차 충족 허용)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혹은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 3 이상 1건 또는 우수국제학술대회 IF 2 이상 2건(논문과 우수국제학술대회 실적 간 교차 충족 허용)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미디어학과	-[인문·사회계열]KCI IF(2-Year) 50% 이내 5건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혹은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 3 이상 1건 또는 우수국제학술대회 IF 2 이상 2건(논문과 우수국제학술대회 실적 간 교차 충족 허용) -[인문·사회계열]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이공계열]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작품제작 부분, 전시 및 수상 부문에서 A등급 5건(최소 2건의 A등급 수상 포함) 또는 A등급 3건과 KCI IF(2-Year) 상위 50% 이내 2건

대학(원)	학과	기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부교수 승진]JCR IF(2-Year) 상위 20% 이내 1건 또는 상위 40% 이내 2건 -[정교수 승진]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또는 40% 이내 3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주저자 구분 없이 논문 건수 적용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건 또는 10 이내 2건
경영대학		-JCR IF(2-Year) 상위 25% 이내(또는 경영대학 기준의 특급 국제저널) 1건 또는 상위 5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인문대학		-KCI IF(2-Year) 상위 20% 이내 3건 또는 상위 50% 이내 5건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승진]KCI IF(2-Year/5-Year) 상위 20% 이내 2건 또는 상위 50% 이내 4건 ¹⁾ -[정교수 승진]KCI IF(2-Year/5-Year) 상위 20% 이내 3건 또는 상위 50% 이내 5건 ¹⁾ -JCR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1건 ²⁾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우수등급 이상의 해외학술저서 1건 또는 국내학술저서 2건 ³⁾
약학대학		-[전공약학]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편 또는 상위 20% 이내 2편 -[임상약학, 산업약학, 보건사회약학]JCR IF(2-Year) 상위 15% 이내 1편 또는 상위 30% 이내 2편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5 이내 1편 또는 10 이내 2편
다산학부대학		-KCI IF(2-Year) 상위 50% 이내 5건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법학전문대학원		-KCI IF(2-Year) 상위 50% 이내 5건 (단, 실무교원에 한해 KCI IF(2-Year) 상위 50% 이내 3건)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교육대학원		-KCI IF(2-Year) 상위 50% 이내 5건 -JCR IF(2-Year) 상위 10% 이내 1건 또는 상위 20% 이내 2건 -Field-Weighted Outputs in Top Citation Percentiles, per percentile 값이 10 이내 1건 또는 20 이내 2건

1) KCI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논문은 다음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

-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 SSCI/SCIE/A&HCI 1건을 KCI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2건으로 대체 가능
-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 SCOPUS 1건을 KCI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1.5건으로 대체 가능
-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 우수등급 국내 학술저서 1건을 KCI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2건으로 대체 가능

2) JCR IF(2-Year/5-Year) 상위 50% 이내 논문은 다음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

-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 SSCI/SCIE/A&HCI 2건 또는 SCOPUS 3건

3) 우수등급의 판정은 사회과학대학 내부 기준에 따름

※ 질적 우수성은 사회과학대학 내부 기준에 따르며, 내부기준의 제·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별지1]

전임교원 임용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성 명 :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평가단위 (점 수)	1 차 평 정	2 차 평 정
1. 교 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36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2. 연 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36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 봉 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8		
4. 기 타	○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학과내의 인화,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		
계		100		

◀ 제1차평정 평정일
 평정자 _____ 학부장(주임교수) 성 명 (인)

◀ 제2차평정 평정일
 평정자 _____ 대 학 (원) 장 성 명 (인)

2022년 대학(원) 및 학과별 교수업적평가 기준

※ 목차의 단과대학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과대학
- 정보통신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자연과학대학
- 경영대학
-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약학대학
- 다산학부대학
-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교육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별표3]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에 필요한 영역별 실적물 범위

- 아래 *표시는 성과승격에만 반영되는 항목임

대학(원)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봉사 영역	산학협력 영역
공과대학		논문, 국가연구비, 작품(건축학과)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공학인증활동*	▶ 산업체 연구비 O/H ▶ 대형산학과제 수 ▶ 기업연구소 교내 유치 ▶ 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국제 특허(등록) ▶ 국내 특허(등록) ▶ 실용신안 ▶ 신기술 제품인증 ▶ 창작물 ▶ 현장실습방문지도 ▶ 학생취업 지도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술자문 및 경영자문 ▶ 목표지향적 현장파견 ▶ 지역소상공인 지원 ▶ 교원 창업 ▶ 학생창업 지도 ▶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논문, 국가연구비,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	논문, 국가연구비, 국제발표대회 논문집	초과강의*	—	
	미디어학과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전공부문 창작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초과강의*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물리, 화학, 생명과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	
경영대학		논문, 국가연구비, 저서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경영학 인증 및 국고유치 활동*	
인문대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영화 연출 및 시나리오 (문화콘텐츠학과)	초과강의*	교육사업봉사*	
사회과학대학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약학대학		논문, 저서	—	—	
다산학부대학		논문, 저서	초과강의*, MOOC 강의 신규 개설	—	
교육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MOOC 강의 신규 개설, 도전학기 지도교수*, 국제화프로그램 개발*	—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저서, 국가연구비	초과강의*,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실무지도(소송수행지도실적, 법률상담지도실적, 문서첨삭지도실적, 소송사건 기록 개발), 시험지도(시험지도 실적)	법전문 인증평가 활동*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별표2 연구영역 최저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산학연구비와 합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공과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text{연간수업학점수}-\text{연간책임시간})\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80)\times 0.25, 0](\text{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times$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30~50점 (전공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1.15	교재발간	• 초판 300점 이내 • 개정판 100점 • 복채터 100점 • 번역 50점 ※ ISBN 등재시에 한함 ※ 전공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공저: 해당점수/공저자수
1.16	영어강의	• 과목당 20점(학부, 일반대학원 과목에 한함) ※ 단, 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산정함.
1.17	강의노트 공개	• 미공개 과목당 5점 감점(학부과목에 한함) ※ 단, 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함.
1.18	교육우수교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승진,재임용,성과승격 반영)
1.19	MOOC 강의	• MOOC 강의 신규 개설 50점 (승진,재임용,성과승격 반영)
1.191	미래자동차신기술표준화 과목 강의	• 강의당 10점(상한 30점)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10점, 상한 20점) ※ 소학회는 전공에서 인정한 경우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일반·전문대학원 20/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 일반·전문대학원 60점/1인(논문지도교수) • 상담건수당 0.3점(상한 30점) ※ 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2	석사배출 실적	
1.23	박사배출 실적	
1.24	학생상담	•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50점 (성과승격 반영)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폐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공학교육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1.25	도전학기	
1.26	학생지도	• 공학교육인증원 평가단장 30점 • 공학교육인증원 위원 20점 • 평가자교육 및 세미나 참석 3점/회 • 개설반당 5점
1.30	공학교육개선	
1.31	공학교육활동	
1.32	CQI 보고서	
1.40	교육개선	• 최대 30점(학부에서 인정한 경우)
1.41	교육인프라개선	• 최대 20점(학부에서 인정한 경우)
1.42	교육부분 특별기여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성과승격 반영)
1.43	국제화 교육	
1.50	교육활동	• 교육부분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1.51	교육부분 국고사업 수주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평 가 내 용
2.10	논 문
2.11	국내 논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기타학술지는 제외) - 최우수 저널 150점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부여함 ※ 학과별 최우수저널은 1개만 선정해야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80점 - 기타학술지 50점
2.12	국제 논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IF상위 1% 이내의 최우수 해외저널 1,000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SCIE 300점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JCR IF(2-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2/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기타국제학술지¹⁾ 100점
2.30	학술회의
2.31	- 국내 학술회의 논문발표 건당 30점(연간상한 100점) ※ 단, 논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에서 우수학술회의로 인정한 경우 성과승격(B→C, C→D)에만 반영함
2.32	- 국제 학술회의 논문발표 건당 60점(연간상한 200점) ※ 단, 논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에서 우수학술회의로 인정한 경우 성과승격(B→C, C→D)에만 반영함
2.40	연구활동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41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연간상한 없음)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50	저서
	- 초판 300점 - 개정판 100점 - 북채터 100점 - 번역 50점 ※ 전공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공저: 해당점수/공저자수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건축학과

항목번호	업 적 평 가 내 용
2.50	작 품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51	• 건축공모전 수상 - 국제공모전 1등 300점(공인된 경우에 한함) - 국제공모전 입상 150점 - 국내공모전 1등 150점(공인된 경우에 한함) - 국내공모전 입상 80점
2.52	• 건축전문지 작품 게재 - 국제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150점(전문지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 국내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100점(전문지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2.53	• 작품전시회 출품 - 국제전시회 300점(지명도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내전시회 100점(지명도 있는 경우에 한함)
2.60	논 술(작품 비평)
2.61	• 국제유수학술지 및 건축전문지에 기고 80점(유수학술지 등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2.62	• 국내유수학술지 및 건축전문지에 기고 20점(유수학술지 등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3.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특수대학원 강의:과목당 10점	• 윤강: 10점×(담당 주/16주)
3.16	수상실적 0~10점	• 강의우수교수수상(교무처, 공대 시행) 제외 • 학부에서 인정한 경우, 연간상한 10점
3.17	기타활동 0~30점	• 발전기금 모집 또는 기부(학부에서 인정한 경우) • 연간상한 30점
3.18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 편집간사 10점 ※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3	기타활동 0~30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기관장 및 임원으로 학교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과제 기획, 평가 참여(사업계획서 작성 포함)(연간상한 30점)
3.24	수상실적 0~30점	• 국제저명학회 논문상 (30점) • 학회 등의 논문상 (20점) • 정부, 단체, 국제기관의 표창 (10~20점) • 기타 수상실적 (0~10점) (연간상한 30점)
3.25	사회봉사 0~30점	• 비영리기관, 단체활동 (0~30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등의 자문, 심의, 교육, 강연 등은 제외 (연간상한 30점)
3.30	공학교육인증활동	
3.31	프로그램 PD교수 활동	• PD 교수 : 50~100점 (성과승격 반영, 상한 50점) • 건축학인증 PD교수 : 50~100점 (성과승격 반영, 상한 50점) ※ 공학교육/건축학 관련 활동 업무 수행기간 등에 따라 학장이 부여함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취업지도	• 취업 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2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3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4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해외 300점 - 국내 75점 - 실용신안 50점(동일사안에 대해 1회 한함)
4.22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연간상한 없음) ※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3	기술이전 수입료	•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연간상한 없음) ※ 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건당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신기술·제품 인증	• 인증 건당 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7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9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기술자문(1천만원미만) 5점/건 • 기술자문(1천만원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비영리기관, 단체 활동 (0 ~ 30점) 교육, 강연(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정보통신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전자공학과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50점
1.15	교재발간	• 초판 100점 • 개정판 50점(상당부분 개정시)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 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24	학생상담 실적	• 학생상담실적 건당 0.2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5	학생지도 실적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폐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30	공학교육개선	공학교육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1.31	공학교육 활동	• 공학교육인증 평가활동 - 공학교육인증원 평가단장 : 50점 - 공학교육인증원 평가위원 : 30점 • 평가자 교육 및 세미나참석 : 5점/회
1.32	교육개선(CQI) 보고서	• 개설반당 5점
1.33	교수법 개발	• 교수법강좌 참가 5점/회
1.40	교육활동	
1.4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1.50	교육영역평가	
1.51	교육우수교수	• 교육우수교수 대상[교무처] 100점 • 교육우수교수 우수상[교무처] 50점
1.52	교육혁신활동	• 우수컨텐츠 교과목 MOOC 강좌 신규 개설: 50점 • 도전학기(파란학기) 우수 지도교수 : 50점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50점

나.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평 가 내 용
2.10	논 문
2.11	- 국내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기타학회학술지는 제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80점 - 기타학회학술지 50점
2.12	- SCIE 및 국제유수학술지 300점(단 SCIE Lecture Note, SCOPUS 등재학술지는 150점) - 기타 국제학술지¹⁾ 1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JCR IF(2-Year) 상위 1% 이내의 최우수 해외저널 1,000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SCIE의 경우 JCR IF(2-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2/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단 IF 계산 시에 주제별 분류들 (subject categories) 중 가장 우수한 값을 가진 분류의 기준을 적용함
2.13	- Computer Science 분야의 경우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한 논문은 SCIE 학술지 게재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우수국제학술대회 실적은 가장 최신의 연구재단 지정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실적인정분야: 발표내용이 컴퓨터학(Computer Science) 학문분야인 경우에 인정한다. - 구두발표와 주저자 논문에 한하며 동일 내용의 저널논문은 중복인정을 불허한다.
2.30	학술회의
2.31	국내 학술회의 논문발표 10점
2.32	국제 학술회의 논문발표 50점
2.40	연구활동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41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국가R&D연구비 과제수 : 고려안함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30점 • 상임이사/편집위원 및 동급의 직위 10점 ※ 겸직시 최대 2건 인정(연간상한 50점) ※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저널을 발행하는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정부,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 자문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3.21과 3.22 이외의 기타활동 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단, 산학협력 자문활동 실적은 제외
3.24	수상실적 0~20점	• 국제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20점 • 전국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10점 • 기타 수상실적 건당 5~20점 ※ 연간상한 20점
3.30	공학교육인증활동	
3.31	공학교육위원회 활동	• 공학교육관련 활동 업무 수행기간 등에 따라 학장이 부여함 - PD 교수 : 50점 ~ 100점 - 프로그램내의 각종 위원회 활동: 10점 ~ 30점 (프로그램 내 위원회 활동은 PD교수의 의견반영)
3.40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활동	
3.41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활동	• 혁신선도대학사업 책임자: 50~100점 • 혁신선도대학사업 각종위원회 위원장: 20~50점 • 혁신선도대학사업 각종위원회 위원: 10~30점

라.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취업지도	· 학생 취업 지도 1명당 10점(상한 100점)
4.12	현장실습방문(인턴십)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3	학부생연구지도	· 학부생 연구지도 팀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연간상한 50점)
4.14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매출 발생 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5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신규 교과목 개발자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4.17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18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20	산학협력 연구 활동	
4.21	특허	· 특허(등록시만 점수반영) · 발명 해외 150점 / 국내 75점 실용신안 50점 (동일사안에 대해 1회 한함)
4.22	산업체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0/H 2,000만원당 3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 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3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75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점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창업 건당 100점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6	신기술·제품 인증	· 인증 건당 5점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가족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산업체 자문, 심의 건당 5점씩(연간상한 30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산업체 교육, 강연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50점
1.15	교재발간	• 초판 100점, 개정판 50점 (상당부분 개정시) ※ 공저의 경우 점수 배분은 논문점수 배분과 동일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 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동(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학부생 연구지도 10점/팀 (상한 5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전문대학원 10/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24	학생상담 실적	• 학생상담실적 건당 0.2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5	학생지도 실적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30	공학교육개선	
1.31	공학교육 활동	• 공학교육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참가 ※ 공학교육인증원평가위원 교육 : 5점/회 ※ 세미나 : 3점/회 • 공학교육인증 평가활동 - 공학교육인증원 평가단장 : 50점 - 공학교육인증원 평가위원 : 40점
1.32	교육개선(CQI)보고서	• 개설반당 5점
1.33	교수법 개발	• 교수법강좌 참가 5점/회
1.40	교육영역평가	
1.41	교육우수교수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학과) • 최우수등급 100점(연간 1명 이내) • 우수등급 50점(연간 2명 이내) ※ 교육우수교수의 선정방법은 별도로 정함¹⁾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교육우수교수 대상[교무처] 100점 • 교육우수교수 우수상[교무처] 50점 • 우수콘텐츠 교과목 MOOC 강좌 신규 개설 : 50점 • 도전학기 우수 지도교수 : 50점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50점
1.42	교육혁신활동	
1.50	교육활동	
1.5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1)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 교육우수교수 선정방법

- 평가대상: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를 하나의 단위로 하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함
- 평가절차: 1,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각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함
 - 1차 선발기준: 학부과목을 연간 9학점 이상 담당하고, 환산 강의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자(단, 환산 강의평가점수는 각 과목별 강의평가점수를 강의평가응답자수에 의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환산한 점수임)
 - 2차 선발기준: 학교 본부의 교육우수교수 선정기준을 준용함(교육발전 기여도 50%, 교육방법 혁신성 30%, 교육에 대한 열정 20%)
- 평가주체: 각 학과의 학과장 및 업적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우수교수 선발회의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연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2.10	논 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11	국내학회학술지	• 국내학회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2.12	국제학술지	• JCR IF(5-Year) 상위 1% 이내의 국제학술지 1,000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SCIE 300점(단, SCIE급 lecture note는 150점으로 한다)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우수저널목록(별첨1)에 포함되는 경우 최우수 저널은 2배, 우수저널은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 SCOPUS 저널 논문 150점 • 기타국제학술지¹⁾ 100점
2.13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1 300점 : 정규 논문(regular paper)에 한함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2 400점 : 정규 논문(regular paper)에 한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3 500점 : 정규 논문(regular paper)에 한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4 600점 : 정규 논문(regular paper)에 한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우수 국제학술대회 실적은 가장 최신의 연구재단 지정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포함된 논문이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논문지에 게재된 경우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20	저 서	(반영안함)
2.30	학술회의	
2.31	국내학술논문발표	• 10점 (년간 최대 50점)
2.32	국제학술논문발표	• 50점 (총 연간상한 200점 : 국내 50점 상한 포함)
2.40	연구활동	
2.41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Q/H 2,000만원당 30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전공부문 창작발표	• 10점/건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별첨 1] 2016년 소프트웨어학과/사이버보안학과 우수저널 목록

□ 최우수(600점급) 논: 7편, 우수(450점급) 논문: 20편

1. 최우수 논문(7편)

- | | |
|-------------------|--|
| 1) 컴퓨터시스템 |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s |
| 2) 통신 |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
| 3)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 없음 |
| 4)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언어 |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
| 5) 보안 |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 |
| 6) 알고리즘, 컴퓨터이론 | IEEE Transaction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
| 7) 인공지능 |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 8) 생물정보학 | Bioinformatics |

2. 우수 논문(20편)

- | | |
|-------------------|---|
| 1) 컴퓨터시스템 | IEEE Transactions on Parallel and Distributed Systems
IEEE Systems Journal
Future Generation Computing Systems |
| 2) 통신분야 |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ACM Transaction on Sensor Networks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
| 1-2) 분야 공통 | 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
| 3)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VLDB Journal
Information Sciences |
| 4)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언어 |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
| 5) 보안 |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
Computer & Security
Designs, Codes and Cryptography |
| 6) 알고리즘, 컴퓨터이론 | Journal of Computer and System Sciences
Computational Complexity |
| 7) 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
| 8) 생물정보학 | PLOS Computational Biology |

다.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 연직은 제외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계절학기 강의	• 학점수×3
3.16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30점 • 상임이사/편집위원 및 동급의 직위 10점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프로그램 위원장 50점 •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 30점 • 국제학술대회 대회장/조직위원장/프로그램 위원장 30점 • 전국규모 국내 학술대회 대회장/조직위원장/프로그램 위원장 30점 ※ 겸직시 최대 2건 인정(연간상한 150점) ※ 국내활동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저널을 발행하는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연구소, 공공기관 등 자문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학술대회조직위원장, 프로그램위원장 5점/건 (상한 20점) • 3.21과 3.22 이외의 기타활동 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단, 산학협력 자문활동 실적은 제외
3.24	수상실적 0~20점	• 국제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20점 • 전국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10점 • 기타 수상실적 건당 5~20점 ※ 연간상한 20점
3.30	공학교육인증활동	
3.31	공학교육위원회 활동	• 공학교육관련 위원회 활동을 실적에 따라 부여함 - Program Director: 50~100점 (학장과 학과장이 평가하며, 각 50%씩 반영) - 프로그램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20~50점 (Program Director가 평가) - 프로그램내의 각종위원회 위원: 10~30점 (Program Director가 위원장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 활동: 15점/회
3.32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활동	•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책임자: 50~100점 •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각종위원회 위원장: 20~50점 •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각종위원회 위원: 10~30점
3.33	정보보호특성화사업 활동	• 정보보호특성화사업 책임자: 50~100점 • 정보보호특성화사업 각종위원회 위원장: 20~50점 • 정보보호특성화사업 각종위원회 위원: 10~30점

라.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산학프로젝트지도	• 산학프로젝트 학과 지도 5점/건 (상한 25점)
4.13	취업지도	• 학생 취업 지도 1명당 10점(상한 20점)
4.14	산업체연계 학부생 연구지도	• 10점/팀 (상한 50점)
4.15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20점/건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6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 30점/회사당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상한 1,0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 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	• 국제 발명특허 등록 300점/건 • 국내 발명특허 등록 75점/건 • 국내 실용신안 등록 50점/건 • 국제 발명특허 출원 20점/건 • 국내 발명특허 출원 10점/건 • 국내 실용신안 출원 5점/건 • 국내 SW 등록 5점/건 • 국내 상표권 등록 5점/건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 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4.25	교원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신기술·제품 인증	• 인증 5점/건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7	오픈소스SW 기여 실적	• 10점/건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8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9	대형기술이전료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91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2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방문 특강	• 산업체 교육, 강연 5점/건 (상한 20점)
4.34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2. 미디어학과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운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50점
1.15	교재발간	• 초판 100점, 개정판 50점 (상당부분 개정시) ※ 공저의 경우 점수 배분은 논문점수 배분과 동일
1.16	우수 강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1.17	강의 공개	• 강의노트 공개 10점 • 강의 동영상 공개 50점
1.18	MOOC 강의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학과 정규교과과목만 인정)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 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학부생 연구지도 (팀당 10점, 상한 50점) • 과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 (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 (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 (논문지도교수)
1.24	학생상담 실적	• 학생상담실적 건당 0.2점 (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5	국제화 교육 실적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1.30	공학교육개선	
1.31	교육개선(CQI)보고서	• 개설반당 5점
1.40	교육활동	
1.4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연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2.10 2.11	논 문 국내학회 학술지	- 국내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기타학회학술지는 제외)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KCI IF(3-Year) 상위 2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1.5/1.3/1.2의 가중치를 부여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 기타학회학술지 50점
2.12	국제학술지	- 국제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JCR IF (2-Year) 상위 1% 이내 최우수 학술지 100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A&HCI 450점 - SSCI 400점 - SCIE 300점 ※ SSCI 및 SCIE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JCR IF(2-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2/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SCOPUS 150점 - Lecture note 150점 - 기타국제학술지¹⁾ 100점
2.13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연구재단 지정 우수 국제학술대회 300점 : 정규 논문(regular paper)에 한함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우수 국제학술대회 실적은 가장 최신의 연구재단 지정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2.20 2.21 2.22 2.23	저 서 국내학술저서 국외학술저서 번역서	등급은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국내학술저서 A급 200점, B급 100점 - 국외학술저서 A급 300점, B급 100점 - 번역서 (등급은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국내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 : A급 150점, B급 50점 - 국외학술저서를 한국어로 번역 : A급 100점, B급 50점
2.24	편저서	- 편저서 50점(단, 편저서에 글을 게재하지 않은 편저자는 0점) ※ 공동 발간의 경우 공동 저자 1인당 1/n으로 계산함(n은 공동저자 수, n이 10을 초과할 경우 10으로 처리함) ※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초중등 교과서, 서평,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저서로 인정하지 않음.
2.30 2.31 2.32	학술회의 국내학술논문발표 국제학술논문발표	- 국내학술논문발표 10점 - 국제학술회의발표 50점
2.40 2.41	연구활동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 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전공부문 창작발표 및 수상	별첨 참조단 별첨 내의 세부 항목은 SCIE급 논문의 평가 변경에 따른 변경이 필요함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계절학기 강의: 학점수×3	
3.16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30점 • 상임이사/편집위원 및 동급의 직위 10점 ※ 검직시 최대 2건 인정(연간상한 50점) ※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저널을 발행하는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연구소, 공공기관 등 자문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3.21과 3.22 이외의 기타활동 실적 건당 5점씩(연간상한 20점) 단, 산학협력 자문활동 실적은 제외
3.24	수상실적 0~20점	• 국제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20점 • 전국규모대회의 수상실적 건당 10점 • 기타 수상실적 건당 5~20점 (전공부문 창작 발표와 중복 불가)
3.25	국제화활동	• 국제 프로그램 개발 50점

라.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산학프로젝트 지도	• 산학프로젝트 학과생 지도(5점/건, 상한 25점)
4.13	취업지도	• 학생취업지도 1명당 10점(참조)
4.14	산업체연계 학부생연구지도	• 팀당 10점(상한 50점)(참조)
4.15	위탁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20점/건)
4.16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7	공모전지도	• 교수지도에 의한 산업체 공모전 수상 20점
4.18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9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91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92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상한 1,0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	• 특허 국제발명특허등록 300점 국내발명특허등록 75점 국내실용신안등록 50점 국제발명특허출원 20점 국내발명특허출원 10점 국내실용신안출원 5점 국내SW등록 5점 국내상표권등록 5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참조)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참조)
4.25	교원 창업	• 인증 건당 5점 (참조)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26	신기술·제품 인증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산학과제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291	창작물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 산업체 교육, 강연(건당 5점) (상한 20점)
4.33	산업체 방문 특강	• 산학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참여 회사 10점/건
4.34	산학협의체 운영	• 산학 협의체 운영 : 협의체 50%이상 참여 모임 건당 10점 • 산업체/취업 전문가 특강 개최 5점/건
4.35	산업체전문가 교육 활용	(정규교과과정외의 특강에 한함) • 학부생 산업체 방문 MAX(10×건수, 참여학생×0.5)점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6	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4.37	지역소상공인 지원	

※ (참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 미디어학과 세부평가기준

1. 제작평가

1) 개요

미디어학과 제작평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한다.

- 전문가를 통한 평가
논문의 경우 학계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듯이, 제작부문의 평가는 수상실적의 심사를 통해 측정한다.
- 관객(사용자)의 평가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전문가를 통한 수상 심사는 작품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대중성이 높은 경우 평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타 대학의 경우도, 극장, TV에 상영되는 작품은 비상영된 작품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하여 관객의 평가를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 작품의 제작점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변수 값인 L, C, W, T, P, R의 값은 다음 페이지에 표에 정리되어 있다.

$$\text{제작점수} = L(\text{등급}) * C * W * T * P$$

L: 분야별 등급(A,B,C,D) - Level (300점~30점)

C: 작품 인정 최소조건 - Minimum Condition (1.0 ~ 0.0)

W: 작품 수준 - Weight (1.0 ~ 최소치)

T: 작품 분량 - Time (1.0 ~ 최소치)

P: 참여율 - Participation (1.5 ~ 최소치)

$$\text{수상점수} = L(\text{등급}) * P * R$$

L: 분야별 등급(A,B,C) - Level (200점~50점)

P: 참여율 - Participation (1.5 ~ 최소치)

R: 순위 - Rank (1.0 ~ 최소치)

2) 작품제작 부문

- 영 상

〈L 및 C, W, T〉

부문	구분	등급	배점	세부사항						비고		
						최대(1.0)		최소(0.0)	배율			
제작	디지털 영상	A	300	영화	C			극장상영	1.0	유료관객/ 유료unit		
					W	40,000명		20,000명	1.0-0.5			
					T	3D	30분	15분	1.0-0.5			
						기타	60분	30분	1.0-0.5			
				특수영화: IMAX, Stereo	C			특수극장	1.0			
					W	40,000명		20,000명	1.0-0.5			
					T	3D	10분	5분	1.0-0.5			
						기타	20분	10분	1.0-0.5			
				TV: 공중파 및 케이블	C			TV방송	1.0			
					W	백만 가구 가입		오십만	1.0-0.5			
					T	3D	30분	15분	1.0-0.5			
						기타	60분	30분	1.0-0.5			
				DVD, DMB 등 미디어	C	A급 여부 별도 심사						
					W	40,000개		20,000개	1.0-0.5			
					T	3D	30분	15분	1.0-0.5			
						기타	60분	30분	1.0-0.5			
		B	150	영화	C			극장상영	1.0	유료관객/ 유료unit		
					W	20,000명		-	1.0-0.0			
					T	3D	30분	-	1.0-0.0			
						기타	60분	-	1.0-0.0			
				특수영화: IMAX, Stereo	C			특수극장	1.0			
					W	20,000명		-	1.0-0.0			
					T	3D	10분	-	1.0-0.0			
						기타	20분	-	1.0-0.0			
				TV: 공중파 및 케이블	C			TV방송	1.0			
					W	오십만		-	1.0-0.0			
					T	3D	30분	-	1.0-0.0			
						기타	60분	-	1.0-0.0			
				DVD, DMB 등 미디어	C	B급 여부 별도 심사						
					W	20,000개		-	1.0-0.0			
					T	3D	20분	-	1.0-0.0			
						기타	40분	-	1.0-0.0			
		C,D	70/30	기타					별도심사			
		기타	75	광고 등	T				별도심사	CW및ABC 위의 기준		

- 계 입

〈L 및 C, W, T〉

부문	구분	등급	배점	세부사항					비고
						최대(1.0)	최소(0.0)	배율	
제작	게임	A	300	게임 (Package)	C		정부등록	1.0	W= 유 료 관 객 / 유료unit T= 가장 빠른 Playtime (1 Mode) 온 라인 게 임 경우 World크기 (Run측정) 유료관객/ 유료unit
					W	40,000명	20,000명	1.0-0.5	
					T	3D	4시간	2시간	
						기타	8시간	4시간	
				온라인 게임	C		정부등록	1.0	
					W	40,000명	20,000명	1.0-0.5	
					T	3D	100분	50분	
						기타	200분	100분	
		B	150	게임 (Package)	C		정부등록	1.0	
					W	20,000명	-	1.0-0.0	
					T	3D	4시간	-	
						기타	8시간	-	
				온라인 게임	C		정부등록	1.0	
					W	20,000명	-	1.0-0.0	
					T	3D	100분	-	
						기타	200분	-	
				모바일	C		정부등록	1.0	
					W	오십만	-	1.0-0.0	
					T	3D	10분	-	
						기타	20분	-	
		C,D	70/30	게임 (package)	C		별도심사	1.0	C/D 심사
					W		별도심사	1.0-0.0	
					T	3D	4시간	-	
						기타	8시간	-	
				온라인 게임	C		별도심사	1.0	
					W		별도심사	1.0-0.0	
					T	3D	100분	-	
						기타	200분	-	
				모바일 기타	C		별도심사	1.0	
					W		별도심사	1.0-0.0	
					T	3D	10분	-	
						기타	20분	-	

- 디자인

〈L 및 C, W, T〉

부문	구분	등급	배점	세부사항					비고
						최대(1.0)	최소(0.0)	배율	
제작	디지털 디자인	A	200	Interaction Design, Web, CD-Rom Title, Edutainment, e-Learning	C		“가”군 기업/기관	1.0	C= 회사/단체 종업원수 W= 디자인의 노출수준(사용자/관객수)
					W	5,000명 (일일 사용자)	1,000명	1.0-0.5	
					T		별도심사	1.0-0.5	
				Interface Design, Information Design, GUI, User Test, User Research, User Scenario	C		“가”군 기업/기관	1.0	
					W	150,000명	80,000명	1.0-0.5	
					T		별도심사		
				CI, BI, 캐릭터, 포스터	C		“가”군 기업/기관	1.0	
					W	200,000명	100,000명	1.0-0.5	
					T		별도심사	1.0-0.5	
				출판/편집,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C		“가”군 기업/기관	1.0	
					W	10,000명	5,000명	1.0-0.5	
					T	20,000부	10,000부	1.0-0.5	
				포장, 인쇄광고	C		“가”군 기업/기관	1.0	
					W	400,000명	200,000명	1.0-0.5	
					T	100,000개/부	50,000개/부	1.0-0.5	

- 1) “가” 군 기업/기관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기업, 정부부처/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규모행사만 인정), 국외우수기업(G7국가의 상장회사 또는 상장에 준하는 특 우수기업).

- 디자인

〈L 및 C, W, T〉

부문	구분	등급	배점	세부사항					비고
						최대(1.0)	최소(0.0)	배율	
제작	디지털 디자인	B	100	Interaction Design, Web, CD-ROM Title, Edutainment, e-Learning	C		“나” 군 기업/기관 ¹⁾	1.0	C= 회사/단체 종업원수 W= 디자인의 노출 수준 (사용자/관객수)
					W	1,000명 (일일 사용자)	500명	1.0-0.5	
					T		별도심사	1.0-0.5	
				Interface Design, Information Design, GUI, User Test, User Research, User Scenario	C		“나” 군 기업/기관	1.0	
					W	80,000명	10,000명	1.0-0.5	
					T		별도심사		
				CI, BI, 캐릭터, 포스터	C		“나” 군 기업/기관	1.0	
					W	100,000명	50,000명	1.0-0.5	
					T		별도심사	1.0-0.5	
				출판/편집,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C		“나” 군 기업/기관	1.0	
					W	5,000명	1,000명	1.0-0.5	
					T	10,000부	1,000부	1.0-0.5	
				포장, 인쇄광고	C		“나” 군 기업/기관	1.0	
					W	200,000명	20,000명	1.0-0.5	
					T	T	50,000개/부	5000개/부	
		C	50/30	기타				별도심사	

1) “나”군 기업/기관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기업,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주관 전국규모행사), 국외우수기업(“가”군에 포함되지 아니한 우수기업).

〈P〉

P (참여율)	참여 분야	비고
1.0/인원수	감독 아트 디렉터 비주얼 이펙트 슈퍼바이저	
0.7/인원수	제작/프로듀서 아트 팀장 디자이너 팀장 애니메이터 팀장 프로그래밍 팀장 테크니컬 디렉터 시나리오 사운드 슈퍼바이저 음악 감독 편집 컴포지트 슈퍼바이저 지도교수	
0.5/인원수	아티스트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프로그래머 사운드(음악) 스탭 컴포지터 기타(심사)	

※ 참여율은 최대 2개 분야까지 인정하되 1.5를 넘지 않는다.

〈R〉 Rank

※ 1.0으로 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심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 전시 및 수상 부문

구분	등급	배점	세 부 사 항			비고
영화/애니메이션	A	200	장편	국제영화제	“가”군 영화제 ²⁾ 본선 진출 혹은 상영작 “나”군 영화제 ³⁾ 수상작 “나”군 영화제 특별 상영전	
				국내영화제	“마”군 영화제 ⁴⁾ 수상작	
		100	단편	국제영화제	“가”, “다”군 영화제 ⁵⁾ 본선 진출 혹은 상영작 “나”, “라”군 영화제 ⁶⁾ 수상작 “라”군 영화제 특별 상영전	
	B	100	장편	국제영화제	“나”군 영화제 본선 진출 혹은 상영작	
			단편	국내영화제	“마”, “바”군 영화제 ⁷⁾ 수상작	
		50	단편	국제영화제	“라”군 영화제 본선 진출 혹은 상영작	
	C	50	단편	국내영화제	“마”군, “바”군 영화제 본선 진출 혹은 상영작	
게임	A	200	국제공모전		“가”군 공모전 ⁸⁾ 입상작	
			국내공모전		“나”군 공모전 ⁹⁾ 총리상 이상 수상작	
	B	100	국내공모전		“나”군 공모전 장관상 이상 수상작	
			전시회		국제주요전시회 ¹⁰⁾ 출품	
	C	50	국내공모전		“나”군 공모전 입선 이상 수상작	
			전시회		국내주요전시회 ¹¹⁾ 출품	
디자인	A	200	국제공모전		“가”군 공모전 ¹²⁾ 본선 진출 혹은 전시작	
			국내공모전		“다”군 공모전 ¹³⁾ 총리상 이상 수상작	
			전시회		국제공인 ¹⁴⁾ 초대 ¹⁵⁾ 개인전	
		100	국제공모전		“나”군 공모전 ¹⁶⁾ 수상작	
			국내공모전		“다”군 공모전 특별 초대전	
			전시회		국제공인초대 ²⁾ 인전, 국제공인개인전, 국내공인 ¹⁷⁾ 초대개인전	
	B	100	국제공모전		“나”군 공모전 본선 진출 혹은 전시작	
			국내공모전		“다”군 공모전 장관상 이상 수상작	
		50	전시회		국제공인단체전	
	C	50	국내공모전		“다”군 공모전 입선 이상 수상작	
			전시회		국내공인단체전	

※ 별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A, B, C 등급 수상이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

2) “가”군 영화제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선댄스, 시카고, 토론토, 모스크바, 로카르노, 카를로비 바리 영화제를 포함하여 영진위의 장편 해외영화제 분류 상 주요영화제로 지정된 영화제를 의미함. 여기에 애니메이션 분야의 앙시, 히로시마, 오타와, Siggraph, 자그레브도 추가로 인정함.

3) “나”군 영화제는 영진위의 장편 해외영화제 목록에서 주요영화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영화제를 의미함. 여기에 애니메이션 분

야의 Ves Award, EMAF, MAAP, DEAF, WRO, Sonar Festival, MIPS, MIPTV, NATPE, LAMA, 동경, IAAPA도 추가로 인정함.

- 4) “마”군 영화제는 대중상영화제, 백상영화제, 청룡상영화제, 춘사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상,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광주영화제, 제천영화제를 의미함. 여기에 국내 총리상 이상, 한국방송광고대상을 포함시킴.
- 5) “다”군 영화제는 읍살라, 오버하우젠, 탐페레, 클레르몽-페랑 영화제를 포함하여 영진위의 단편 해외영화제 분류 상 주요영화제로 지정된 영화제를 의미함
- 6) “라”군 영화제는 영진위의 단편 해외영화제 목록에서 주요영화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영화제를 의미함
- 7) “바”군 영화제는 미장센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여성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아시아나단편영화제를 의미함. 여기에 애니메이션 분야의 SICAF, PISAF, 동아/LG 애니메이션 공모전, 디자인진흥원,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산업디자인협회 등을 추가로 인정하며, 국내 장관상 수상 시 ‘바’군 수상작으로 인정함.
- 8) “가”군 공모전은 Independence Game Festival(GDC), Twin Galaxy, MS International Game Festival을 의미함.
- 9) “나”군 공모전은 한게임공모전, 넥슨주최공모전, 한빛소프트공모전,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주최공모전, 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대상, 문광부 이달의 게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게임올림픽아드수원, 인디게임공모전 등 정부 부처/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게임 관련 기업이 주최한 경우를 의미함.
- 10) GDC, GDC Europe, AGDC, E3, ECTS, 밀리아, 동경게임쇼, SIGGRAPH.
- 11) KAMEX, 첨단게임산업협회주최, G-Star.
- 12) “가”군 공모전은 Siggraph, How, ID Annual, EuroPrix, 오사카, 나고야 국제디자인공모전, New York Digital Salon, iF design award, Media Arts Festival, Communication Arts, Saatchi & saatchi award, Red dot award, WIRED Next Fest, Webby Awards, PRIX Ars Electronica, Brno, AIGA, Graphis Annual, PRINT, Clio Award, New York Festivals, The London Festival, Good Design Awards,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D&AD Award.
- 13) “다”군 공모전은 대한미국미술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미술대전, 코리아국제포스터비엔날레 등 정부부처/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기업이 주최한 경우를 의미함.
- 14) 국제공인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해외 단체(공인된 협회, 미술관, 전공 관련 전문화랑)에서 주최 하거나, 국내 공인 단체에서 주최하여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적 규모(비엔날레, 아트페어 포함)를 의미함.
- 15) 초대는 주최 측에서 전시 장소, 비용을 일체 부담 또는 일부 부담 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경우를 의미함.
- 16) “나”군 공모전은 ICORADA, VIPER, SHONAN, London Design Festival, Images Festival, DEAF, Transmediale, PixelACHE, AV Festival, Digital Art Festival Tokyo, American Design Award와 “가”군 목록에서 지정되지 아니하나 G7국가와 전통적 디자인 강국으로 분류되는 북부, 동부 유럽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공모전을 의미함.
- 17) 국내공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 전문화랑, 법인단체전을 의미함.

4) 세부사항

- ① 작품제작과 전시 및 수상 부문에 같은 작품을 적용하는 경우 A급은 450점, B급은 300점, C급은 200점, D급은 15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복 수상의 경우 최고점수 1개만 인정한다.
- ② 작품제작과 전시 및 수상 부문에서 외부 업체와 연관된 작품일 경우는 작품제작에 관한 관련 프로젝트를 학교를 통해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이어야 한다.
- ③ 작품제작은 완성이 아닐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동일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없으나, 후속편의 경우 심사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국내외 공모전 및 전시회 중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⑤ 기 심사된 작품심사라도 검증이 미진한 부분은 이후에 재심사할 수 있다.
- ⑥ 아카데미 감독상과 같은 세계적인 수상을 받은 경우, 별도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가점수를 추천할 수 있다.
- ⑦ 동일 작품에 대해 추가 점수부여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제작 1회, 수상 부문 각 1회에 한해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급은 총 합계에 따라 재조정된다.
- ⑧ C, D 급의 총 합계점수는 200점을 넘지 못하고, B, C, D 급의 총 합계점수는 400점을 넘지 못한다.
- ⑨ 참여분야에서 “자문”은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기간이 전체프로젝트의 해당분야 기간의 1/3이 안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⑩ “유료관객”과 “유료unit”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1년간 판매한 것을 더한 것이고, “유료 동시접속자”는 1달 이상 정상 가격으로 등록한 유료회원을 1년간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수학과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학부과목에 한함)
1.15	교육우수교수 수상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성과승격 반영)
1.16	MOOC 강의 신규개설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 (성과승격 반영)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단, 본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일반·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성과승격 반영)
1.23	박사배출 실적	
1.24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1.30	교육활동	
1.3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2.10	논 문 ※ 소속이 아주대로 명기된 논문만 인정. 연구업적은 본 대학교 교원 신분인 상태에서 게재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본교에 임용되기 전에 투고한 결과물이 임용 후 게재된 경우에는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11	• 국내학회학술지 (성과승격 반영)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기타 학술지 0점 ※ SCIE/SSCI/SCOPUS 등재학술지는 국제학술지로 인정
2.12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SCOPUS는 성과승격에만 반영) - JCR IF(5-Year) 상위 1% 이내의 최우수 해외저널 1,000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SCIE/SSCI 등재학술지 300점 (단, JCR IF(5-Year) 상위 10/30/50% 이내 논문에 한하여 가중치 W는 2.2, 1.7, 1.2 이며, 저자 수 N에 대하여, $N=1,2$인 경우 각 저자에게 가중치 W를, $N \geq 3$인 경우 각 저자에게 가중치 $\frac{2W+(N-2)}{N}$를 부여함)¹⁾ - SCOPUS 등재학술지 150점
2.20	저 서 (성과승격 반영) ※ 신간, 새로 번역하거나 대폭의 수정을 거친 것만 인정함. - 국내학술저서 150점 - 국제학술저서 200점 - 국내전문교재 100점 - 국제전문교재 200점 - 일반인용전문서적 80점 - 번역서(전공도서) 80점 - 편저서 50점
2.30	학술회의(연간상한 100점)
2.31	• 국내학회 논문발표 20점 (연간상한 30점) * 발표자에 한함
2.32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40점 * 발표자에 한함
2.40	연구활동
2.41	• 연구보고서 0점
2.42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3	• 학술상 수상 0점
2.44	• 전공부문 창작발표 0점
2.45	• 기고활동 0점

1) IF에 의한 가중치 계산: 수학의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제1저자, 공동저자 등의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가중치 W, W_1 의 평균을 공유한다.

다.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계절학기 강의: 학점수×3	• 윤강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함. ※ 중등교원 연수 및 특수대학원 강의는 반영 안함.
3.16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 편집간사 10점 ※ 겸직시 하나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과 중복은 불인정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공) ※ 구체적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정함, 연간상한 20점

라.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진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연간 상한 2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실용신안 50점(동일사안에 대해 1회 한함)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신기술·제품 인증	• 인증 건당 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7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9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산업체 교육, 강연 건당 5점(연간 상한 2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2.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학부과목에 한함)
1.15	교육우수교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성과승격 반영)
1.16	MOOC 강의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 (성과승격 반영)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단, 본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 과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30	교육활동	
1.3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2.10	논 문 ※ 소속이 아주대로 명기된 논문만 인정. 연구업적은 본 대학교 교원 신분인 상태에서 게재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본교에 임용되기 전에 투고한 결과물이 임용 후 게재된 경우에는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논문 점수 산정(N:저자 수). 주 저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인 상황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평가위원이 판정함. - 1인 100%, 2인 70%, 3인 이상 150%/N
2.11	• 국내학술지 (성과승격 반영)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기타학술지 0점(불인정) ※ SCIE 및 SCOPUS 등재학술지는 국제학술지로 인정
2.12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SCOPUS 및 기타국제학술지는 성과승격에만 반영) • Cell, Nature, Science 또는 JCR IF(2-Year) 상위 1% 이내의 최우수 해외저널 1,000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SCIE 저널 3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JCR IF(2-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의 평가점수에 대해 각각 2/1.5/1.2의 가중치 차등 부여 가능) • SCOPUS 저널 150점 • 기타 국제학술지¹⁾ 100점
2.20	저 서 (성과승격 반영) ※ 신간, 새로 번역하거나 대폭의 수정을 거친 것만 인정함. - 국내학술저서 150점 - 국제학술저서 200점 - 국내전문교재 100점 - 국제전문교재 200점 - 일반인용전문서적 80점 - 번역서(전공도서) 80점 - 편저서 50점
2.30	학술회의
2.31	• 국내학회 논문발표 20점 (연간상한 30점)
2.32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40점 (연간상한 50점)
2.40	연구활동
2.41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 학술상 수상 30점
2.43	• 기고활동 10점(각주 처리가 된 논문성 기고에 한함. 연간상한 20점)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3.10	교내봉사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 윤강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함. ※ 중등교원 연수 및 특수대학원 강의는 반영 안함.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11	교무위원 80~100점	
3.12	기타보직 15~80점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3.14	특별기여 0~40점	
3.15	계절학기 강의: 학점수×3	
3.16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3.22	수상실적 0~20점	

라.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연간 상한 200점) (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실용신안 50점(동일사안에 대해 1회 한함)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3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신기술·제품 인증	• 인증 건당 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7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9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산업체 교육, 강연 건당 5점(연간 상한 20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경영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0~20점
1.15	새로운강의기법 개발 및 활용	• 과목당 0~20점(상한 40점) ※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1.16	교육우수교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17	MOOC 강의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18	국내외 경영학 인증	• 인증교과목 학습평가보고서 작성 5점/건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학생상담(1점/건, 상한 40점) • 과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22	석사배출 실적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성과승격 반영)
1.23	박사배출 실적	• 영어강좌(전공선택과목으로 A등급이며 의무시수 초과분에 한함)
1.24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 강좌당 30점
1.25	영어강좌	

2.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내 용
2.10	논 문
2.11	• 국내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KCI IF(2-Year) 상위 20% 이내 저널에 대하여 1.3의 가중치 부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50점 ※ 논문의 학술지 등급평가는 학술지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 선정년도를 기준으로 함.
2.12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JCR IF(5-Year) 상위 1% 이내 최우수 저널 및 특급저널 500점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경우 1,000점 적용) SSCI/SCIE(JCR IF(5-Year) 상위 50% 이내 저널) 400점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경우 IF(5-Year) 상위 10% 이내 600점, 상위 30% 이내 510점, 상위 50% 이내 450점 적용) SSCI/SCIE(JCR IF(5-Year) 상위 50% 외 저널)/A&HCI 300점 SCOPUS 국제저널 150점 ※ 국제저널의 지정과 정의는 별첨 참조 ※ IF(5-Year)가 없는 저널의 경우 IF(2-Year) 기준으로 가중치 산정
2.20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재임용 시 각각 승진심사 기간 동안 최대 300점 한도 인정. 성과승격은 상한제한 없음)
2.21	• 국내저서 및 역서(A등급 100점, B등급 80점) ※ A등급은 학술저서이고 B등급은 교재 및 기타 전공관련 서적 ※ 명실상부한 초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 초판이 과거에 점수배점을 받지 못한 경우 개정판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함
2.22	• 국제저서 (200점) ※ 국제저서는 학술저서, 교재 및 기타 전공관련 서적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어저서로 하되 그 밖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점수배점 여부를 별도로 평가함.
2.30	학술회의(연간 80점 상한)
2.31	• 국내학회 논문발표 10점 (연간 50점 상한) ※ 학회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 (상한은 없으나 유사한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간주)
2.32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20점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한함 (상한은 없으나 유사한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간주)
2.40	연구활동
	• 국가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45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 경영대학 세부평가기준

[국제학술지 급 지정과 정의]¹⁾

1. 특급 국제저널(Top 저널)

- 회계(3) :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재무(3) : Journal of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 마케팅(3)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 생산(3) :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Research,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 인사(3)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MIS(3) :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IS Quarterl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경영전략(3)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 일반(6)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etric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 저널 급의 구분은 게재 연도를 기준으로 함

3.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국내외 경영교육인증 및 경영대 주도 국고유치 교육사업	• 국내외 경영교육인증 및 경영대 주도 국고유치 교육사업 (성과승격 반영) • 위원장 : 100점 • 집필진 위원 30~70점(위원장이 부여) ※ 국내외 경영교육인증 및 경영대 주관 국고유치 교육사업 항목을 합하여 최대 연평균 150점 한도
3.16	본부주도 국고유치 교육사업	• 본부주도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3.17	단과대학 위원회 등 참여	• 경영대 내에 설치한 특별 위원회 활동 0~20점(학장이 부여) • 경영대학 발전 기여 0~20점(건당)(상한 40점) - 상세기준은 경영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의결
3.18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편집위원장 : 50점 · 부회장 : 20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편집간사 : 1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내는 학회에 한함. * 동일 학회 겸직 시 하나만 인정.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할 계산함.
3.22	자문활동 0점	
3.23	기타활동 0점	
3.24	수상실적 0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0점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학생 취업지도 1명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10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진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0점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0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특허 등록에 한함) - 발명 해외 150점 / 국내 60점 실용신안 40점 (동일사안에 대해 1회 한함)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45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교원창업	• 교원 창업 0점
4.25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6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8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0점
4.29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0점
4.291	기업연구소 교내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4.32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0점
4.33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인문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1.11	강의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단, 초과과목이 중복강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초과과목학점수 $\times 2.5$ 점으로 합산함.
1.12 1.13	수업평가 대단위강의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1학점당 10점(학부과목에 한함) • 우수 콘텐츠 교과목 MOOC 강좌 개설 50점
1.15	전공과목 전임담당실적	• 전공과목을(인문대학 내 학부 기초과목과 타학과의 전공으로 분류되는 과목,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전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간주함) - 학기당 평균 3학점 이상 강의한 경우: 10점 - 학기당 평균 3학점 미만 강의한 경우: 0점 ※ 단, 연구년 또는 파견 기간은 학기 산정에서 제외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30점
1.16 1.20	우수교수수상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교외 공모전 지도 팀 수상시 - 수상 등급 관계없이 팀당 5점, 상한 30점 - 공동지도 시 5점을 1/N으로 산출하여 부여(N은 공동지도교수 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UR(학부생연구) 지도 팀당 10점, 상한 30점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일반 · 전문대학원 2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일반 · 전문대학원 50점/1인(논문지도교수)
1.22	석사배출 실적	
1.23	박사배출 실적	
1.30	교육프로그램 개발	
1.31	국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복수학위제/공동학위제 개발(30~50점) - 교환학생 프로그램 포함 자매결연(10~30점)
1.40 1.50	교육사업봉사 교육활동	
1.5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항목번호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
2.11	• 국내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기타학회학술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실린 리뷰는 제외)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단, 1저자/교신저자에 한하여 A등급, B등급 저널일 경우 원점수의 1.5/1.3의 가중치를 적용함) - A등급[KCI(2-year) 상위 20%]: 1.5 가중치 - B등급[KCI(2-year) 상위 50%]: 1.3 가중치 (단, 등급은 인문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학회 대표성 및 보호학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 기타학회학술지 60점
2.12	•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실린 리뷰(서평 포함): 논문 점수의 50%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JCR IF(2-Year) 상위 1% 이내 최우수 논문은 1,000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A&HCI, SSCI, SCIE 등재학술지 450점 - SCOPUS 등재학술지 200점 - G7국가와 중국, 네덜란드 발간 A&HCI, SSCI, SCIE, SCOPUS 비등재학술지 100점
2.20	※ Editorial, Review는 논문 점수의 50%
2.21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22	• 국내학술저서 200점 - 단, A등급, B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등급은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기간행 논문을 수록한 저서의 경우 50~150점 부여 • 국내 비학술서 100점 - 단, A등급, B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등급은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교재(대학 전공 교재 및 국정·검인정 중등교과서를 가리킴. 단, 동일물에 대한 해설서는 제외 함) - 일반인용 서적 - 창작집(문예창작집 포함. 단, 새로운 창작집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기존 창작집에 수록된 작품이 재 수록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23	• 해외 학술저서 300점 • 해외 비 학술저서 150점
2.24	- 단, A등급, B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등급은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학술서 번역 200점 • 비 학술서 번역 100점 - 단, 전공 관련성, 번역의 방향, 원서의 중요도, 분량 등에 따라 A등급, B등급을 선정하여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등급은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2.25	• 국내 편저서 기준 100점 - 책임편집 30점 추가 인정 • 해외 편저서 기준 150점 - 책임편집 50점 추가 인정 - 단, A등급, B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등급은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2.30	※ 편저는 새로 발표되는 글에 한하여 인정
2.31	학술회의 (Proceedings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32	• 국내학회 논문발표 (연간 2회까지 인정) • 학진등재지학회 논문발표 30점, 학진등재후보지학회 논문발표 20점, - 기타학회지 논문발표 10점

항목번호	세 부 평 가 기 준
2.40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 참가국 수를 기준으로 함 (연간 2회까지 인정함.) 6개국 이상 50점, 5개국 이하 30점
2.41	연구활동
2.42	• 연구보고서 50점 ※ 사업, 용역보고서 제외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한함) 책임연구원(50점), 공동연구원 1인(각 35점), 2인(각 25점), 3인 이상(각 15점)
2.43	• 국가 R&D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45%만 인정함)
2.44	• 학술상 수상 60점~20점 -학술재단이나 기관 및 언론사 제정 학술상은 60점, -학회나 학회지 제정 우수 연구자 또는 우수논문 대상 학술상은 20점 -기타의 경우는 인문대학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 부여 ※ 문화콘텐츠학 전공교수의 경우 영화제, 시나리오(게임 포함) 공모전 등 수상 포함
2.45	• 전공부문 창작발표 중단편소설 30점, 평론 30점, 시 10점 ※ 한국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창작과 동일한 점수 부여, 외국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창작의 1/2의 점수 부여(연간상한 80점)
2.46	• 영화연출, 드라마연출, 대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문화콘텐츠학 전공 교수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a. 영화연출, 드라마연출 - 장편영화연출(극장 상영작과 국내/글로벌 단위의 콘텐츠 플랫폼 상영작에 한함) 스크린 100개 이상 상영/글로벌 단위 플랫폼 300점 스크린 99~50개 상영/국내 플랫폼 250점 스크린 50개 미만 상영 200점 - 단편영화연출 150점(극장/영화제 상영작과 국내/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상영작에 한하며, 연간 2회 까지만 인정함) - 드라마연출(국내/글로벌 단위의 콘텐츠 플랫폼 상영작에 한하여 인정함. 한 회차 50분 이상, 1년 최대 300점까지만 인정함) 단막극 50점. 2부작 100점. 3부작 150점. 4부작 200점. 5부작 250점. 6부작 이상 300점 b. 대본 - 대본 발표(영화는 극장 개봉작의 엔딩 크레딧에 명시. 드라마는 국내/글로벌 단위의 콘텐츠 플랫폼 상영작에 한하여 인정함) 장편영화/드라마 6부작 이상 대본 100점 단편영화/드라마 6부작 미만 대본 80점 - 대본 창작집 150점(ISBN이 부여되어 정식 출판된 영화,연극,드라마 대본집에 한함.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 작품에 한함) c. 각색 (창작 대본의 수정 작업을 말함) - 장편영화/드라마 6부작 이상 대본 각색 70점 - 단편영화/드라마 6부작 미만 대본 60점 ※ 드라마가 시즌제로 발표될 경우 각 시즌 작품은 개별 작품으로 인정함 • 기고활동 10점(연간상한 10점) ※ 배점대상은 인문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3. 봉사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3.10	교내봉사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검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 연직은 제외하기로 함.(상한 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 인문대학내에 설치한 특별 위원회 활동 - 위원장 10점, 위원 5점, 상한 20점(점수는 학장이 부여함) - 인문대학 내 자체프로그램 or 간접수주프로그램 운영 * 간접수주프로그램: 본부나 LINC사업단에 제안서 제출해 선정된 프로그램 (예: 학과특성화사업 등) - 책임운영자 5~30점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11	교무위원 80~100점	
3.12	기타보직 15~80점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3.14	특별기여 0~40점	
3.15	특수대학원 강의:학점수×2.5	
3.16	단과대학 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	
3.17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3.22	국제학회활동 30~60점	- 회장 - 한국연구재단 등재: 50점 - 한국연구재단 후보: 40점 - 기타: 30점 - 부회장, 편집위원장 15점 - 간사, 상임이사, 감사,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윤리위원 등 학 회장이 위촉한 임원직 10점(학회장 명의로 발부하는 위촉장이 있는 경우만 인정함)10점 * 국내 학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 동일학회 검직시 하나만 인정 * 활동 기간에 따라 점수×N/12로 산출(반올림) * 학회활동: 상한 50점 - 회장 60점 - 집행위(Executive Committee) 위원, 편집위원장 50점 - 상임이사, 학회지 편집위원 30점 * 국제 회의 경우 AHCI, SSCI, SCIE급 저널 발간 학회 또는 20개 이상 국가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에 한함.(편집위원장 명의로 발 부하는 위촉장이 있는 경우만 인정함) * 활동 기간에 따라 점수×N/12로 산출(반올림) * 학회활동과 중복은 불인정 * 학회활동: 상한 60점 - 무보수활동에 한하며, 점수배정은 인문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사안별 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 자문활동: 상한 20점 - 기타활동: 상한 5점 - 자문활동과 기타활동의 합: 상한 20점
3.23	자문활동 0~20점	- 학술상 수상과 중복은 불인정 * 구체적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정함(연간상한 20점) - 정부 지원 교육 사업 개발 운영 참여 (성과승격 반영) - 사업단장 50점 - 참여교수 점수는 사업단장이 제안함(5~50점) - 사업단별로 중복 부여 (단, 정부 지원 교육 사업 개발 운영 참여와 관련하여 책임시수를 감 면받은 경우는 불인정)
3.24	기타활동 0~5점	
3.25	수상실적 0~20점	
3.26	교육사업봉사 5~50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 수 - 10명미만 : 10점/ 10명이상~20명 미만 : 20점/ 20명 이상 : 30점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50점
4.16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3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30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2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200점 / 국내 50점 실용신안 3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금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시 45%만 인정함)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1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1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0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0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0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정기적 활동 (0~30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교육, 강연 (건당 5점, 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사회과학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30점(학부과목에 한함)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동(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30	교육	
1.31	MOOC 강좌	• 우수 콘텐츠 교과목 MOOC 강좌 신규 개설 5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32	교육우수교수(교무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33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50점 (성과승격 반영)
1.34	국제화 교육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성과승격 반영)
1.35	교육우수교수(단과대학)	• 교육우수교수 수상(단과대학) 30점~50점 ※ 선정기준은 단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1.36	영어강의	• 영어강의(100%) 강좌당 30점
1.40	교육활동	
1.4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
2.11	• 국내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KCI IF(5-Year) 상위 2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1.5/1.3/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2.12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JCR IF(5-Year) 상위 1% 이내 최우수 저널 또는 전공별 1위 저널 1,000점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 SSCI, SCIE 400점 (단, 제1저자/교신저자에 한하여 학과에서 정한 우수 저널 또는 JCR IF(5-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2/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A&HCI 400점 - SCOPUS 200점
2.20	저 서
2.21	• 국내학술저서(인문사회교양서 포함) 2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2.22	• 국제학술저서 3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2.23	• 국내전문교재 100점
2.24	• 국제전문교재 2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2.25	• 편저서 (편저서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편저자는 0점이나 편저 또는 4인이상 공저인 저서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당 30점을 부여)
2.26	• 역서 0~1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에 따라 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2.30	학술회의(※ 발표언어를 기준으로 국내외 구분)
2.31	• 국내학회학술발표 10점(연간 상한 50점)
2.32	• 국제학회학술발표 : 정규세션발표 40점, 포스터발표 20점(연간 상한 120점)
2.40	연구활동
2.41	• 국가 R&D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100점 상한)(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 기고활동 10점 ※ 논문성 기고이며 편당 10점이며 년2회 인정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편집간사 10점 ※ 겸직시 하나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공공기관 또는 공익성이 분명한 전공분야 활동, 위원장 20점, 위원 10점, 상한내에서 1회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비전공분야 봉사활동 1회 10점(2회까지 인정)
3.24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 20점, 비학술상(국가기관 20점, 기타민간기관 10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실용신안 5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비영리기관, 단체 활동 (0-30점) 교육, 강연(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약학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1.11	강의시간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 반영)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 3학점 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30점 (학부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1.15	교재발간	• 강의 매뉴얼, 실습교재 등 각 5점 ※ 강의자료, 수업계획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1.16	영어강의	• 과목당 20점 ※ 윤강 참여율 반영
1.17	강의노트 공개	• 미공개 과목당 5점 감점(학부과목에 한함) ※ 단, 윤강의 경우 참여율 반영
1.18	교육우수교수 수상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50점
1.19	MOOC 강의 신규개설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학부가 인정한 소학회 및 동아리 지도(학기당 5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1인당 20점(논문지도교수, 학위취득에 한함)
1.23	박사배출 실적	• 1인당 60점(논문지도교수, 학위취득에 한함)
1.24	학생상담	• 상담 건수당 1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상한 10점)
1.25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1.30	교육개선	
1.31	교육인프라개선	• 최대 30점(학과에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32	교육부분 특별기여	• 최대 30점(학과에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 연구영역

항목번호	업 적 평 가 내 용
2.10	논 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국내 기타학술지는 제외)
2.11	• 국제학술지: SCIE, SSCI, SCOPUS 등재 학술지 - 주저자 300점, 공동저자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저자수에 따른 환산을 함 ^{a)}
2.12	• 국내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 주저자 100점, 공동저자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저자수에 따른 환산을 함 ^{a)}
2.13	• 기타학술지: 국제 및 국내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 전문학술지 또는 기타 국제학술지 ¹⁾ - 주저자 50점, 공동저자 25점을 만점으로 하여 저자수에 따른 환산을 함 ^{a)} (기타학술지 인정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20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21	• 저서 300점, 챕터집필 100점 (저자수에 따른 환산은 논문에 준한다. 개정판은 x 0.5)
2.22	• 번역서: 저서의 50% (저자수에 따른 환산은 논문에 준한다. 개정판은 x 0.5) ※ 학회 및 분과학회 차원의 학술저서 (저서인정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공동저자: 책 표지에 저자명 표기 시 인정함 - 챕터집필: 내용 중 일부의 저자로 참여한 경우 인정함
2.30	학술회의 ※ 중복인정 불가, 연간상한 200점 (저자수에 따른 환산은 논문에 준한다.)
2.31	• 국내학회 발표 20점
2.32	• 국제학회 발표 40점
2.40	연구활동
2.41	• 국가R&D 연구비 총액기준 연구비 O/H 2,000만원당 3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실제 수령액을 대상으로 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a) 논문 저자수에 따른 적용 기준: 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150/N%

※ 논문: 주저자는 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말함 (공동주저자도 주저자와 동일하게 인정함)

※ IF>3.0인 1등급 논문에 한하여 가중치(IF/3)를 곱함

※ Review paper, Case study 적용기준: 100%

※ 국제학회는 학회 개최 주관기관이 해외기관 단독이거나 해외기관/국내기관 공동인 경우에만 인정함.

※ 국내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규모 학회에 한함.

※ 국제 및 국내 학회 인정여부는 약학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60점	• 국제학회 - 회장 60점, 부회장 40점 - 임원 20점 - 좌장 10점 • 국내학회 - 회장 30점, 부회장 20점 -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사 10점, 위원(간사) 5점 ※ 단, 편집위원장 20점, 편집간사 10점 ※ 한 학회 내에서 겸직 시 한 가지 직만 인정
3.22	사회교육프로그램	• 보수교육 등 2점/건 (상한 10점)
3.23	기타활동 5~10점	• 외부위원회 정부기관 산하 위원회 등: 위원장 10점, 위원 5점
3.24	수상실적 5~10점	• 국제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10점 •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5점
3.25	국제 프로그램	• 국제 프로그램 개발 공헌 50점

※ 국내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규모 학회에 한함.

※ 국제학회는 학회 개최 주관기관이 해외기관 단독이거나 해외기관/국내기관 공동인 경우에만 인정함.

※ 국제 및 국내 학회 인정여부는 약학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3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4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5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150점 ※ 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 허	• 특허출원 - 국내 50점, 해외 100점 ※ 당해연도 동일특허에 대하여 1회 인정 • 특허등록 - 국내 75점, 해외 30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학협력 연구 활동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O/H 2,000만원당 300점 ※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실제 수령액을 대상으로 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6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기업), (연간상한 30점)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비영리기관, 단체 활동 (0~30점) 교육, 강연(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다산학부대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단, 초과과목이 중복강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초과과목학점수$\times 2.5$점으로 합산함.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times 0.75$ • 학습성과 분석 참여(과목당 5점) • 수업컨설팅에 피평가자로 참여(회당 5점)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 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times$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 교과목 학점별로 차등 적용: 3학점 20점, 2학점 15점, 1학점 10점
1.15	교육우수 교수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 대상 20점, 우수상 10점
1.16	영어강의	• 영어강의 1강좌당 10점(단, 원어민 교원은 제외)
1.17	MOOC 강의	• 신규 개설 2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소학회, 동아리 및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학기당 5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당 10점 (상한 30점 이내 인정)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학생상담 건당 0.5점(상한 30점, 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30	교육관련 연구 활동	• 교육관련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참여 책임 연구원 50점, 공동 연구원 30점 (상한 100점 이내 인정) • 교수법 강좌 참여: 강좌당 1점 • 새로운 강의 기법 개발: 20점 • 국제 프로그램 개발 공헌: 50점
1.40	교육관련 기타 활동	
1.50	교육활동	
1.5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11	• 국내학회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0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80점
2.12	• 국제학술지 - AHCI, SSCI, SCIE, SCOPUS 등재학술지 300점 - G7국가 및 중국 네덜란드 발간 AHCI, SSCI, SCIE 비등재학술지 100점
2.20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21	• 국내학술저서 200점, G7 국가 발간 국제학술저서 300점
2.22	• 국내전문교재, 국제전문교재 100점 • 국내비전공저서, 국제비전공저서 50점 • 일반인용 전문서적 100점 • 전문 번역서(한국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150점, 외국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100점) • 편저서 50점
2.30	학술회의(Proceedings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31	• 국내학회 논문발표(연간 2회까지 인정) • 학진등재지학회 논문발표 30점, 학진등재후보지학회 논문발표 20점, 기타학회지 논문발표 10점 ※ 학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과 학회지 게재논문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인정.
2.32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50점(연간 2회까지 인정함.) • 기타 학회지 및 교육관련 학술대회 발표 10점 ※ 학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과 학회지 게재논문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인정.
2.40	연구활동
2.41	•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연간상한은 1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 학술상 수상 60점
2.43	• 기고활동 10점(연간상한 10점)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함.(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 편집위원장 15점 • 간사, 상임이사, 감사,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윤리위원 10점 ※ 겸직시 하나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무보수활동에 한하며, 점수배정은 다산학부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23	사회교육 프로그램	• 보수교육 등(상한 10점)
3.24	기타활동 5~10점	• 외부위원회 정부기관 산하 위원회 등: 위원장 10점, 위원 5점
3.25	수상실적 5~10점	• 국제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10점 •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5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
4.13	학생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
4.14	학생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5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
4.16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7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 실용신안 5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0/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교육, 강연 (건당 5점, 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대학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

대학원 학과 소속 교원의 인사(승진: 연구/산학협력영역, 재임용, 성과승격) 기준은 단과대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의 이수 전공 또는 중복배속학과를 기준으로 단과대학(학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과)의 기준을 적용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운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 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에 한함)
1.15	CQI보고서 작성	•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법학전문대학원 과목에 한하며, 운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6	교육상 수상	• 교육우수교수 수상(교무처)(1회당 2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강의우수교수 선정(법전원)(1회당 5점)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 실적	• 소학회 및 동아리 지도(학기당 5점, 상한 20점) •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 이상 지도(학기당 5점, 상한 10점) • 파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 각종 법학관련 경시대회 지도(1건당 10점)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 법학전문대학원생 면담지도(시간당 0.5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2	석사배출 실적	
1.23	박사배출 실적	
1.24	상담지도 실적	
1.30	실무지도	
1.31	현장지도 실적	• 현장학습과정 지도(1명당 0.5점)
1.32	소송수행지도 실적	• 리걸클리닉의 소송사건 수행지도(1건당 0.5점)(지도성과 확인 시 인정)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33	법률상담지도 실적	• 중소기업법무센터의 법률상담 지도(1건당 0.5점)(지도성과 확인 시 인정)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34	문서첨삭지도 실적	• 필수실무과목(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첨삭지도(1명당 1점)(첨삭의견 5가지 이상 답안지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지도성과 확인 시 인정)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35	소송사건 기록 개발	• 교육용 소송사건 기록 개발(1건당 2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첨부자료 10개 이상, 30-50쪽의 분량인 경우에 연간 2건까지 인정)
1.40	시험지도	
1.41	시험지도 실적	• 변호사시험 대비 답안지 첨삭지도(1건당 0.5점, 상한 3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첨삭의견 5가지 이상 답안지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 (지도성과 확인 시 인정) • 로클락검찰 지도실적(학기당 5점)(지도성과 확인 시 인정) ※관련 소학회 지도 실적과 중복 인정됨

※ 1.30, 1.40 항목의 경우 법전원 업적평가위원회가 교육업적의 엄격한 질관리를 통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에 반영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
2.11	• 국내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속한 분류의 KCI IF(5-Year) 상위 20/30/50% 이내 학술지에 대하여 각각 1.5/1.3/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2.12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SSCI, A&HCI 등재학술지 3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JCR IF(2-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의 평가점수에 대해 각각 2/1.5/1.2의 가중치 차등 부여 가능) - 기타국제학술지¹⁾ 100점
2.20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학술저서란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를 의미 ※ 초판 100%, 개정 시 20점 ※ 학술저서는 본문만 150면 이상, ISBN부여, 각주 포함된 경우만 인정(본문 150면 이하이지만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서 50점)
2.21	• 국내 전문학술저서 100점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로서 우수학술저서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200점)
2.22	• 국제 전문학술저서 100~200점(점수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23	• 국내전문교재 100점(본문만 150면 이상)
2.24	• 국제전문교재 100~200점(점수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25	• 편저서 (편저서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편저자는 0점이나 편저 또는 4인이상 공저인 저서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당 20점을 부여)
2.26	• 전공관련 번역서 - 국내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 : 100점 - 국외학술저서를 한국어로 번역 : 100점
2.30	학술회의
2.31	• 국내학회학술발표 10점
2.32	※ 전국규모학회의 정기학술발표로 연2회 인정 • 국제학회학술발표 20점
2.40	※ 발표와 논문 게재는 중복 인정됨
2.41	연구활동
	• 국가 R&D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2.42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
2.43	- 학연구비와 합산 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 기고활동 10점 ※ 논문성 기고에 한하며 편당 10점 연2회 인정 • 중소기업법무센터 상담연구보고서 발간(연구보고서 내 상담연구 건당 5점, 1인당 연간 100점 상한)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입시상담 0~20점	• 로스쿨 입학설명회 상담 시간당 2점(상한 20점) • 입학설명 동영상 촬영 건당 5점(상한 20점)
3.16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활동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100점, 집필 및 검토위원 30~70점(원장이 부여) (성과승격 반영)
3.17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30점	• 회장 3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감사/학회지편집간사 10점 ※ 겸직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연간상한 30점)
3.22	자문활동 0~20점	• 공공기관 또는 공익성이 분명한 전공분야 활동 위원장 20점, 위원 10점(연간상한 20점)
3.23	기타활동 0~20점	• 비전공분야 봉사활동 0~20점 • 기관 시험출제 1회 5점(2회까지만 인정)(연간상한 20점)
3.24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 20점, 비학술상(국가기관 20점, 기타민간기관 10점) (연간상한 20점)
3.25	교류실적	• 국제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 1건당 5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건당 20점
4.14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5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6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7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4.18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실용신안 5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비영리기관, 단체 활동 (0-30점) 교육, 강연(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교육대학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교육대학원강의 포함)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 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학부과목 및 교육대학원 과목에 한함)
1.15		• MOOC 강의 신규개설 5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연구회운영, 세미나, 학술행사 개최실적(학기당 5점, 상한 20점) • 도전학기 우수지도교수 50점 (성과승격 반영) •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50점 (성과승격 반영) •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5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30	교육활동	
1.3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
2.11	- 국내학회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단, 소학회지, 지역학회지, 기타학회지 제외)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KCI IF(5-Year) 상위 2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1.5/1.3/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80점
2.12	- 소학회지, 지역학회지, 기타학회지 60점 (소학회지, 지역학회지, 기타학회지는 심사있는 학회지만을 포함하며 대학논문집 제외) - 국제학술지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 점수배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SSCI, SCIE: 400점 (단, 제1저자/교신저자에 한하여 JCR IF(5-Year) 상위 10/30/50% 이내 저널에 대하여 각각 2/1.5/1.2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함) - 기타 국제학술지: 100점 - A&HCI : 400점 - SCOPUS : 200점 ※ 연구실적은 해당연구자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학회 또는 학회지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을 한다. 단, 논문제목과 연구내용이 전공영역과 관련되는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 평가자는 업적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성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20	저 서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2.21	국내학술저서 100점 또는 200점 ※ 점수배정은 교육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학술저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를 의미한다) (그 분야에서 학문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한 학술 저서는 200점 부여)
2.22	국제학술저서 100~300점 ※ 점수배정은 교육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소정의 Referee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한 책은 300점 부여)
2.23.	국내전문교재 100점 (전문교재는 대학전공교재 및 국정·검인정 중등교과서(단, 동일물에 대한 해설서는 제외함))
2.24	국제전문교재 : 소정의 Referee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한 책은 200점 부여
2.25	편저서(편저서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편저자는 0점이나 편저 또는 4인이상 공저인 저서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당 20점을 부여)
2.26	역서 0~70점 ※ 점수배정은 교육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30	학술회의
2.31	국내학회학술발표 10점 ※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전국규모학회의 정기학술발표로 년2회 인정
2.32	국제학회학술발표 20점 ※ 공식학회발표로 년2회 인정 (발표와 논문 게재는 중복 인정됨)
2.40	연구활동
2.41	- 국가 R&D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2	기고활동 10점 ※ 논문성 기고이며 편당 10점이며 년2회 인정

1)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 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 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5~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상임이사 10점 • 학회이사(학진등재 전국규모학회), 편집위원(학진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5점 ※ 겸직시 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총 3개 학회 범위내에서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전문성이 명백한 교육관련 분야의 협의회, 포럼 등에서의 자문 활동 위원장 20점, 위원 10점, 상한내에서 1회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교육관련분야의 봉사활동
3.24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 20점, 비학술상(국가기관 20점, 기타민간기관 10점)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
4.13	학생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
4.14	학생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5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
4.16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7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 실용신안 5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가족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교육, 강연 (건당 5점, 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공공정책대학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학부강의 포함)
1.13	대단위강의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20점(학부과목 및 공공정책대학원 과목에 한함)
1.20	학생지도	
1.21	학생지도실적	· 연구회운영, 세미나, 학술행사 개최, 해외연수 지도실적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아주북통(독서클럽) 지도 (학기당 5점, 상한 20점) · 과란학기 지도(팀당 10점, 상한 20점) · 강의페어링 지도(1인당 2점, 상한 20점)
1.22	석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10/1인(논문지도교수) · 특수대학원 10점/1인(논문지도교수)
1.23	박사배출 실적	· 일반 · 전문대학원 40점/1인(논문지도교수)
1.30	교육활동	· 교육부문 국고 수주액 : 1,000만원당 5점 (연간 상한 50점)
1.31	교육부문 국고사업 수주	(공동수주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문	
2.11	· 국내학회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80점 소학회지, 지역학회지, 기타학회지 60점 (소학회지, 지역학회지, 기타학회지는 심사있는 학회지만을 포함하며 대학논문집 제외)
2.12	· 국제학술지 100~300점 - SSCI, A&HCI, SCIE : 300점 - SCOPUS : 200점 - 기타 국제학술지 : 100점 * 연구실적은 해당연구자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학회 또는 학회지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국제학술지의 경우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20 저 서	
2.21	· 국내학술저서 100점 또는 200점 * 점수배정은 공공정책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학술저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를 의미한다) (그 분야에서 학문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한 학술 저서는 200점 부여)
2.22	· 국제학술저서 100 ~ 300점 * 점수배정은 공공정책대학원업적평가위원회 결정 (소정의 Referee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한 책은 300점 부여)
2.23	· 국내전문교재 100점
2.24	· 국제전문교재 : 소정의 Referee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한 책은 200점 부여
2.25	· 편저서 (편저서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편저자는 0점이나 편저 또는 4인 이상 공저인 저서에 게재된 논문은 논문당 30점을 부여)
2.26	· 전공관련 번역서 - 한국저서를 외국어로 번역 : 150점 - 외국저서를 한국어로 번역 : 100점
2.30 학술회의	
2.31	· 국내학회 논문발표(연간 2회까지 인정) - 학진등재지학회 논문발표 30점, 학진등재후보지학회 논문발표 20점, 기타학회지 논문발표 10점
2.32	· 국제학회 발표(연간 2회까지 인정) - 6개국 이상 참가 국제학회 논문발표 : 50점 - 5개국 이하 참가 국제학회 논문발표 : 30점
2.40 연구활동	
2.41	· 연구보고서 50점 (연간 상한 100점) 책임연구원(50점), 공동연구원 1인(각 35점), 2인(각 25점), 3인 이상(각 15점)
2.42	· 국가 R&D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연구영역의 국가연구비는 승진·재임용·성과승격 시 연구영역 점수로 산정되지 않고, 산학연구비와 합산하여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사용가능 함
2.43	· 기고활동 10점 * 논문성 기고이며 편당 10점이며 년2회 인정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 (상한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40점)
3.15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5~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편집간사 10점 · 학회이사(학진등재 전국규모학회), 편집위원(학진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5점 * 겸직시 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총3개 학회 범위 내에서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자문활동 0~20점	· 공공기관 또는 공익성이 분명한 전공분야 활동 위원장 20, 위원 10, 상한내에서 1회 인정
3.23	기타활동 0~20점	· 비전공분야 봉사활동
3.24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 20, 비학술상(국가기관 20, 기타민간기관 10)

4. 산학협력영역(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반영-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의 산학협력영역 22개 항목에 한함)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방문(인턴십) 지도	• 방문지도 5점/명
4.12	캡스톤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 캡스톤 디자인 신규 개발 및 지도 1과목당 75점
4.13	학생 취업지도	• 교수추천 해당업체 취업학생수당 10점
4.14	학생 창업지도	•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성공한 창업 회사당 최초 1회 인정) 75점
4.15	진로지도 및 취·창업 친화형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 교과목 신규 개발 및 지도 건당 75점
4.16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학생 파견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2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학생 파견 5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4.17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 기타 창의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1건당 75점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수입료	• 기술이전 수입료 1,000만원당 300점(공동발명인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공동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2	특허등록	• 특허(동일사안에 대해 특허 출원시 점수 미반영, 등록시 점수반영) - 발명 해외 300점 / 국내 75점 / 실용신안 50점
4.23	산업체 연구비 수주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 O/H 2,000만원당 600점(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은 책임교수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유치기업 건당 300점(유치 후 공동산학과제 수행 시 최초 1회에 한함, 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5	교원 창업	• 교원 창업 300점(매출발생 시 회사당 1회 인정)
4.26	대형산학과제	• 대형산학과제 1건당(연 1억 이상 연구비)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7	대형기술이전 수입료	• 대형기술이전료 1건당(기술이전료 1억 이상) 150점(책임교수에 한함)
4.28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	•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최소 매출 10억원 이상) 150점 (연간상한 300점)
4.29	신기술·제품 인증	• 신기술 제품인증 1건당 5점
4.291	창작물	• 창작물(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1건당 25점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자문료(1천만원 미만) 5점/건, 자문료(1천만원 이상) 10점/건 (연간상한 30점), ※ 동일기관은 모두 1건으로 인정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신규(무료) 유치회사 5점/건 • 신규(유료) 가족회사 유치시 20점/건 • 전환(무료→유료) 가족회사 15점/건 * 유료가족회사 갱신 시, 전환 적용
4.33	산업체 파견 활동(목표지향적 현장 파견)	• 목표 지향적 현장 파견(기업혁신 등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1개월당 25점
4.34	산업체 방문 특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교육, 강연 (건당 5점, 연간 상한 30점)
4.35	지역소상공인 지원	• 지역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1건당 10점

산학협력중점교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1.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1.10 1.11	강의 강의시간	· $\text{Max}[90 + (\text{연간수업학점수} - \text{연간책임시간}) \times 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 (운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1.13	수업평가 대단위강의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times 0.75$ · $\text{Max}[(\text{강좌당학생수} - 80) \times 0.25, 0]$ (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 $\times$ 해당학점 / 3학점
1.14 1.20	새로운 교과목 개발 학생지도	· 과목당 50점
1.21 1.22	학생상담 실적 학생지도 실적	· 학생상담실적 건당 0.2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 파란학기 지도(창업실적에 한함) 팀당 10점, 상한 20점

2.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2.10 2.11	논문(연간상한 100점) · 국내학회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기타학회학술지 50점
2.12	· 국제학술지 SCIE, AHCI, SSCI 300점(다만, SCIE급 lecture note는 150점으로 한다) SCOPUS 저널 논문 150점 기타국제학술지 100점

3.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적내용	비고
3.10 3.11 3.12 3.13	교내봉사 교무위원 80~100점 기타보직 15~80점 각종위원회(장) 5~2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40점)
3.14 3.15	특별기여 0~40점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40점) ·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5점 감점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전체 미이수로 간주)
3.20 3.21	교외봉사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편집간사 10점 * 겸직시 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3.22	수상실적 0~20점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 학술상 수상 20, 비학술상(국가기관 20, 기타민간기관 10)

4. 산학협력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무 교수법 개발	· 30점/건(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12	산업체 연계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과목 운영	·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수행 지도 5점/팀
4.13	현장실습 지도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30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10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방문지도(본인발굴기업 외) 5점/명
4.14	산학협력 프로그램 학과생 지도	· 5점/건
4.16	학생취업지도	· 5점/건
4.17	학생창업지도	· 10점/건
4.18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유치	· 100점/건(학과에서 인정한 경우)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특 허	· 특허 국제발명특허등록 150점/건 국내발명특허등록 100점/건 국내실용신안등록 50점/건 국제발명특허출원 20점/건 국내발명특허출원 10점/건 국내실용신안출원 5점/건
4.22	연구비 수주	· 책임 및 참여: 연구비 수혜액 O/H 1,000만원 당 150점 · 수주 기여: 연구비 수혜액 O/H 1,000만원 당 300점 (참여율에 따라 계산된 O/H 반영하고, 수주 기여는 산업체 연구비만 인정하며 최대 참여율 30%까지 인정)
4.23	기술이전 수입료	· 발명 이전(책임): 10점/1,000만원 · 중개 기여(참여): 30점/1,000만원 (수입료 실적에 대한 발명자보상금 산출 시 기여율이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기여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료 반영)
4.24	기술이전 건 수	· 10점/매2건
4.26	창업	· 100점/건(학교에서 인정한 경우)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산업체자문실적 5점/기관(연간상한 20점)
4.32	산학협력 관련 교내 TF/위원회 활동	· 5~20점/건(연간상한 40점)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TF/위원회에 한하며, 위원장이 평가하여 점수 부여(단, TF/위원회 활동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

제정	2014. 02. 17
개정	2014. 02. 28
개정	2014. 04. 11
개정	2014. 10. 10
개정	2014. 11. 26
개정	2014. 12. 31
개정	2015. 09. 22
개정	2016. 08. 10
개정	2016. 12. 5
개정	2017. 4. 4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06. 03
개정	2020. 09. 02
개정	2021. 04. 27
개정	2022. 02.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담당교원,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 (개정 2014.10.10) (개정 2017.4.4.) (개정 2022.02.25.)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

제3조(적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

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직위별 임용기준은 본 대학교「교원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교육중점교수 : 부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에 한함), 조교수
2. 연구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3. 산학협력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제6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8조(겸직 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제8조, 교원 겸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3월 개정 예정)】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제3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4.1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4.4.1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14.4.11)
-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1.)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 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 규칙을 따른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와 관련한 신임교원심사위원 및 선정후보자를 소속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제14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인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5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및 대학(원)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학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 단위로 한다.

제17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4.2.28)

② 교수업적평가에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재임용·승급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학과장 제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을 재임용한다.

제20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8년으로 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

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3)

1. 승진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평가는 본 대학교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인정된 전직 대학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전직대학의 재직기간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승진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제21조(승진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요건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70점 이상으로 하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른다. 다만, 각 대학(원), 학과 및 소속부서의 승진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다음 승진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원별로 승진기준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개정 2014.12.31.) (개정 2015.9.22) (개정 2016.8.10) (개정 2016.12.5) (개정 2020.01.31) (개정 2020.06.03) (개정 2020.09.02.) (개정 2021.04.27.)

구분		필수최저요건(연평균)	
		교육영역	연구영역
교육 중점 교수	전공부분 담당교원	- 수업평가점수 3.90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별표1]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 충족 ※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1]에 규정한 교육,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 가능
연구중점교수		- 수업평가점수 3.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별표1]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과 질적 평가 최저기준 충족 - 질적 평가 최저기준은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4를 따름 ※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1]에 규정한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수		- 수업평가점수 3.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교수업적평가 350점 이상 충족 - 별표2(연구 및 산학협력영역 업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교수 업적평가 - 반영항목 : 논문, 특허, 연구비 수혜액, 기술료,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창업, 현장실습, 산학협력 관련 교내 위원회 활동, 산업체 연계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과목 운영, 학생취업지도, 기술·경영자문

* : 책임시수는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학점 또는 24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특수대학원 등 학과 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5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개정 2020.09.02)

제22조(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 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60점 이상으로 하며,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른다. 다만, 각 대학(원), 학과 및 소속부서의 재임용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다음 재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원별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개정 2014.12.31.) (개정 2015.9.22) (개정 2016.8.10) (개정 2016.12.5) (개정 2020.01.31) (개정 2020.06.03) (개정 2020.09.02.) (개정 2021.04.27.) (개정 2022.02.25.)

구분		필수최저요건(연평균)	
		교육영역	연구영역
교육 중점 교수	외국어회화 담당교원	- 수업평가점수 3.7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해당 없음
	전공부분 담당교원	- 수업평가점수 3.7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별표1]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 충족 ※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1]에 규정한 교육,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 가능
연구중점교수		- 수업평가점수 3.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별표1]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과 질적 평가 최저기준 충족 ※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1]에 규정한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 가능 - 질적 평가 최저기준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연평균 JCR(2-year) IF 상위 25% 이내 1건 또는 상위 50% 이내 2건. IF백분위는 게재 시와 투고 시의 IF백분위 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함 ※ IF 상위 25% 이내 논문은 연구재단 지정 CS 우수국제학술대회(IF 3 또는 4) 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산학협력중점교수		- 수업평가점수 3.5점 이상 - 책임시수 충족	- 교수업적평가 250점 이상 충족 - 별표2(연구 및 산학협력영역 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 반영항목 : 논문, 특허, 연구비 수혜액, 기술료,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창업, 현장실습, 산학협력 관련 교내 위원회 활동, 산업체 연계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과목 운영, 학생취업지도, 기술·경영자문

* : 책임시수는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학점 또는 24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특수대학원 등 학과 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5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개정 2020.09.02.)

제23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제23조의2(승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장 제4절을 준용한다.(신설 2014.2.28)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

제 4 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제30조(복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교수연구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연구실은 공동연구실로 배정한다.

제32조(타교출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교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교수시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중점교수 : 전공부분 담당교원은 연간 18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영어회화 담당교원은 연간 30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일정부분 교수시간을 연구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연구중점교수 : 연간 6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로 계약으로 정함.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연간 10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로 계약으로 정함.

제34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35조(해외여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연구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연구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제37조(전체교수회의)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② 비정년교원은 소속단위의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단위의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사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0522호 : 202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제22조 별표2의 학생지도실적의 개정 규정은 2020년부터 반영한다.

부 칙 <기획팀-551호 : 2020.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SCI, SCIE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21조, 제22조와 별표1, 별표2, 별지1의 적용은 2020년 이후 논문부터 적용하며 이전 논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기획팀-1164호 : 2020.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후에는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494호 : 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제22조의 별표2 산학협력영역 ‘현장실습지도’ 항목 개정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후에는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1.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

1. 교육중점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

구분	필수최저요건(연평균)								해당대학(원)
	재임용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책임 시수	15 학점	18 학점	21 학점	24 학점	15 학점	18 학점	21 학점	24 학점	
기준A	175	125	75	0	210	150	90	0	공과대학(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정보통신대학(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기준B	140	100	60	0	175	125	75	0	공과대학(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대학(미디어학과)
기준C	100	65	45	0	126	90	54	0	경영대학(글로벌경영학과 제외),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원 제외),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기준D	100	65	45	0	105	75	45	0	경영대학(글로벌경영학과),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원), 다산학부대학

* 대학원 소속 교원은 이수전공 또는 중복배속학과를 기준으로 단과대학(학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과) 기준을 적용

□ 교수 승진·재임용의 최저기준을 100%로 할 때 연구영역 최저 비율 및 영역별 최대 대체 가능 비율

구분	반영항목	재임용 및 승진
연구영역(국가연구비 제외) 최소 비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름	80%
영역별 최대대체가능비율	- 교육영역 : 교육우수교수상수상 - 산학협력영역 : 산업체연구비 (국가연구비는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반영함)	20%

2. 연구중점교수

구분	필수최저요건(연평균)			해당대학(원)
	재임용 및 승진(조교수 → 부교수)			
책임 시수	0 학점	3 학점	6 학점	
기준A	750	625	500	공과대학(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정보통신대학(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기준B	600	500	400	공과대학(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대학(미디어학과)
기준C	450	375	300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다산학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 대학원 소속 교원은 이수전공 또는 중복배속학과를 기준으로 단과대학(학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과) 기준을 적용

□ 교수 승진·재임용의 최저기준을 100%로 할 때 연구영역 최저 비율 및 영역별 최대 대체 가능 비율

구분	반영항목	재임용 및 승진	
		조교수	부교수
연구영역(국가연구비 제외) 최소 비율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름	70%	60%
영역별 최대대체가능비율	- 산학협력영역 : 산업체연구비 (국가연구비는 산학협력영역 대체점수로 반영함)	30%	40%

별표2.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수업적평가 기준

가. 교육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1.10	강의	
1.11	강의시간	• Max[90+(연간수업학점수-연간책임시간)x5, 60] *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 (운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
1.12	수업평가	•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x 0.75
1.13	대단위강의	• Max[(강좌당학생수-80)X0.25, 0](학부강의에 한함) * 3학점미만의 경우 : 산출점수x해당학점/3학점
1.14	새로운 교과목 개발	• 과목당 50점
1.20	학생지도	
1.21	학생상담 실적	• 학생상담실적 건당 0.2점(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
1.22	학생지도 실적	• 과목학기 지도(창업실적에 한함) 팀당 10점, 상한 20점

나. 연구영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2.10	논 문(연간상한 100점)
2.11	• 국내학회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기타학회학술지 50점
2.12	• 국제학술지 SCIE, AHCI, SSCI 300점(다만, SCIE급 lecture note는 150점으로 한다) SCOPUS 저널 논문 150점 기타국제학술지 100점

다. 봉사영역

평가항목	업 적 내 용	비 고
3.10	교내봉사	
3.11	교무위원 80~10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2	기타보직 15~80점	• 세부기준은 교무처에서 결정,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3.13	각종위원회(장) 5~20점	•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상한40점)
3.14	특별기여 0~40점	•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상한40점)
3.20	교외봉사	
3.21	학회활동 10~50점	• 회장 30~50점 • 부회장/편집위원장 15점 • 총무이사/간사/상임이사/학회지편집간사 10점 * 겸직시 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
3.22	수상실적 0~20점	• 학술상 수상 20, 비학술상(국가기관 20, 기타민간기관 10)

라. 산학협력영역

항목번호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4.10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무 교수법 개발	• 30점/건(학과에서 인정 한 경우)
4.12	산업체 연계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과목 운영	•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수행 지도 5점/팀
4.13	현장실습 지도	•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30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10점/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 • 방문지도(본인발굴기업 외) 5점/명
4.14	산학협력 프로그램 학과생 지도	• 5점/건
4.16	학생취업지도	• 5점/건
4.17	학생창업지도	• 10점/건
4.18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유치	• 100점/건(학과에서 인정 한 경우)
4.20	산학협력 연구활동	• 특허
4.21	특 허	국제발명특허등록 150점/건 국내발명특허등록 100점/건 국내실용신안등록 50점/건 국제발명특허출원 20점/건 국내발명특허출원 10점/건 국내실용신안출원 5점/건
4.22	연구비 수주	• 책임 및 참여: 연구비 수혜액 0/H 1,000만원 당 150점 • 수주 기여: 연구비 수혜액 0/H 1,000만원 당 300점 (참여율에 따라 계산된 0/H 반영하고, 수주 기여는 산업체 연구비만 인정하며 최대 참여율 30%까지 인정)
4.23	기술이전 수입료	• 발명 이전(책임): 10점/1,000만원 • 중개 기여(참여): 30점/1,000만원 (수입료 실적에 대한 발명자보상금 산출 시 기여율이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기여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료 반영)
4.24	기술이전 건 수	• 10점/매2건
4.26	창업	• 100점/건(학교에서 인정 한 경우에 한함)
4.30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활동	• 산업체자문실적 5점/기관(연간상한 20점)
4.32	산학협력 관련 교내 TF/위원회 활동	• 5~20점/건(연간상한 40점)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TF/위원회에 한하며, 위원장이 평가하여 점수 부여(단, TF/위원회 활동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외)

별지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심사평정표

가. 교육중점교수

피평가자	소 속 :	성 명 :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단위 (점 수)	1차 평 정	2차 평정	임용 적합 여부
1.교 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수업계획서, 대단위 강의, 강의노트 공개, 새로운 교과목 개발	50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교육활동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 교육관련 수상 실적 ○ 교수법 강좌 참가				
2.연 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20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봉 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5			
4.학과장 및 대학(원)장/ 부서장 평가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 위,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하고 구체 적인 평가자의 의견 기재)	15			
계		100			

제1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학과장 성명 (인)

◀ 제2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대학(원)장 성명 (인)

나. 연구중점교수

피평가자	소 속 : 성 명 :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단위 (점 수)	1차 평 정	2차 평정	임용 적합 여부
1.교 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20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2.연 구	논문 및 저서 ○ 국제논문(SCIE급) 실적 ○ 국내논문(KCI급)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50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봉 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5			
4.학과장 및 대학(원)장/부서장 평가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자의 의견 기재)	15			
계		100			

◀ 제1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_____ 학과장 성 명 (인)

◀ 제2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_____ 대학(원)장/부서장 성 명 (인)

다. 산학협력중점교수

피평정자	소 속 :	성 명 :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단위 (점 수)	1차 평 정	2차 평 정	임용 적합 여부
1.교 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10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산학협력 프로그램 학생 지도 ○ 산학 연계 인턴십 지도 ○ 취업지도 ○ 창업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2.연 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지) 간행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60			
	산학협력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 기술이전 및 기술료 ○ 산학협력 프로그램 ○ 특허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연구활동 ○ 연구보고서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학술상 수상				
3.봉 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5			
4.학과장 및 대학(원)장/ 부서장 평가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자의 의견 기재)	15			
계		100			

◀ 제1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_____ 학과장 성 명 (인)

◀ 제2차평정 평정일 . . .
 평정자 _____ 대학(원)장/부서장 성 명 (인)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 정	1993. 11. 12
개 정	1995. 7. 1
개 정	1995. 11. 1
개 정	1996. 2. 7
개 정	1998. 3. 1
개 정	1998. 4. 17
개 정	2000. 6. 1
개 정	2000. 10. 24
개 정	2002. 6. 1
개 정	2005. 6. 7
개 정	2006. 9. 25
개 정	2011. 12. 7
개 정	2012. 4. 19
개 정	2014. 2. 17
개 정	2014. 3. 14
개 정	2016. 12. 5
개 정	2019. 2. 27
개 정	2020. 2. 21
개 정	2020. 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7) (개정 2019.2.27)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 및 전문성을 증진시켜 본 대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와 학생지도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연구년기간 및 최소복무기간)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12개월 연구년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1.12.7) (개정 2014.3.14) (개정 2016.12.5)

②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5.6.7 >

④ <삭제 2005.6.7 >

⑤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년 활용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3조 제1항의 연구년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에 직전 연구년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의 2배(1년 또는 2년)만큼 가산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최소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6.1>

③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중 교수시간 수를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충족할 때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간 중 2003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교수시간 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7)

⑤ <삭제 2005.6.7>

⑥ 직전 연구년 종료 후 제10조 제2항의 연구년 활용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제출할 때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의2(연구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1.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 포함된 해당 학기 말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년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유보된 기간을 최소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본교 인권센터,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기관에서 조사나 심의를 거쳐 연구년 허가 보류의 권고의견이 있는 경우
3. 외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연구년 허가 이후 연구년 시작일까지의 기간에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년 허가를 취소한다.

④ 연구년 허가 이후 연구년 시작일까지의 기간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7]

제4조의3(신청절차)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년 허가 신청서에 상세하게 작성된 연구년 활용계획 및 직전에 실시한 연구년 활용결과물을 첨부하여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8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장(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원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 (개정 2014.3.14)

제5조(인원의 제한) ① 매학기 학과(전공)별 최대연구년허가교원수는 (학과(전공)교원수/7)의 절상값 이내로 제한되며, 12개월 연구년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의 학과(전공)별 연구년 수혜교원 총수가 최근 7년간의 학과(전공)의 평균교원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4.19)

② 휴직, 파견 중인 교원은 복귀를 기준으로 학과(전공)교원수에 반영한다. (개정 2012.4.19)

③ 연구년을 연기한 교원이 연구년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기 학과(전공)별 ①항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보직 수행 등으로 연구년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④ 매학기 연구년 부여 교원의 총수는 전항에 불구하고 전체 교원 (휴직교원 포함, 의과대학 제외)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심사 및 허가)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신청자의 연구년 활용계획, 최근의 최소복무기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 과거 연구년 활용결과물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며, 교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 총장은 연구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의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연구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27)

제7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현직 근무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지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4)

③ 연구년 기간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년의 목적에 부합되는 장학금, 연구비, 보조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구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제2항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연구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8조(연구년의 시효 및 연기) ①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해당 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잔여기간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은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

다. 다만, 보직 등의 사유로 전 기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연구년 개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년 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하여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년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없다.(개정 2014.3.14)

④ (삭 제)

제9조(연구년의 개시) ① 연구년은 3월1일 또는 9월1일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구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12.4.19)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구년을 활용할 기관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년 개시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개정 2014.3.14)

제10조(보고의무) 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연구년 활용계획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년 활용계획 변경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4.3.14)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년 활용 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 학과(전공) 또는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연구년활용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년 기간 중의 결과물도 포함한다.(개정 2012.4.19) (개정 2014.02.17) (개정 2014.3.14.) (개정 2019.2.27.) (개정 2020.02.21) (개정 2020.07.02)

제11조(기간연장 금지) 연구년의 소정기간을 초과한 연장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교원은 휴직절차(무급휴직)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복무의무 등) ① 연구년이 종료되면 총장의 별도 허락이 없는 한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수혜 교원은 학교에 복귀한 후 수혜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기간에 지급된 보수 중에서 제2항의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간만큼의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년 수혜 교원은 직무를 떠나 연구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석·박사 논문지도, 논문심사 또는 교내 위원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7.02)

제13조(의료원에 대한 특례) 의료원 교원의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 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교원 연수출장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수출장을 마쳤거나, 연수출장 중인 교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년제 인원제한의 특례)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학년도 연구년 부여 인원은 본 대학교 교원 총원의 10%이내로 하고, 1995학년도부터 매년 1%씩 증원하여 1999학년도 이후에는 15%이내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이 규칙은 1997학년도 연구년 해당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년제 인원제한의 특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연구년제 인원제한의 특례조항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11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실시된 교수업적평가에서 받은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연구년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전 규칙에 따라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게재된 논문을 교무처장을 거쳐 연구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3학년도 3월 1일 시행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6학년도 3월 1일 시행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의 단서는 2005학년도 9월1일 시행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당시 제6조 제2항에 의거 연구년 대상자로 기 확정 통보된 교원의 허가된 연구년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2항 별표1의 기준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3월 1일 시행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10646호: 2020.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 별표1의 미디어학과 활용결과물 세부내용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3월 1일 시행 연구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팀-763호: 2020.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SCI, SCIE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2항 별표1의 적용은 2020년 이후 논문부터 적용하며 이전 논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대학(원)별 교원 연구년 활용결과물 기준

구분	활용결과물 세부내용		비고
연구년 활용결과물 ¹⁾ 범위	학술논문 원칙으로 함. (단, 학술논문의 연구년결과물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허가 신청 시 연구년 활용계획서에 대체 연구년 결과물을 제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대체 연구년 결과물: 교수업적평가규칙 제22조 제2항 승진 연구실적물 범위로 한정함.
대학(원)별 학술 논문 실적 기준	이공계 분야(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 미디어학과 제외	SCIE급/SCOPUS 학술지 1.0편	-
	미디어학과	SCIE급/SCOPUS 학술지 1.0편 또는 인문/사회/예술분야 학진등재지 (후보지 포함) 2.0편	SCIE급/SCOPUS 학술지의 실적은 교수업적평가기준의 배점에 따라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진등재지의 실적으로 대체 가능
	인문·사회계 분야(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SCIE급/SCOPUS 학술지 0.5편 또는 학진등재지(후보지 포함) 1.5편	SCIE급/SCOPUS 학술지와 학진등재지(후보지 포함)의 실적은 교수업적평가기준의 배점에 따라 상호 대체 가능
	경영대학	SCIE급/SCOPUS 학술지 0.5편 또는 학진등재지(후보지 포함) 1.5편	
	약학대학	SCIE급/SCOPUS 학술지 2.0편	
	대학원(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다산학부대학	원소속 또는 해당 세부전공의 기준에 따름	-
학술논문 실적산정 기준	논문저자수 1인	실적=1건	-
	논문저자수 2인 이상	주저자, 교신저자의 실적= $2/(n+2)$ 공동저자인 경우, 실적= $1/(n+2)$ (단, 총저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n=15$ 로 하여 산정함.)	-
대체 연구년 결과물 기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22조 제1항의 연구영역 최저요건점수(연평균)의 200%		

주1) 연구년 활용결과물은 연구년 활용계획서상의 실적물을 반드시 포함하여, 종료일 2년 이내의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연구년 기간 중의 결과물도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년 허가 신청서

=

신청인	소 속	대학(원) 학과 전공		
	성 명		직 급	
연구년 신청기간	학년도 학 기 ~ 학년도 학기(개 학기)			
첨 부	1. 연구년 활용 계획 1부. 2. 연구년 활용 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본인은 본 대학교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추 천 자 : 학과장 (인)

대학(원)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년 연기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1. 연구년 허가기간: . . (부터) ~ . . (까지)

2. 연기후 연구년기간: . . (부터) ~ . . (까지)

3. 연기사유 :

년 월 일

학과장 (인)

대학(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년 개시 보고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1. 연구년 활용 기관명 :

2. 연구년 기간 : . . . (부터) ~ . . . (까지)

※ 연구년 개시일(출국일) : 년 월 일

3. 연구년 기간중 연락처

☎ 국 내 : (전화 :)

국 외 : (전화 :)

e-mail :

년 월 일

학과장 (인)

대학(원)장 (인)

붙임 파견기관 초청장 1부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년 활용계획 변경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 연구년기간 :(부터) ~(까지)
- 변경사항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변경사유 :

상기와 같이 연구년 활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연구년 활용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과장 (인)

대학(원)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년 활용 결과 보고서

보 고 자	성 명	(인)	직위	
	소 속	대학(원)	학과	전공

연 구 내 용	연구제목 [한글,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연구기관	

연구 활용 결과

* 연구목적, 수행일정, 연구내용 및 결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학술면, 기타) 등의 내용으로
별지에 2쪽 이상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연구년 활용
결과물

- * 차기 연구년 심사시 본 연구년 활용결과물에 대한 게재(출판)여부에 따라 자격유무를 결정하게 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학술지논문(), 저서(), 기타()
 - 논문제목(저서명):
 - 학회지명(출판사) :
 - 발간(예정)일 :
 - 기타사항 :

*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0조 ② 각 학부 또는 대학원(학과)에서 요구하는 연구년 활용 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또는 미제출 시 동 규칙 제3조 ⑤ 및 제4조 ⑥을 적용한다.

년 월 일

학과장 (인)

대학(원)장 (인)

교수윤리위원회규칙

제정 2003.12. 9.

개정 2006. 9.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9. 7)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윤리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교수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3. 교수윤리규범 또는 교수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신설 2006. 9. 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6. 9. 7>

② 위원회는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 9. 7)

③ <삭제 2006. 9. 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9. 7)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제7조(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이 된 교수(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 및 관계인(심의요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청문회 등 의견청취·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관계인조사 또는 청문회 등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한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구성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제9조(재심의) ① 피심의인 또는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 9. 7)

제10조(비밀유지의무) ① 피심의인에 대한 심의·조사·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심의요청인, 피심의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유지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다만, 위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 9. 7)

제11조(제척) ① 위원(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3조(간사) 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강의 및 강의로 지급규칙

제정	1983.	1.	25
개정	1986.	6.	17
개정	1996.	3.	1
개정	1996.	7.	22
개정	1999.	9.	1
개정	2001.	8.	6
개정	2003.	11.	2
개정	2006.	3.	30
개정	2008.	12.	30
개정	2009.	11.	13
개정	2010.	2.	5
개정	2012.	4.	19
개정	2015.	6.	17
개정	2019.	10.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의 및 강의로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2조(강의 구분과 정의) 강의는 강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일반강의 : 2호의 특수강의 이외의 정규수업을 말한다.
2. 특수강의 : 실험, 실습, 연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
3. 특별강좌 :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특별강좌를 말한다.

제3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개정 2008.12.30) (개정 2010.2.5)

② 교수시간은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수업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합한 시간으로 한다.(개정 2012.4.19)

③ (삭제 99. 3. 22.)

④ (삭제 99. 3. 22.)

⑤ 정년퇴임 직전 1년간은 학기당 3학점 이내(연간 6학점)에서 수업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⑥ (삭제 99. 3. 22.)

⑦ (삭제 2003. 11. 25.)

- ⑧ 특수강의의 경우, 담당교수의 참여도에 따라 교수시간 반영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06. 3.30.)
- ⑨ 교수시간 산출은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8.12.30)
- ⑩ 전임교원 교수시간이 미 충족된 경우 차년도 교수시간은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교수시간에 미 충족 교수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신설 2008.12.30)
-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교과목은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09.11.13)
- ⑫ 교수시간 산정에 있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11.13)

제4조(강의료의 정의)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9.10.2)

1. (삭제 99. 3. 22.)
2. 시간강의료 : 수업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3. 특별강좌 강의료 : 특별강좌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4. 초과강의료 : 전임교원에게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를 말한다.

제5조 (삭제 99. 3. 22.)

제6조(강의시간의 인정) 비상재해로 인한 휴업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1. <삭제 2009.11.13>
2. <삭제 2009.11.13>

제7조(강의료 지급 기준) ①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수강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8.12.30)

1. 소단위 강의(80명이하) : 기준액의 100%
2. 중단위 강의(81-150명) : 기준액의 120%
3. 대단위 강의(151명이상) : 기준액의 150%

② (삭제)

③ 전임교원이 교수시간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8조(타교출강) 전임교원은 타교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과대학 등)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강의 및 강의로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12.30.) (개정 2015.06.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3. 1. 25. 규칙 제7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6. 6. 17. 규칙 제7호)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1항과 관련하여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6. 12. 27
개정	2011. 2. 10
전면개정	2011. 5. 12
개정	2015. 4. 29
개정	2017. 9. 15
개정	2019. 10. 2
개정	2023. 1. 13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5.12)

제3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12)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5.12)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5.12)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개정 2011.5.12)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3.01.13.)
-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삭제 2011.5.12.>
-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01.13.)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1.5.12)

1.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3.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 착수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2(진실성 검증 시효) <삭제 2011.5.12>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위원은 부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5.12) (개정 2019.10.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11.5.12)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을 간사로 둔다.(신설 2011.5.12)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1.5.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권고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신설 2011.5.12)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제보자는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② <삭제 2011.5.12>

③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01.13.)

제10조(예비조사의 착수)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다.(신설 2011.5.12)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29)

③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예비조사 위원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임무완료시까지로 한다.(신설 2011.5.12)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1.5.12>

③ <삭제 2011.5.12>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보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 및 관련절차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 착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상기 제1항과 동일 기간 내에 피조사자에게 관련절차 및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1.5.12.)

③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4.29)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3.01.13.)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착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되어야 한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는 본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3.01.13.)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14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무완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② 본조사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신설 2011.5.12)

③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3.)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5.12)

⑤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서면질의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11.5.12)

④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01.13.)

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피조사자의 혐의는 판정 <삭제>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5.12.) (개정 2023.01.13.)

⑦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위원회 위원과 관계 교직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5.12.)(개정 2023.01.13.)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1.13.)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본조사위원 명단(개정 2011.5.12)

제18조(판정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

에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확정 및 서면통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
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1.13.)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1.13.)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본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23.01.13.)

④ 재조사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조사보고서를
심의·확정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23.01.13.)

⑤ 재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신설 2011.5.12.)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위원회는 판정 및 이의제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최
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
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② 총장은 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③ <삭제 2011.5.12>

제20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①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대
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정 후 1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01.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3.)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정보처에서 보관하
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본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개정 2023.01.13.)

제22조(교육부 훈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3.01.13.)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 연구진실성 검증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의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 규칙 개정 전 완료된 조사결과의 판정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처리하지 아니하되,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이 규칙 시행일 전 만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한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기획팀-2352호 : 2023.01.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승급기준

전면 개정 2020. 8. 31.

개정 2021. 8.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1조에 의거 승급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및 기준) ① 교원의 승급은 ‘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 상의 등급이 한단계 이상 상향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승급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

1. 교수시간 충족
2. 강의노트 공개
3. 수업계획서 공개
4. 수업평가 평점 3.5(5.0만점) 이상 충족
5. 기타 소속 대학(원) 및 학과에서 정한 기준

② 제1항의 적용 교과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되, 본 기준 제4조 내지 제7조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8. 25.)

1. 제1항 1호는 「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전임교원의 교수 시간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 2호 내지 4호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개설 과목을 포함한다.

③ 승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급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교수시간 충족 기준) 교원은 연간 교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교수시간 충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충족한 교수시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미 충족 교수시간을 차년도에 반드시 보충하여야 한다.

1. 병가 또는 출산휴가로 인한 기간 이외의 부족한 교수시간
2. 폐강으로 인하여 충족하지 못한 교수시간. 다만, 동일 교과목의 연속적 폐강으로 인한 교수시간 미달의 경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교수시간 충족을 유예할 수 있다.
3. 소수인원과목 책임시수 1/2학점 인정으로 인해 부족한 교수시간(개정 2021. 8. 25.)
4. 학기별 교수시간(연간 교수시간/2)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충족하지 못한 교수시간. 다만, 연구년 파견, 2학기 신규임용, 2학기에 승인된 책임시간 감면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 8. 25.)

제5조(강의노트 공개 기준) 교원은 매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에 강의노트를 아주Bb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처(교무팀)에서 실험실습과목 등 과목의 특성상 강의노트 입력제외 대상으로 승인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6조(수업계획서 공개 기준) 교원은 매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에 수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수업평가 충족 기준) 학년도 수업평가 결과가 평균 3.5이상일 경우 수업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학기 교무처(교무팀), 소속 대학원에서 실험실습과목 등 과목의 특성상 교수업적평가 미반영 대상 교과목으로 승인된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8. 25.)

제8조(기타 기준) 기타 소속 대학(원) 및 학과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승급 기준 적용의 예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연구년, 파견, 휴직,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평가대상 기간 중 6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무급 휴직으로 6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1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의한 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한다.
3. 교수업적평가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되어 학교에 행·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교원의 경우, 총장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 중 제9조(승급 기준 적용의 예외)외에 질병 등 중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미충족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강의노트 공개 기준)와 제7조(수업평가 충족 기준)는 2021학년도 심사까지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2022학년도 심사 시부터 제3조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 해외여행 기준 】

1. 허가기준

해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2. 절차

출국예정 7일전까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해외여행허가원을(휴강조치허가원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교원 : 신청교수→ 학과장→ 대학(원)장

3. 대학별 기준

각 대학(원)의 기준이 본부의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소속 대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4. 학기 중의 해외여행

가. 해외여행 목적

- ①국제학술회의 참석
- ②본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 ③학교의 명예 의한 출장
- ④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참석
- ⑤기타 학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해외여행 기간

학기당 합산하여 15일 이내로 하되(방학기간 제외),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 초과시 별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방학 중의 해외여행

가. 해외여행 목적 및 기간 : 제한 없음,

나. 해외여행 신고 : 상기 '2.절차' 에 따름.

교원 겸직 허가 및 운영기준

제정 2020. 3. 16.

개정 2021. 2. 16.

개정 2022. 4. 13.

개정 2022. 12. 19.

개정 예정 2023. 3.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교원의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겸직”이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타 기관에 임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상업·공업·금융업·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나. 상업·공업·금융업·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진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마. 정기적으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겸직 교원의 의무) ① 교원은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함에 있어 본교 교원으로서의 교육·지도, 연구 및 봉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다른 기관에서 겸직하며 학술논문 등 연구결과를 산출할 경우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교원이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겸직의 경우 또는 그 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1. 근속년수 3년 이상
2. 최근 3년간 책임시수 충족
3. 최근 3년간 수업평가점수 평균 3.5 이상

제6조(허가절차) ① 겸직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의 학과장,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1의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에서의 교육·지도, 연구 및 봉사 등에 지장이 없다는 소속 학과의 학과장,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의견이 포함된 별지2의 겸직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5조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겸직허가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에 신청하게 된 때에는 그 경위를 포함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겸직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허가기준) ① 총장은 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본교 교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2023.3월 개정 예정)**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023.3월 개정 예정)**
- ②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에서의 교육·지도, 연구 및 봉사 등에 지장이 없다는 소속 학과의 학과장,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의 직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민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3. 본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자문위원
 4. 본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의 당연직 임원

제8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② 겸직허가는 교원 1인당 동일기간 중 총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① 교원이 겸직을 신청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총장은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겸직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장에게 허가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에 대하여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겸직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① 특별임용교원의 겸직허가는 개별 임용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본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계약체결로 겸직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겸직중인 자라도 이 기준 시행 후 1개월 내에 겸직을 신청하여 허가받는 교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직허가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원팀-7039호 : 2021.2.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겸직중인 교원은 제5조에 따른 겸직

신청자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원팀-1104호 : 2022.4.13.>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원팀-6910호 : 2022.12.19.>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규 신청용)

겸 직 허 가 신 청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타 기관의 겸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기관명	직 위		
겸직 기간	20 . . . ~ 20 . . .	☐ 상근	☐ 비상근
보수 여부	☐ 무급 ☐ 유급	(유급 시) 연 보수액	연 천원

첨부 : 겸직기관의 겸직 허가요청 공문 1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에 한함) 1부.

202

신 청 인 (인)

학 과 장 (인)

대학(원)장 (인)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2. (연장 신청용)

점 직 연 장 허 가 신 청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타 기관의 겸직을 연장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기관명	직 위			
겸직 기간(기존)	20 . . . ~ 20 . . .	☐ 상근	☐ 비상근	
겸직 기간(연장)	20 . . . ~ 20 . . .	☐ 상근	☐ 비상근	
보수 여부	☐ 무급 ☐ 유급	(유급 시) 연 보수액	연	천원

의견	학과장	
	대학(원)장	

첨부 : 겸직기관의 겸직 허가요청 공문 1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에 한함) 1부.

202

신 청 인 (인)

학 과 장 (인)

대학(원)장 (인)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책임교수시간 및 초과강의로 산정 기준

전면개정 2013. 10. 15.
 개정 2014. 2. 13.
 개정 2016. 2. 4.
 개정 2016. 5. 30.
 개정 2017. 4. 18.
 개정 2017. 5. 23.
 개정 2018. 12. 14.
 개정 2019. 10. 16.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12. 10.
 개정 2022. 1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이하 ‘본대학교’ 라 한다) 교원의 책임교수시간 및 초과강의로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8.)

제2장 교수시간

제2조(교수시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의 임용 첫해의 연간 교수시간은 총장이 감면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교원의 감면은 첫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4. 2. 13) (개정 2017. 4. 18.)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교수시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15학점으로 산정하며, 학기별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7.5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7. 5. 23.)

③ 교수시간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3.)

1. 2학기 연구년 파견 교원의 파견 직전 학기 교수시간이 7.5학점을 초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초과 교수시간 중 최대 1.5학점을 복귀하는 학년도 교수시간에 이월하여 합산할 수 있다. (신설 2017. 5. 23.)

2. 8월 말 정년퇴직자는 퇴직 직전 학년도 교수시간이 특별감면 후 학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교수시간을 퇴직 당해연도 교수 시간에 이월하여 합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3.)

④ 특별임용교원은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에 명시한 학기당 최대책임교수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별 책임교수시간은 개별 계약에 따른다.(신설 2020. 02. 28.)

제3조(교수시간 산출) ① 교수시간은 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교과목은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외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교수시간에는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수업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의 교수시간을 합산한다.

④ <삭제 2017. 4. 18.>

⑤ 교과목의 특성 및 교수의 참여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교수시간을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6. 5.30.)

1. 동일교수의 실험·실습과목은 동일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시간대 동일교수의 실험·실습 과목은 1개 강좌의 학점에 해당하는 교수시간만 인정
2. 교양선택 체육 과목은 ‘학점*1.5’ 교수시간 인정
3. 윤강과목은 담당 수업주수(학점×(담당 주수/16주))에 따라 차등 인정

과목	학점	담당 주	수강인원	교수책임시간
000	3학점	A 교수 10주	100명	A 교수 1.87시간 3학점×(10주/16주)
		B 교수 6주		B 교수 1.13시간 3학점×(6주/16주)

4. 컴퓨터실습과목의 실습시간은 1/2을 교수시간으로 인정하고, 분반할 경우라도 이론수업은 합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1개 강좌의 학점에 해당하는 교수시간만 인정(예: 사무데이터처리, 웹저작기초, 프로그래밍언어 등) (개정 2016. 2. 4.)

과목	학점	강의 시간	이론반영시간	실습반영시간
00 A강사	3학점 4시간	1반: 월7,8교시(실습) 수7,8교시(이론)	2시간 (수7,8교시)	2시간 (4시간*0.5)
		2반: 화7,8교시(실습) 수7,8교시(이론)		

5.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강좌별 수강 학생 수에 따라 학점을 환산(3명이상:3학점, 2명: 2학점, 1명:1학점)한 후, 환산 값의 1/3을 책임교수시간으로 인정한다.
 - 전공별 1인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교수가 다수인 경우 책임교수시간으로 인정한 학점 수를 담당교수 수로 나눈다.
 - 책임교수시간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6. 원격수업은 신규 개설 시 단과대학 및 교무팀의 결정에 따라 개설된 원격수업인 경우에 한하여 교수시간으로 인정(개정 2019.10.16)

7.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운영을 위한 업체 선정 사전 준비 및 업체와의 커리큘럼 조정, 인터뷰 참여, 평가 등만 수행하는 과목은 개설 반수와 상관없이 1개 과목 학점에 해당하는 교수시간만 인정. 예) 경영학과 경영의사전달1,4(3학점 3개반): 3학점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는 책임교수시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30.) (개정 2017. 4.18.)
1. 0학점 과목
 2. 강의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과목(학사과정의 아주희망, 아주도전 교과목, 간호학과특별과정 교과목, 일반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교과목, 특수대학원의 교과목 등)
 3.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세미나, 석·박사논문, 박사프로젝트 등 강의를 없고 수업 지도만 하는 과목
 4. 자기개발과 진로선택 1, 2(1학점), 중견기업의 이해 등 담당교수의 별도 load가 없는 과목
 5. 첨단소프트웨어대학에 개설하는 해외봉사실천 1~2 과목(개정 2021.12.10.)
- ⑦ 학사과정에서 개설한 강좌 중 수강정정기간 종료 직후의 수강인원(총 수강학생 반영, 수강포기 인원은 미반영)이 전공과목은 10명 미만, 교양과목은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할 경우 6명~9명인 과목은 해당학점의 1/2을 교수시간으로 인정하고, 5명 이하인 과목은 교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실습, 교직과목 등 개설을 유지해야 하는 과목은 제외한다.(개정 2016. 5.30.)
- ⑧ 총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원격수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10.16)
1. 81명 ~ 150명 강좌 : 해당 학점의 120%를 교수시간으로 인정함
 2. 151명 이상 강좌 : 해당 학점의 150%를 교수시간으로 인정함
- ⑨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인원(학부생 4학년 이상 및 교환학생, 학석사 연계과정 포함)이 3명 이하의 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전필과목을 개설할 경우 해당 학점의 1/2을 교수시간으로 인정한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학과장과 학장의 허가를 득한 교과목은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학점 당 초과강의료의 1/2을 지급하고 교수시간은 미인정한다.(개정 2018.12.14.)(개정 2019.10.16.)(개정 2020.02.28.)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3명 이하의 과목은 원장이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설을 승인한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의 1/2을 교수시간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02.28.)

제4조(책임교수시간 미충족에 대한 처리) ① 교원이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학년도에 미충족한 교수시간을 합산한 책임교수시간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0.02.28.)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미충족한 책임교수시간을 다음 학년도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진, 승급, 연구년 등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20.02.28.)

③ 특별임용교원이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임명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책임교수시간 상한의 제약으로 당해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 책임교수시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한 책임교수시간에 대한 조치계획을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

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0.02.28.)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교원이 책임교수시간을 미충족한 경우, 개별계약에 따라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02.28.)

제3장 초과강의료

제5조(초과강의료 산출 기준) ① 전임교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을 포함한다)이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책임교수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교수시간에 대하여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전임교원이 교수시간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이 교수시간을 1개 학기만 감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강의료를 산출한다.

1. 학기 기준으로 각 학기 7.5학점에 해당하는 교수시간을 책임교수시간으로 산출함
2. 감면받은 학기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비감면학기는 7.5학점에 해당하는 책임교수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④ 전년도 책임시수를 미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미달 책임시수를 충족하고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6)

⑤ 조교수가 연간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강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개정 2019.10.16)

제6조(초과강의료 지급 제한) 초과강의료는 12학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개정 2020.02.28.)

부칙

이 기준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임용교원의 책임교수시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신규 임용교원 책임교수시간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규 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학기 연구년 파견 교원의 교수시간 이월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연구년 파견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수시간 산출) 제3조의 8항은 2019학년도 2학기 개설 과목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소프트웨어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 제6항 5호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3항 제2조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08. 10. 09
개정 2010. 01. 13
개정 2012. 10. 10
개정 2014. 09. 02
개정 2015. 10. 06
개정 2016. 05. 30
개정 2017. 04. 18
개정 2017. 12. 06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1.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수업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편성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 교육과정은 본교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며 각 학문분야별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 편성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년도 단위로 편성하며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인증제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② 교육과정 기본 구조 내에서의 교과목 신설 및 폐지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학년도 단위 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 단위 개편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4.09.02)(개정 2015.10.06)(개정 2018.12.31.)(개정 2021.01.04)

1. 과목의 신설, 변경, 폐지 신청 시에는 각 신청서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목의 신설 : 주차별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명은 타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간 동일 교과목으로 상호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교과목명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제를 교과목명에 사용할 경우 전공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교과목명의 변경 시에도 신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3. 과목의 폐지 : 개설되었으나 폐강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개설된 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과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5년 동안 연속 미개설된 과목은 자동 폐지한다.

③ 교과목 학수구분은 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나누고, 교양과 전공은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09.02)(개정 2015.10.06)(개정 2021.01.04)

④ 교과목 편성 단위는 교양과목의 경우는 1~3학점, 전공과목은 3학점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집중교육 성격의 교과목, 2개 이상 전공과목의 교육내용이 통합되는 과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9.02)(개정 2021.01.04)

⑤ 교과목의 단계별 이수를 위해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는 선수과목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과 또는 전공 등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9.02.)(개정 2015.10.06.)(개정 2021.01.04)

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분과 위원회)에 근거하여 각 분과 위원회는 분야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 단, 본 기준 및 상위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준에 한한다.(개정 2021.01.04)

⑦ 제⑥항에 근거한 기준의 제·개정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01.04)

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 ① 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권장이수순서를 고려하여 학년·학기별로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과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1. 심화과정 또는 인증제 운영 전공 : 각 해당 전공 이수학점 대비 1.5배 ~ 2.0배 이내

2. 일반과정 운영 전공: 각 해당 전공 이수학점 대비 1.5배~3.0배 이내

③ 각 전공의 교육과정상 전공필수과목의 구성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5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과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④ 영어강의 과목은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지정하여 편성하고 학년학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학부·대학원간 연계과목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수체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전공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트랙별로 전공 이수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 운영

제5조(교과목 개설 원칙) ① 각 전공의 연간 교과목 개설은 과목기준으로 일반과정 운영전공의 경우에는 90학점, 심화과정 운영전공의 경우에는 100학점 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년도 기준으로 전공별 평균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72학점 이내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5명 이상일 경우에는 120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1. 특별사업을 수행하는 전공
2. 인증제를 시행하는 전공
3. 졸업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전공
4.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개설 학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5.10.06.)

④ 연간개설과목 학점 산정 시 동일한 전공과목을 1학기 및 2학기에 모두 개설한 경우에는 2개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06)

⑤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공히 학생의 이수 및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과정에 정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 학기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10.06)(개정 2021.01.04)

1. 교양필수(기초과목 포함)과목 중 양 학기 개설이 필요한 경우
2. 선수과목 및 전공필수 과목 중 양 학기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6조(반편성 기준) ① 반편성 및 분반 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수용인원, 수업형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구분	전공과목	교양과목
반편성	- 전공 이론 : 40~60명 - 실험실습 : 20명 - 설계 : 30~40명 - 외국어회화 : 30명	- 영어1,2 : 30명 - 글쓰기 : 35명 - 컴퓨터관련 : 40명 (단, 이론은 40~60명) - BSM : 40~60명 - 교양 이론 : 60명 이상 - 실험실습 및 실기 : 20~30명
분반	- 분반 시 최저인원 - 이론 : 40명 이상 - 실험실습 : 15명 이상	- 분반 시 최저인원 - 영어1,2 : 25명 이상 - 글쓰기 : 30명 이상

구분	전공과목	교양과목
	- 설계 : 25명 이상 - 외국어회화 : 25명 이상	- 컴퓨터관련 : 40명 이상 - BSM : 40명 이상 - 교양 이론 : 50명 이상 - 실험실습 및 실기 : 20명 이상

② 개설된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분반 시 최저인원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합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의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제7조(폐강기준)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수강정정 마지막 날 15시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폐강한다.(개정 2015.10.06.) (개정 2017.12.06.)

1. 전공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교양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06.) (개정 2016.05.30.) (개정 2017.04.18.)(개정 2021.01.04)

1. 1개 강좌만 개설된 전공(학과) 필수 과목
2. 교직 과목 및 군사학 과목
3. 아주희망 과목
4. 외국인 학생만 수강하는 교양 과목
5. 실험실 수용인원이 20명 미만인 BSM 실험 과목
6. 국고사업에 따른 개설 과목
7. 어학졸업인증제 대체 과목
8.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 과목
9. 아주도전 과목
10.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8조(개설제한) 2년간 연속하여 미개설된 과목 또는 연속 폐강된 과목의 경우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개설 또는 폐강된 경우에는 심의하여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강의배정) ① 과목당 2~3시간 연속 강의를 배정하지 않으며, 2일에 나누어 1일 이상 격차를 두고(월-수, 월-목, 화-목, 화-금, 수-금) 균등 분할하여 배정한다. 단, 실험·실습 강좌나 실기강좌는 연속강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비전임교원이 1개 강좌를 강의할 경우에는 연속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연속 강의를 하는 경우 F교시 수업 이후 시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제10조(원격수업)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추가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1.04)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비 관리규칙

제정	1983. 10. 05
개정	1986. 04. 25
개정	1992. 03. 01
개정	1996. 10. 22
개정	2007. 04. 24
개정	2010. 08. 13
개정	2016. 01. 05
개정	2016. 05. 18
개정	2017. 01. 31
개정	2017. 09. 15
개정	2018. 12. 07
개정	2020. 09.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에서 지원되거나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교외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경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 및 교외 지원 기관에서 본 대학교 연구과제로 지원되는 모든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개정 2007.4.24)
2. <삭제 2007.4.24>
3. <삭제 2007.4.24>
4. “교내연구”라 함은 본 대학교 연구 지원계획에 의하여 교비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로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7.4.24)
5. <삭제 2007.4.24>
6. “교외연구”라 함은 교외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로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7.4.24)
7.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24)

8. “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7.4.24)
9. “관리기관”이라 함은 교내·외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 대학교의 기관으로 연구정보처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4.24) (개정 2017.9.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4.24) (개정 2010.8.13)

1. 본 대학교 교내 연구비 (신설 2007.4.24)
2. 교외 지원기관 연구비 (국내·외의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신설 2007.4.24)

제 2 장 연구 수행 절차

제4조(계약) ① 교외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외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계약체결의뢰서를 근거로 하여 위탁자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4.24)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위탁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7.4.24)

제5조(연구실적물 제출) ① 교내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연구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정착연구비는 1년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개정 2016.1.5.) (개정 2017.9.15) (개정 2018.1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8) (개정 2018.12.7)

1. 정책연구
 2. 발전연구
 3. <삭제 2018.12.7>
 4. <삭제 2018.12.7>
 5. 연구정보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연구결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한 교내연구
- ③ 교내 연구에 의한 연구결과 발표논문 또는 단행본에는 “이 연구는 ○○○○학년도 아

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교외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 3 장 연구비 관리

제6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관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 및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분야 연구소 또는 특수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제7조(실행예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8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항목별 예산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집행 및 책임)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4.24)

③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07.4.24)

제10조(연구비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제11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한다. (개정 2007.4.24.) (개정 2016.1.5)

1.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제5조 제1항의 기한 내 보고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개정 2007.4.24.) (개정 2016.1.5.)
5.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제12조(연구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의 사용이 완료되면 그 사용 내역을 연구비 정산내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 4 장 간접경비

- 제13조(간접경비 징수)** ① 교외지원기관의 연구비에 간접경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인건비+직접비)의 20% 이상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위탁계약에 의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간접경비 징수는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한다. (개정 2007.4.24)
- ② 교외지원기관의 연구비에 간접경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간접경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개정 2007.4.24)
- ③ <삭제 2007.4.24>

제14조(간접경비의 사용) 간접경비는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증진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7.4.24.) (개정 2020.09.02)

제 5 장 보 칙

제15조(연구기자재 및 물품의 구입)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 기자재·도서·물품의 구입 및 공사·임대차·용역의 계약은 본 대학교 「구매규칙」 또는 「산학협력단 구매관재규칙」에 의거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규칙에서 직접구매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4.) (개정 2020.09.02)

제16조(자산의 귀속 및 이관) ①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 기자재, 도서 등 자산성 물품은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7.4.24.) (개정

2020.09.02)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17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장은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연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7.1.3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 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연구비 지급에 따른 잠정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체결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체결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3조 연구구성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간접경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팀-1164호 : 2020.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